

미국 재정법 해설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미국 재정법 해설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진

신 영 수	(경북대학교 교수)	책임연구원
이 상 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정 하 명	(경북대학교 교수)	

기획 및 감수

이 상 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송 영 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목 차

제 1 장 미국 재정법의 개관	5
I. 미국 재정법의 연혁과 체계	5
1. 미국 재정법의 형성과 구조	5
2. 미국의 예산법률주의	7
II. 재정 관련 정부 및 의회 기관과 역할	9
1. 예산편성 관련 기관	9
2. 예산심의 기관	12
III. 미국의 연방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과 그 특징	15
1. 예산편성의 절차와 특징	15
2. 예산심의의 절차와 특징	18
제 2 장 연방 정부의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처(OMB) 관련 규범	21
I. 예산편성권과 관련된 규범	21
1. 관련 규범의 개관	21
2. 주요 조문의 해설	25
제 3 장 의회의 예산심의 관련 규범	61
I.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CBICA)	61
1. CBICA의 입법 배경	61
2. CBICA의 조문 해설	65

제 4 장 재정건전성 관련 규범	107
I.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Public Law No: 112-25 (08/02/2011)	107
1. 명칭,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107
2. 법률의 개관	110
3. 주요 조문의 해설	111
II.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Title II of P.L. 99-177, 2 U.S.C. 900-922)	154
1. 제정 배경 및 연혁	154
2. 주요 조문의 해설	159
제 5 장 미국 재정법의 특징과 시사점	167
1. 행정부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67
2. 의회의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69
3. 재정건전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71
부 록	177
I. 연방 정부의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처 관련 법제	179
II.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201
III.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Public Law No: 112-25 (08/02/2011) -	235
IV. 2012년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통제법 255조 및 256조 ...	265

제 1 장 미국 재정법의 개관

I. 미국 재정법의 연혁과 체계

1. 미국 재정법의 형성과 구조

미국의 연방 재정 관련 규범 체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 헌법과 법률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 헌법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세입징수, 조세, 채무부담 등에 대해 연방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9조에서는 지출승인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연방의회가 예산을 법률의 형태로 의결한다는 예산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미합중국 연방헌법

제 7 조(세입안, 입법절차, 대통령의 거부권)

- ① 세입증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률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 8 조(의회의 권한)

- ①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보유한다. 미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서 통일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 ②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제 9 조(의회의 제한)

- ⑦ 국고로부터의 지출은 모두 법률로 정하여지는 세출예산(Appropriation)에 따라서만이 행해진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과 지출에 관한 정식 명세와 회계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중요 원칙과 절차가 헌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당초 미국의 1789년 연방 헌법은 예산 등 재정에 관하여 대통령 보다는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법부의 권한 행사 및 방법,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별법들이 이후 속속 등장했는데 이들 규범이 오늘날 미국의 연방 재정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연방 재정운영에 핵심적 사항들을 규정한 법제로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한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한 1974년 ‘의회예산 및 집행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을 들 수 있다.

먼저 예산회계법은 연방예산에 관한 부분과 회계검사원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동법이 제정됨으로써 연방 예산편성권이 의회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회계검사원과 관리예산처 등의 재정관련 국가기관이 설립된 계기도 예산회계법이 제공했다. 이 같은 기본 골격을 토대로 하여 1950년에는 예산회계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이 제정되어 재정운영의 법제적 토대를 한층 정교히 다듬었으며, 1974년에는 의회예산 및 집행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이 제정됨으로써, 예산심의제도의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정적자가 미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1985년과 1987년의 Gramm-Rudman-Hollings법 및 1990년의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을 제정하여 재정적자의 축소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미국의 연방 재정법을 크게 행정부의 예산편성 관련 법제와 의회의 예산심의 관련법제, 그리고 재정건전화 관련 법제의 세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미국의 주요 연방 재정법

1789년 연방 헌법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789)
1905년 하자방지법 (The Anti-Deficiency Act 1905)
1921년 예산회계법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1921)
1974년 의회 예산 및 집행거부통제법 (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1974)
1978년 감사관법 (The Inspector General Act 1978)
1982년 연방재정건전화법 (The Federal Manager's Financial Integrity Act 1982)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1985)
1990년과 1997년의 예산집행법 (The Budget Enforcement Acts, 1990 and 1997)
1990년 수석재무관법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1990)
1990년 연방신용개혁법 (The Federal Credit Reform Act 1990)
1993년 정부성과관리법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
1994년 정부관리개혁법 (The 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1994)
1996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 (The Federal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Act 1996)

2. 미국의 예산법률주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세출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 헌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국고로부터의 지출은 모두 법률로 정하여지는 세출예산(Appropriation)에 따라서만 행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s)이다. 세출예산은 연차예산(annual appropriations)과 항구예산(permanent appropriations)으로 나뉜다. 연차예산은 매년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세출예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항구예산은 세출예산법 이외의 일반 법률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한 번 입법화

됨으로써 매년 자동적으로 지출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연차예산은 대체로 소관별로 별개의 법률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13개의 세출 예산법이 성립한다. 세출예산법에서는 항구 권한에 의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한편 세입에 관해서는 세법(Revenue Act)이 제정될 뿐으로 세입예산은 의결의 대상이 아니다. 세입의 추계는 국회 심의의 자료로서 대통령이 제출하는 예산서(Budget)에 기재되는데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자신의 정책을 표명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로 취급된다. 이 예산안은 의회에서 세출예산법안의 입법자료로 간주되며 세출예산법안 자체는 통상 하원 세출예산위원회의 담당 소위원장으로부터 작성되어 제출된다.

한편 각 기관은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채무부담(obligation)을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예산권한’이라고 한다. 예산권한에 의거하여 채무부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년도에 한하지 않으며 다년도 혹은 무기한으로 정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어느 연도에 인정된 신규 예산권한의 모두가 동년 내에 채무부담으로 되거나 모두 지출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연도 예산지출의 일부는 과년도의 예산권한에 근거한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각 연도의 예산권한액과 예산지출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예산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세출예산법이지만 거기서는 예산권한액이 표시될 뿐이고, 예산지출액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산지출은 예산권한에 근거한 단순한 전망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세출예산법에 세출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일반법에 의해 예산권한을 인정하는데, 이 법을 수권법(Authorization Act)이라 한다. 일반법은 세출예산법에 우선하며 따라서 세출예산법에 의해서 일반법의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 단, 경비의 삭감만은 예외인데, 일반법으로 승인된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으나, 이보

다 적은 금액을 계상할 수도 있고 또 전혀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출예산법은 세출예산위원회에서, 수권법은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구별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권법이 세출예산을 포함하기도 하고 세출예산법이 수권법 승인 전에 의회를 통과하기도 한다.

Ⅱ. 재정 관련 정부 및 의회 기관과 역할

미국예산제도의 특징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대체로 행정부는 정부의 예산을 계획, 편성하여 집행하고 국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입법부는 예산 심의과정의 수행을 통해 연방정부의 자원배분권한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기능을 맡고 있는 기구들을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편성 관련 기관

(1) 관리예산처(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대통령 예산안의 편성에 각 정부기관이 관여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예산편성기구는 관리예산처(OMB)이다.¹⁾ 관리예산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예산편성 사무를 관장한다. 관리예산처의 기본적인 기능은 예산편성 및 연방정부 재정사업 형성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감독과 통제, 행정조직 및 관리절차 검토, 기관간 및 정부간 협조와 조정 증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각 부(department)의 예산안을 각 부별로 작성하고 각각 별개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통

1) OMB의 조직과 권한에 관해서는 미국 연방법전 2 U.S.C. §§ 601-688에서 규정하고 있다.

합성을 위해 1921년부터 재무부 예산국(Bureau of the Budget)에서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산에 대한 대통령 통제의 강화에 따라 1939년 재무부에서 예산국을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었다. 1970년 예산국은 관리예산처로 바뀌었으며, 현재 관리예산처는 예산편성기능 이외에 행정관리 기능도 갖고 있다.

현재 예산편성에서 관리예산처 이외에도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의 예산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각 부처의 의견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는 각 부처가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가에 의존한다. 관리예산처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산안의 준비 및 연방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가진다. 즉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교서(budget message), 예산개요와 예산서(summary data and text) 및 그 부속서류(supporting details)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예산행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갖는데, 법률·명령·조례규칙에 관한 사무를 통해서 입법작용에 있어 최고 제안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지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는 현재의 행정조직, 사업활동 및 각 부처의 업무방법, 그에 따르는 예산, 특수한 업무에 대한 특수한 사업활동의 할당업무의 재편성 등에 대하여 행정능률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할 것을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조사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그 진도 및 완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성과자료(Program Performance data)를 위시한 정보체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어떤 목적을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 편집, 분석, 발행 및 배포의 개선, 계획을 발전시키며 이를 위한 규제와 명령을 한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이 관리예산처가 인사의 업무인 직업공무원을 모집, 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만을 관장하는 예산국에서 ‘관리’의 기능을 더한 관리예산처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경제자문위원회는 1946년 고용법(The Employment Act)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재무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른바 현실참여적 학자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즉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를 비상임으로서 그 위원회에 참여시켰다. 그와 같은 방식의 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쏘미국 내에 산재하는 지력을 결집시켜 전반적인 경제정세의 분석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았다.

경제자문위원회의 조직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3명의 위원이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 그리고 약 40명의 경제학자 또는 경제전문가와 사무원으로 구성되는 내부집단이자 제도화된 대통령 개인 보좌기관이다.

따라서 경제의 발전과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경제동향에 대해 적시에 권위있는 정보를 수집하며 이 정보에 기초하여 그 연구보고를 대통령에게 한다. 그리고 최대한도의 고용과 생산 및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 예측하여 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의 수준을 보고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책 및 법안을 건의하는 일과 대통령이 매년 1월초에 의회에 제출하는 경제보고서를 준비하는 일을 맡는다. 그 외에도 고용법의 목적과

관련된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전략을 의회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경제자문위원회는 중전의 구연방예산국의 재정과가 수행하던 책임을 인수한 양상을 띤다.

(3) 재무성(Departmant of Treasury)

1789년 연방정부의 조직이 창설될 때 설치된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기관이다.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재무성장관은 2명의 차관과 5명의 차관보의 보좌를 받는다. 재무성은 재무국을 통하여 각종 재정보고를 작성하고 국고과와 지방 출장소를 통해 대부분의 정부기관에 대한 중앙 지출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세청과 세관국을 통해 국고세입을 징수하고, 조폐국을 통해 지폐와 증권인쇄의 책임을 지며, 주조소를 운영하고 공채를 관리한다.

2. 예산심의 기관

(1) 의회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양원의 예산위원회는 매년 2개의 예산한도결의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며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회예산체의 운영을 감독한다.

우선 하원예산위원회는 25명의 위원을 지니고 있으며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서 각각 5명,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13명, 다수당과 소수당의 원내총무진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위원을 막론하고 10년 동안에 예산위원회 배정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상원예산위원회의 16명의 위원은 상원의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각 정당의 상원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2)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양원의 세출위원회이다. 하원세출위원회는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과 소수당의 비율은 대략 3 대 2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1974년 의회예산법에 의해 그 영향력이 감소되기는 했으나 하원의 여러 위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한편, 상원세출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원의원의 수가 적으므로 겸직이 불가피하다. 종전에는 상원세출위원회가 하원세출위원회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상·하양원 세출위원회의 영향력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세출위원회와는 달리 세입을 관장하는 세입위원회는 하원과 상원의 위원회가 명칭이 상이하다. 즉 하원은 세입위원회라고 하는데 반하여 상원은 재정위원회로 불린다. 이들 위원회는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4) 수권위원회(authorizing committee)

상기 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재정위원회 이외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들이 수권위원회이다. 상·하 양원의 규칙상 법률에 의한 수권없이 예산을 의결할 수 없다. 즉 수권위원회에 의한 수권(authorization)이 이루어지면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위원회 등이 예산의결(appropriation)을 할 수 있게 된다. 수권은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와 구체적인 예산의결의 상한선까지를 포함한다.

(5) 의회예산처(CBO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의회예산처는 의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74년 설치된 기관이다. 의회 내의 예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관련 정보의 제공 및 분석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의회예산처의 주된 업무는 대통령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에게 재정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재정정책의 대안, 세출예산의 규모, 예산상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포괄적인 연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여기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견해를 덧붙여 제시하게 된다. 의회예산처는 그들의 업무를 위해 외부의 학자들과 더불어 일하고 조언을 받음으로써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한 예산정보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의회예산처는 예산심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 통합하고 있으며, 재정정책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에 제출해 오고 있다. 관리예산처와 마찬가지로 의회예산처에서도 독자적으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작성하고 있으나 의회예산처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관리예산처로서는 집권당의 정책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지만, 의회예산처는 야당의 입장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의회예산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예산전문기구로서 의회에 대한 정책건의 역할보다는 정보제공에 더 큰 목적을 두는 있는 기관이라 하겠다.

Ⅲ. 미국의 연방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과 그 특징

[표] 연간 예산처리절차 흐름도

- * OMB가 연방행정기관(예를 들어, 연방 국방부, 농업부, 교육부 등)에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 연방행정기관이 예산안 초안(1st budget)을 작성
 - OMB가 예산안의 초안을 심의
 - 연방행정기관이 초안을 수정
 - OMB가 예산안을 최종 승인
 -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요구서(budget request)
 - 상원 예산위원회 및 하원 예산위원회가 예산요구서를 심의
 - 의회의 예산의결서
 - 하원 세출분과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및 상원 세출분과위원회(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의 청문(hearings)
 - 하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세출위원회의 예산요구서 심의 및 승인
 - 하원의 최종 심사보고서 및 하원의 최종 심사보고서 작성
 - 상·하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 미국 대통령의 서명

1. 예산편성의 절차와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예산은 1921년 이전까지 의회가 편성토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21년 예산회계법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1921)이 제정된 이후로는 예산편성의 책임을 행정부가 지고 있으며 행정부는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행정부에 의한 예산편성이 종료되면 사실상 예산의 대략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각 기관의 업무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토할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각 부처의 모든 사업계획, 행정절차, 관리방법 등은 매년 관리예산처의 조력 하에서 대통령의 사정을 받게 된다. 예산과정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과정은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어서 국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자의 권력관계나 또는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의 편성은 당해 예산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9개월 전부터 개시된다. 예산안 편성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관리예산처는 매년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이듬해 10월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협의를 각 부와 가지는데, 이를 Spring Preview라고 한다. 여기서 각 기관은 현행 시책 및 장래계획의 검토를 행한 뒤 OMB에 요구계획을 제출한다. 관리예산처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얻는다. 그와 동시에 관리예산처는 재무성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경제적 가정 및 전망을 작성하고 대통령은 관리예산처장, 관계 각료와 함께 예산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한다. 관리예산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재정정책, 예산규모, 개별시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예산의 일반적 지침을 결정하고 관리예산처는 각 기관에 예산안의 작성요령(technical guideline)을 시달, 동시에 대통령이 정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한다.

7월과 8월 중에 각 기관은 관리예산처가 내린 ‘한도액’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관리예산처에 제출하는데, 이 예산요구서의 작성과정에 있어서 각국(局)이나 산하기관 간의 투쟁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 장-차관의 신임이 두터운 국(局)이나 산하기관은 비교적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은 이 단계에서부터 소외당하기 마련이다. 이익집단들도 이 단계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시하고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예산요구서는 OMB에 제출되어 그 사정을 받게 되어 있다. OMB의 예산사정관들은 청문회를 열어 각 기관의 예산견적을 검토하고,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을 재검토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청문회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 차관 그리고 국장, 과장의 설명을 듣는다. 이 청문회와 기타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건의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사정위원회(review committee)가 심의한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예산권고(budget recommendation)를 준비한다. 이 단계에 있어서 예산의 정치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각 기관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관리예산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며 이익집단들의 활동도 이 단계에서 더욱 적극화하게 된다.

각 기관이 관리예산처를 상대로 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련이익단체의 동원이 있다. 그리고 그때 정부의 역점사업을 잘 활용하면 예산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의 경쟁상황에서 과학기술, 교육 등의 예산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70년대에는 에너지에, 그리고 그 후로는 사회복지 등에 국가의 역점이 주어졌었다.

[표] 예산편성의 주요 절차

4월~5월: 춘계 지도와 심사(spring guidance and review)

- 관리예산처(OMB)장이 연방정부 기관의 예산 요청에 관한 정부 지침을 알려주는 통문을 각 기관의 장에게 송부
- OMB는 예산상의 주요 쟁점들을 확정하고, 추계심사시의 선택안(options)을 개발하고 분석

6월: OMB가 예산안 준비 및 제출에 관한 circular No. A-11을 공표

9월: 정부기관들은 예산안 초안을 제출

10월~11월: 추계심사(autumn review)

- OMB에서 정부 기관들의 예산안을 대통령의 우선순위, 사업성과 예산 제약 등의 기준에 비추어 분석

11월 말 : 통보 (passback)

- OMB는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들에게 제안된 예산정책들을 보고.

12월: 이의제기 절차(appeal process)

- 정부 기관들은 OMB와 대통령에 이의제기 가능.

2월 첫 번째 월요일: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2. 예산심의의 절차와 특징

미국의 연방예산 제출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이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것으로 개별 기관은 의회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안이나 예산요구서를 직접 상원이나 하원 및 그 소속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을 통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는 그에 대한 삭감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의 증액이나 신항목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산의 심의는 1974년의 의회예산법에 의해 설치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와 의회예산처(CBO)에 의해 진행된다. 반면, 세출과 세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조정할 공식기구는 두고 있지 않다.

의회는 헌법상 세입에 관한 법률은 하원이 선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세출에 관한 법안은 상하양원 중 어느 원에서 먼저 심의해도 무방하다. 다만 실제상으로 세출예산안의 심의도 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고 상원의 의결은 하원의 의결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위원회가 예산의 대강을 정하는 제1차 예산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시하며 예산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진다. 의회예산처가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부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그 동안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한도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제1차 예산결의안의 의결단계로서 상하원이 각각 그 예산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한도결의안을 의결하고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 회부한다. 여기서 합의된 제1차 예산한도액은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목표액에 불과하다. 이 목표액은 다시 해당 위원회별로 할당되는데 세출위원회는 그들에게 할당된 목표액을 분과위원회별로 세분한다.

세 번째로 세출위원회의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세출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 의한 비공개 청문회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그리고 세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하원 본회의에 상정한다. 하원에서 심의가 끝난 세출예산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를 상원세출위원회는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원세출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청문회 절차는 하원과 유사하나 형식적인 면이 다분하다. 상원은 일종의 재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하원에서 삭감된 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세출법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출위원회에 제출하고 세출위원회는 이를 거의 수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한다. 상하원의 의견차이는 양원협의위원회에 의해 조정된다.

한편 예산위원회는 다시 제2차 예산결의안을 준비하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 제2차 예산한도결의안의 처리와 사후 조정이 이루어진다. 각 원의 예산위원회는 새로운 정보와 경제사정의 변동, 통과된 세출예산법안 등을 참고로 하여 제2차 예산한도결의안을 각각 상하원에

제출한다. 상하양원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양원협의위원회에 회부되어 타협안이 모색된다. 이에 따라 결의된 제2차 예산한도액은 제1차 한도액과는 달리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

끝으로 세출예산법 및 일반예산법이 제2차 예산결의의 범위 내에서 조정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는 종료된다.

[표] 의회 예산심의절차

- | |
|--|
| 2월 첫 번째 월요일: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을 하원에 접수 |
| 6주 후: 의회예산처가 예산위원회에 예산 예측치를 제출 |
| 4월 15일: 예산결의안 통과 |
| 5월 15일: 하원 세출위원회가 세출법 심의 개시 |
| 6월 15일: 세출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완료 |
| 6월 30일: 하원 본회의에서 세출법 승인 |
| 7월 15일까지: 대통령이 회기중간 수정안(Mid-session Review) 제출 |
| 7월 31일: 상원 본회의에서 세출법 승인 |
| 9월 30일: 세출법 최종통과(final passage) |
| 10월 1일: 새 회계연도 개시 |

제 2 장 연방 정부의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처(OMB) 관련 규범

I. 예산편성권과 관련된 규범

1. 관련 규범의 개관

[표] 미국 예산안 작성절차와 관리예산처(OMB)의 역할

2014 회계년도	운영 계획 협상		회계연도 예산집행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OMB의 검토와 재심의요청을 통한 예산안의 협상과 최종화 (추계심의)	예산 공개	*예산결의 *302(a)와(b)에 의한 배분 *공청회	12개 예산법률에 대한 추조, 통과 그리고 회의													
2015 회계년도	운영 계획 협상	OMB의 검토와 재심의요청을 통한 예산안의 협상과 최종화 (추계심의)	예산 공개	회계연도 예산집행	12개 예산법률에 대한 추조, 통과 그리고 회의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예산결의 *302(a)와(b)에 의한 배분 *공청회	회계연도 예산집행													
2016 회계년도	10월	개별연방정부기관 내부에서 계획	개별연방정부기관이 OMB로부터 진략적 지도 수령	OMB와 검토와 재심의요청을 통한 예산안의 협상과 최종화	개별연방 정부기관의 예산안 제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추계심의	회계연도 예산집행													

미국은 대통령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예산안제출권은 결국 개별 연방정부기관에서 예산안을 작성하면 그러한 예산안을 대통령이 통할하여 연방정부예산안을 작성하여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개별 연방정부기관에서 통과된 예산법률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정법률주의 혹은 예산법률주의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한 연방정부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 후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법률로 의결되고 대통령이 의결된 예산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로 공포되고 이러한 예산법률을 연방정부기관이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실 산하에 소속된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이하 ‘OMB’)는 대통령의 예산안제출권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로써 연방정부의 각 부처 혹은 연방위원회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9월말까지이므로 매년 10월이 되면 연방행정부의 각 부처 혹은 기관은 해당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2년 후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2년 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부계획은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이루어지고 3월말부터 7월말까지는 관리예산처(OMB)으로부터 행정청이 전략적 지도(strategic guidance)를 받는다. 이를 관리예산처(OMB)의 준계지도와 심사라고 한다.

8월과 9월에는 연방행정기관 혹은 연방행정위원회는 자신의 예산안을 대통령에 제출하게 된다. 연방행정기관 혹은 연방행정위원회가 제출할 예산안을 가지고 10월이 되면 관리예산처(OMB)의 검토와 재심의요청을 통한 예산안의 협상과 최종화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의회를 통과한 지난해 예산법률을 동시에 집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에 관한 권한을 1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연속적 업무로서 단속적으로 끊어지는 작업이 아니다. 연방행정기관 혹

은 행정위원회는 1년 365일 한편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통과한 예산 법률을 집행하여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예산처(OMB)와 차기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재심의 요청에 의한 예산안의 협상과 최종화가 이루어지는 등 재정관련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파트에서 주로 역점을 두고 기술할 부분은 대통령실 소속 관리예산처(OMB)에서 어떻게 개별연방부처와 연방위원회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취합하여 연방행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가에 관련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장((31 U.S. Code)

제1101조(§ 1101) - 정의

제1102조 - 회계연도

제1103조 - 예산상한제

제1105조 - 예산안의 내용과 의회제출

제1106조 - 예산안 추계 보완과 변경

제1107조 - 결손과 보조 세출안

제1108조 -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출승인요구안의 작성과 제출

제1109조 - 현 정책들과 예상활동들의 추정

제1110조 - 1년을 앞선 예산권부여 입법의 법제화요구

제1111조 - 경제와 효율성의 증진

제1112조 - 회계, 예산 그리고 정책관련정보

제1113조 - 의회정보

제1115조 - 연방 정부와 행정기관의 업무이행계획

제1116조 -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보고

제1117조 - 면제

2. 주요 조문의 해설

제31장

제1101조 (31 U.S. Code § 1101) - 정의

이 장에서

- (1) “행정위원회 혹은 행정기관”에는 워싱턴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D.C.)가 포함되지만 입법부와 대법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예산”은 세출된 금액으로 회계법상
 - (A) 기금
 - (B) 세출이 있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C)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타권한

[해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을 말할 때는 입법기관인 연방의회와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예산이 그 적용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조항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방행정부에 속하는 연방위원회 혹은 연방정부기관은 이에 해당하지만 연방의회와 연방대법원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반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에 포함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Agency”를 행정기관, 행정위원회, 혹은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공법에서 Agency라고 하는 용어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행정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을 원래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회는 1887년 주간무역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이하 ICC)를 설립하여 미국 개별 주간의 철도교통을 규제하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준입법권(quasi-legislative power), 준사법권(quasi-judicial power)인 재결권(adjudication), 그리고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는 제한된 사회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을 위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분리된 정부 기능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뭉으로써 제한된 사회나 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를 신속히 제정하거나 재결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the fourth branch)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미국 의회가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률을 수권법률(Enabling Acts)이라고 한다. 이러한 위원회 제도는 1920년의 미국의 대공황(the Depression),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권리혁명(rights revolution)을 지나면서 엄청난 수로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위원회를 소개한다면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보호위원회(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립된 노동안전위원회(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유해성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소비자보호위원회(the 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 등이 있다.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증권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이 이러한 위원회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연방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명, 연방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인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다. 한편 대통령의 해임권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따라 위원회의 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위원회라고 하고, 대통령이 함부로 위원회의 장을 해임할 수 없는 경우를 독립규제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종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어떤 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보지만 재정과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제31장

제1102조 - 회계연도

재무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9월 30일에 종료한다. 법률에 의해서 발행할 것이 요구되는 세입액과 세출액은 그 회계연도에 따라 출간되어야 한다.

[해설]

우리나라는 매년 1월 1일에서 그 해 12월 31일을 회계연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보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관리예산처(OMB)는 매년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이듬해 10월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협의를 각 부와 가지는데, 이를 춘계심사(Spring Preview)라고 한다. 여기서 각 기관은 현행 시책 및 장래계획의 검토를 행한 뒤 관리예산처(OMB)에 요구계획을 제출한다. 관리예산처(OMB)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얻는다. 그와 동시에 재무성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경제적 가정 및 전망을 작성하고 대통령은 관리예산처장, 관계 각료와 함께 예산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한다. 관리예산처(OMB)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재정정책, 예산규모, 개별시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예산의 일반적 지침을 결정하고 관리예산처는 각 기관에 예산안의 작성요령(technical guideline)을 시달, 대통령이 정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한다.

7월과 8월 중에 각 기관은 관리예산처(OMB)가 내린 ‘한도액’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하는데, 이 예산요구서의 작성과정에 있어서 각국(局)이나 산하기관 간의 예산확보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예산요구서는 관리예산처(OMB)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되며, 관리예산처(OMB)의 예산심의관들은 청문회를 열어 각 기관의 예산견적을 검토하고,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을 재검토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청문회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 차관 그리고 국장, 과장의 설명을 듣는다. 이 청문회와 기타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건의서가 작성되면 이를 심의위원회(review committee)가 심의한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예산권고(budget recommendation)를 준비한다.

제1103조 - 예산상한제

의회는 특정 회계연도의 미국정부의 예산지출은 그 해의 미국정부의 세입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다.

[해설]

이 조항은 미국 공법 번호 97-258호(96 Stat. 908.)로 1982년 9월 13로 법조문화되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세입의 한계 속에서 세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균형예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조항이다.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하는 균형예산이 바람직한지 혹은 세입을 벗어나서 세출을 하는 초과예산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데 미국연방정부는 기본적으로 균형예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1105조 - 예산안의 내용과 의회제출

(a) 매년 1월의 첫 번째 월요일 당일 혹은 그 후 적어도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까지 대통령은 다음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에는 예산교서(budget message) 그리고 요약 그리고 부속정보(supporting information)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매년 예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정부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정보
- (2) 실재적인 경우에는 정부 프로그램의 정보와 달성에 관한 정보
- (3) 다른 정보의 바람직한 분류
- (4) 제안된 세출안과 함께 있는 지출에 관한 요약정보에 조정계정
- (5) 이 조항의 (b)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와 그 후 4개년 연속 회계연도에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예측된 지출과 제안된 세출안
- (6)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와 이후 4회계연도의 세입예산(estimated receipts)을 다음의 조건 하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 (A) 예산이 제출될 때에 유효한 법률과
 - (B)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안의 제안들
- (7) 직전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 전용, 지출
- (8) 현 회계연도의 세입 그리고 세출, 전용과 제안된 전용
- (9) 다음의 수지보고서
 - (A) 직전 회계연도말의 재무 상태;
 - (B) 현 회계연도말의 재무의 추정적 상태; 그리고
 - (C) 만약 예산의 재정적 제안들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의 연말의 재무에 대한 추정적 상태.
- (10) 정부 부채에 관한 핵심정보
- (11) 정부의 재무 상태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세부적으로 대통령이 설명하기 원하는 다른 연방재정상태에 관한 정보
- (12) 정부의 활동 및 기능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법률에 의하여 예산안에 계상된 각각의 계획에 대하여,
 - (A) 다음 회계연도에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된 세출승인 및 지출금액과
 - (B) 다음 회계연도 이후 4 회계연도 동안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출승인의 추계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 (13) 다음 회계연도의 추계지출 및 세출승인안이 부족한 경우, 추가재원의 한도액
- (14) 다음 회계연도의 예측 및 통제불가능한 지출의 한도액
- (15) 1974년 의회예산법 제301조 제a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 각각에 대한 분류서
- (16) 1974년 의회예산법 제3조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회계연도 조세지출예산의 규모. 다만, 이 경우 현재 상황에서 예산안 상의 계획이 행하여질 때, 그에 따라 변화되는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7) 직전회계연도 세출승인법상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승인이 수권되고 2년 후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세출수권이 있는 각 사업상의 증여·계약 및 기타 지불에 대한 2년 후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승인 추계에 관한 정보
- (18) 상대적으로 불가피한 지출이 소요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의 비교자료(주요사업별로 분류)
- (19)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과 실제세입액의 비교자료 및 주요세입원천별로 세입예산액과 실제예산액의 비교자료
- (20) 제18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된 개별 금액간의 차액에 대한 설명과 분석자료
- (21) 수평적 예산(a horizontal budget)은 다음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A) 국가기상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상사업 및 기상학과 관련된 사업
 - (B) 각 기관 사업의 특징과 세출승인액
 - (C) 추계 목표와 재정소요
- (22) 예산권한과 예산수권안, 실제지출과 실제지출안 및 다음 각목에 따른 정보
 - (A) 기관별 사업 및 임무단위로 표시한 국가 재정수요에 대한 자세한 구조
 - (B) 사업 및 임무에 대한 자료
- (23) 1970년 직업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법률과 1977년 탄광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른 세출승인에 대한 개별 세출계정

- (24)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국고자금회수에 대하여 재무부에 대한 권고안
 - (25) 1978년 감찰법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찰관과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 세출계정
 - (26) 국가마약통제계획에 의한 사업과 관계되고 국가마약통제국이 요구한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27) 연방재무관리국이 요구한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28) 1999 회계연도 이후,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예산에 대한 연방정부실행계획
 - (29) 강력범죄방지신탁기금의 세입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30) 1994년 연방인력구조조정법 제5조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재 기관별 정규직 직위 규모와 감축계획
 - (31) 대통령실의 수석재무관(the Chief Financial Officer)이 요구한 세출승인 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32)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 제257조(b)(2)(A)에 규정된 기준선과 같은 법 제275조(b)(2)(C)에 규정된 물품세를 확대하는 경우, 개별 사업의 예산수권과 지출액의 수준(규모)에 관한 보고서
 - (33) 재무부 산하 조사국 범죄수사관학교와 법의학연구실 조직의 세출 관련 사업별 세출계정
- ...
- (39) 112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보고서나 계획으로 요구되는 다른 계획이나 보고서와 중복되거나 오래된 것으로 행정기관들에 의해 삭제 또는 통합으로 지목된 보고서나 계획의 명단
- (b) (a)(5)항의 규정(향후 5년 동안의 추계지출서 및 세출승인안을 제출)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포함된 입법부 및 사법부의 추계된 지출계획 및 세출승인안은 매년 10월 16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이를 수정없이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 (c) 대통령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추계액(예산액 제출시의 현행 법률하에서)과 이번 회계연도말 세출충당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추계액이 지출추계액보다 적은 경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상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d) 대통령이 예산액 및 그 첨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자료가 제출되기 전 이번 회계연도에서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 (1) 대통령은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a)항에 의하여 전달된 각 예산안에 관련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같은 보고서에는 공·사 합동자본투자사업 및 군사자본 투자사업으로 분류되는 주요사업을 위한 세출승인요구안 및 신규지출원인행위수권 및 실제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같은 보고서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사업을 위한 세출승인요구안 및 지출원인행위수권 및 실제지출의 총 합계액에 대한 요약 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분석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공·사 합동자본투자 및 군사 자본투자의 현재 사업수준과 그러한 투자의 10년간 경상가격 및 5년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최대·최저수준에 대한 추계서
- (B) 가장 최근에 표준양식으로 작성된, 10년간의 각 주요사업 영역에서의 공·사 합동자본투자 수요의 요약과 평가분석보고서
- (C) 각 주요사업에 대한 추정 공·사 합동자본투자 수요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문제의 분석과 확인
- (D) 다음 각 요인을 포함한, 추정 공·사 합동자본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확인
 - (i)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
 - (ii) 공학적 기준
 - (iii) 경영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의 추계
 - (iv)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유사투자지출의 추계
 - (v) 앞의 투자에서 파생된 공공서비스수요에 대한 추계 및 서비스 용량의 추계

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연방의 재정적 자원이 배분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이 목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보고서의 한도까지, 자료가 이용가능하다면 같은 보고서는 주 또는 주내의 주요 대도시정부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2)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승인, 신규지출원인행위 또는 실제지출이 다년간에 걸쳐 서비스 및 기타 편익을 제공하지만 제3호에 의하여 군사 자본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물자산의 건설·취득 및 복원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사 합동자본투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산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한정되는 것은 아님)

- (A) 도로 또는 교량
- (B) 공항과 항공운항시설
- (C) 대량운송시스템
- (D) 폐수처리 및 부대시설
- (E) 수자원사업
- (F) 병원
- (G) 자원재활용시설
- (H) 공공건물
- (I) 우주 및 통신시설
- (J) 철도
- (K) 연방지원 주택건설사업

(3)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승인, 신규지출원인행위 또는 실제지출이 다년간에 걸쳐 국가방위 및 안보를 위한 서비스 및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실물자산의 건설·취득 및 복원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군사 기본투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산은 군사기지·주둔지·군사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다.

(4) 공·사 합동자본투자와 군사자본투자의 구별, 주요 자본투자와 보통 자본투자 간의 구별을 위하여, 관리예산처장은 회계검사원장과 의회 예산처의 협의를 거친 후 이에 사용될 기준과 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분석보고서는 그러한 기준과 지침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 (A) “건축”이라함은 새로운 구조물 및 시설의 설계·기획 및 건립과 기존 구조물 및 시설의 증축, 기존 장소 및 인접 장소에서의 재건축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과 시설을 위한 신규 및 대체 장비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B) “취득”이라함은 소유지·부지·장비·구조물, 시설의 추가 및 구매·리스·거래·기부 등에 의한 주식의 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C) “복원”이라함은 기존 구조물 또는 설비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거나 건물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변환 또는 운용주식의 부분적 대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f) (a)항에 따라 제출된 1회계연도의 예산안은 1985년 이후에 효력을 가지는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통제법(1985년)상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g)

(1) 관리예산처장은 이 조에 따라 연례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각 예산안상 개별 대상단위로서의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자문과 지원업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A) (1)항에서의, (B)목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자문 및 지원업무”라 함은 비정부적 원천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 (i) 경영과 전문적 지원업무
- (ii) 연구·분석·평가
- (iii) 공학 및 기술적 업무

(B) (1)에서의 “자문 및 지원업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 (i) 정형화·자동화된 자료처리와 의사전달업무가 자문 및 지원업무의 조달계획에 있어 주요부분이 아닐 경우의 의사전달업무
- (ii) 브룩스 건축 및 기술법 제901조에 의하여 정의된 건축 및 기술업무
- (iii) 기초수학·의학·생물학·물리학·사회학·심리학 및 기타 현상에 근거한 조사업무

(h)

(1) 2003년 의약품개선근대화법률 제801(a)(2)조에 의한 메디케어 재원의 경고가 1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a)조에 의해 다음해를 위한 예산의 의회 제출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경고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메디케어 신탁기금의 신탁운영위원회(이 법률의 제801(c)(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가 승인한 7회계연도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메디케어 기금의 과도한 일반수입(2003년 의약품개선근대화법률 제801(c)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을 제거하는 법률이 이러한 입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이내에 입법화되었다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매년 2월 첫째 월요일에 대통령이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예산처는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예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행정부 예산안의 세입세출계획의 예산우선순위를 분석해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상·하원의 각 분과위원회는 행정부 예산안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분과위원회의 입장과 예산액 추계(estimates)를 포함한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양원의 예산위원회는 세입, 예산권한의 허가, 세출, 예상되는 적자 및 흑자를 포함한 예산결의안을 준비해 의회에 제출한다. 이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5월 15일부터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세출 우선순위를 포함한 세출법안들(Appropriation Bills)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여 6월 10일까지 심의를 마친다. 그리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권한허가와 세출법안들의 차이는 의결된 총예산한도액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6월 30일까지 의회는 세출법안들을 의결한다.

한편 의회예산법은 종전의 회계연도의 개시일 7월 1일과 종료일 6월 30일을 변경하여 현재와 같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였

다.2)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985년의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과 1990년의 ‘예산집행법’ 및 1993년의 ‘포괄적 예산적자감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관리예산처, 의회, 대통령이 참여해 예산 적자 예측과 이에 따른 적자감축을 위한 세출안 삭감 계획수립, 그리고 대통령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회계연도를 개시하게 된다. 의회의 소집일이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10월 1일로 잡게 되면 재정관련 법률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3개월 더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1월 중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1921년 예산회계법의 규정³⁾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예산회계법에 추가하여 대통령에게 11월 1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현행 사업예산(current services budget)⁴⁾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1106조 - 예산안 추계 보완과 변경

- (a) 매년 7월 16일 이전에 대통령은 의회에 이 법률 제1105(a)에 의해서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한 추가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예산안에는
- (1) 회계연도를 위한
 - (A) 세입과 세출의 추정치의 재평가 혹은 실질적 변화
 - (B) 제출 이후에 예산안에 대한 상당한 부담
 - (C) 이 법률 1105(a)(8)과 (9)(B) 그리고 (C)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한 현재 정보
 - (D) 기능, 의무, 요구 사항,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관한 예산과 현재의 추정치에 대한 완전하고 최신 정보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2) 예산안이 제출된 회계연도에 이후 4회계연도 동안의 계속적으로 제출되는 예산에 대한 추정치와 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될

2) 31 U.S.C. §1102.

3) 31 U.S.C. §1109.

4) SENATE REPORT. NO. 688, 93d Cong., 2nd Sess. 1, at 65 (1974).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안의 추정치 그리고
(3) 미래 회계연도를 위하여 예산안이 제출된 회계연도의 범위를 벗어
나는 지출의 추정치에 관한 정보

(b) 매년 7월 16일 이전에 대통령은 요구된 예산권한에 대한 변화에 관
한 의견서, 예상된 예산지출안,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한 예산안 제출된 회계연도의 추정된 세
입안(행정부를 위해서 제안된 사전변화를 포함한)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이 법률의 1105(a)(1) - (14) 그리고 (b)에 의해 제출된
정보의 변화에 의한 효과와 실행성에 관한 지원정보도 포함되어야 한
다. 7월 16일까지 제출되는 정보에는 이 조의 (a)(1)에 의하여 제출될 것
이 요구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미국공법번호 제114-38호로 조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추
가경정예산에 해당하는 본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예산안에서 중요한 시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매년 7월 16일이
다. 매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항들에 대한 추가
예산안의 추정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07조 - 결손과 보조 세출안

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관련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거나 예산안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은 결손과 보조 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안된 세출안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근거와 제안된 세출안의 제안근거들을 포함하
여야 한다. 제안된 전체 세출안이 만약에 예산안에 포함되었다면 이 법
률의 제1105(c)에 의해서 대통령이 추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의 그 조항에 의한 추천을 하여야 한다.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결손과 보조세출안이 제안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것을 변
경없이 즉각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미국 공법번호 114-38로 조문화되었다. 이 조항도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예산안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미국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관련법률의 시행으로 발생한 세출로 인한 결손부분에 관한 예산안과 이를 위한 보조 세출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 일정부분을 제외시키고 결손예산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제출한 결손과 보조세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제1105조 (b)조항과 함께 살펴보면 대통령은 미국 연방의회와 연방법원이 제출하는 매년 10월 16일까지 제출된 지출 계획이나 세출승인안을 수정없이 본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연방의회와 연방법원의 추가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없이 즉각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1108조 -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출승인요구안의 작성과 제출

(a) 이 조항(이 조의 (b)(1)와 (e))에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기관은 연방 정부의 각부, 행정위원회, 혹은 기구들을 말한다.

(b)

(1) 행정위원회의 장의 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세출요구안을 준비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출요구안은 이 장에서 대통령이 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예정하는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이 예정된 날짜까지 세출요구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예산안에 포함될 행정위원회 세출안이나 예산안의 변화 혹은 결손과 보조 세출안을 준비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위원회 세출요구안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의 세출요구안은 대통령이 수시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비용 중

심의 예산안으로부터 발전해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출안과 소요액을 분리하기 위해서 비용 중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2)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위원회의 행정관이나 관리는 행정위원회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위원회의 결손이나 예비적 세출안을 승인하는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대통령과 의회에 할 수 있다.

(c) 행정위원회의 장은 대통령에 제출하는 세출요구안에 이 법령의 제 1501조에 따른 의무들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포함하는 직무진술서를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은 일체성을 보여주는 확인서에 의해서 그 보고서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확인서는 직무집행에 소요되는 액수를 보여주는 확인서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은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정관들을 지명해야하고 그러한 행정관들의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확인서들과 기록들은 행정위원회 내부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와 조정이 용이한 형태로; 그리고

(2) 회계감사와 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d)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행정위원회의 장은

(1) 기능과 세부기능(행정위원회의 매 조직 단위의 수행과제를 포함한)에 의해서 그들의 수행과제들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예산요구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2) 행정위원회의 프로그램들을 그의 수행과제들과 연계시켜야 한다.

(e) 이 조항의 (f)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위원회의 행정관이나 공무원(이 법률의 110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은 의회나 의회의 위원회에 세출추정치, 세출요구안, 추정치나 요구안에 대한 인상요구안, 혹은 정부의 재정적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한 추천서를 의회의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야 한다.

(f) 주간통상위원회(ICC)는 추정예산안, 요구안, 그리고 정보(개인적 필요를 포함하고 있는), 입법추천서들, 의회의 청문회에 대비한 준비된 증

언, 입법에 대한 의견서 등의 부분을 대통령이나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하는 동시에 의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관리들은 조건을 부과하거나 위원회와 의회 혹은 의회의 위원회, 혹은 의회의원들과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g) 이 법률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액수는 세출추정안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가능하다. 이러한 예산액은 사용은 의회세출위원회에서 만들 규정들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다.

[해설]

이 조항은 미국 공법 번호 97-258호로 1982년 9월 13일 법전화되었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 각 기관의 장이 대통령에 대한 개별기관의 세출요구안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러한 세출요구안은 대통령이 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세출요구안이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각 행정기관의 세출요구안에 대한 변경요구권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관리예산처(OMB)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다.

이 조항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주간통상위원회(ICC)에 관한 부분이다. 주간통상위원회(ICC)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른바 독립규제위원회로 주간통상위원회(ICC)의 장에 대통령은 임명권은 가지지만 해임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는 연방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1935년 *Humphrey's Executor v. U.S.* 판결⁵⁾에서 확인한 것으로 대통령의 독립규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간통상위원회(ICC)는 주간통상위원회폐지법률(ICC Termination Act of 1995)에 의하여 이미 1995년 이미 폐지되었고 그 주요기능은 지상운송위원회

5) 295 U.S. 602 (1935).

(the Surface Transportation Board)와 미국 연방교통부(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이미 폐지되고 존재하지 않는 주간통상위원회(ICC)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대통령에 의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되었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권을 가지고 업무의 중립성,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므로 그 업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the Fourth Branch)의 지위를 인정하여 대통령이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독자적인 행정입법권(rule-making)과 재결권(adjudica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장의 해임권의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는 예산과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도 일반 행정기관, 행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제31장

제1109조 - 현 정책들과 예상활동들의 추정

(a) 매년 1월 3일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의 당일이나 그 직후에 대통령은 만약 현재 회계연도 수준에서 정책의 변화 없이 미국정부의 프로그램들과 행위들이 이행된다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예산지출(the estimated budget outlays) 그리고 제안된 예산권한(proposed budget authority)을 의회의 상·하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기능과

행정기관에 의한 예산권한과 지출”(“Budget Authority and Outlays by Function and Agency”)이라는 제목으로 매 기능의 주요 정책들에 의해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해 예산요약표에서 분류들 속에 기능과 속기능 별로 추정예산지출(the estimated budget outlays) 그리고 제안된 예산권한(proposed budget authority)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예산지출과 예산권한의 근거가 된 경제와 정책 추정에 관한 교서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교서에는 인플레이션, 실제경제성장, 그리고 실업률, 정책부담, 그리고 임금인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The Joint Economic Committee)는 추정 예산지출과 제안된 예산권한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지출과 예산권한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매년 3월 1일 이전에 상·하 양원 예산위원회(the Committees on the Budget of both Houses)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매년 1월 3일 혹은 일정기관 내에 추정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을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통령은 추정예산지출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기능 등을 기준으로 주요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함께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The Joint Economic Committee)는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매년 3월 1일 이전에 이를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Budget)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The Joint Economic Committee)는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로 1946년 고용법률(the Employment Act of 1946)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미국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미국 경제의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The Joint Economic Committee)가 대

통령이 제출한 추정예산지출(the estimated budget outlays) 그리고 제안된 예산권한(proposed budget authority)에 대한 최초의 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제31장

제1110조 - 1년을 앞선 예산권부여 입법의 법제화요구

회계연도의 정책이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권을 부여하는 입법의 법제화요구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해에서 1년이 앞선 해의 5월 16일 보다 먼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정책이나 활동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제화 요구는 적어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해설]

미국에서는 예산은 정식으로 예산법안을 의회에서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로 예산법률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예산을 편성하기 적어도 1년 전에 연방의회를 통해 입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통상적인 경우에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입법의 법제화는 예산안의 제출 1년 전에 이미 입법화되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에 총괄기능 관리예산처(OMB)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제31장

제1111조 - 경제와 효율성의 증진

미국정부의 경제와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은

- (1) 행정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추천서를 결정하여 의회에 보낼 수 있다.

추천서에는

- (A) 행정위원회의 업무방법, 활동, 조직;
 - (B) 행정위원회에 대한 예산배정;
 - (C) 특정서비스에 대한 특정활동의 제시; 그리고
 - (D) 특정서비스의 재그룹핑; 그리고
- (2) 행정부의 관리, 조정, 조직에 대한 향상된 계획의 개발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1982년 9월 13일 미국 공법번호 97-258호(96 Stat. 913.)로 조문화되었다. 미국에서는 행정위원회 혹은 독립규제위원회는 의회에 의해서 수권법률(the enabling acts)에 의해서 설립되기도 하지만 폐지법률(Termination Act)에 의해서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다한 경우에는 폐지되기도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간통상위원회(ICC)는 미국에서 개별 주간의 통상을 규제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이미 폐지되고 없는 위원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행정위원회의 신설, 폐지, 업무조정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행정위원회의 업무와 활동, 조직을 물론 예산배정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의회에 추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영속적으로 어떤 행정기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연방행정기관을 재편하고 있으면 연방정부의 경제와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가 통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31장

제1112조 - 회계, 예산 그리고 정책관련정보

현행 미국 연방법률 번호 114-38로 법전화되어 있다.

(a) 이 조항에서는 “행정기관”(agency)은 협동적 소유권의 정부회사를 제외한 미국 연방정부의 부처(department), 행정청(agency), 혹은 정부기구(instrumentality)를 의미한다.

(b)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재무장관, 관리예산처장은 서로 협력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필요에 맞도록 행정위원회의 이용을 위한 회계,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를 위한 표준 정보체계와 표준 데이터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c)

(1)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재무장관, 관리예산처장, 그리고 의회예산처장(the Director of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과 협동하여 회계정책, 세입, 세출, 프로그램, 계획, 활동 그리고 기능을 포함한 정부의 회계, 예산, 정책 정보의 표준용어(standard terms)와 표준 분류(standard classifications)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방정부 행정부에 의한 표준분류와 표준용어가 수립, 유지,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추천하고 이러한 용어와 분류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전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하 양원의 세출·예산 위원회, 하원의 세입위원회, 상원의 재정위원회 그리고 의회예산처의 요구들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d) 행정위원회는 재정,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정보를 의회에 제공할 때에는 앞 (c)(1)에 의해 공포된 표준용어(standard terms)와 표준분류(standard classifications)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대통령과 상의하여 행정위원회의 장관은 가능한 한 필요한 대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1) 예산과 계상의 분류에서의 일관성

(2) 분류와 조직 구조 사이의 합치성

(3) 예산의 정당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비용과 과업실행에서의 조직적 단위에 의한 정보

(f) 의회예산처장과 협력하여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대표들, 그리고 관리예산처장은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정부들과 지방정부들에게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이 자신들의 예산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고 때에 맞게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회계,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1982년 9월 13일 미국 공법번호 97 - 258(96 Stat. 913)로 조문화되었다.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미국 연방의회의 회계감사원(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장으로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5년이다. 회계감사원(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처음에는 일반회계원(the General Accounting Office)이라는 이름으로 1921년 정부예산회계법률(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주요 업무는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미국 재무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과 관리예산처장(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재정문서(the financial statements)를 회계감사(audit)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통합재정문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감사도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감사(audit)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표준 정보체계, 표준 데이터처리 기준, 표준용어(standard terms)와 표준분류(standard classifications) 등을 정부의 회계, 예산, 프로그램 정보 등 분야에서 수립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연방정부에서 예산관련 문서들의 작성 등에 있어서 표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

성을 증진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이러한 표준화 작업도 또한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 작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31장

제1113조 - 의회정보

(a)

- (1) 세입과 세출에 관할권을 가지는 의회의 위원회가 요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의회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실(an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서 원래 요구하였던 세출승인예산액 관련 부가정보는 그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b) 의회위원회 · 회계감사원장 또는 의회예산처장의 요구에 따라, 재무장관 · 관리예산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정보의 소재 및 이용가능한 재정 ·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 (2)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위 재정 · 예산 및 사업정보에 관한 요약표의 작성과 위원회의 장 ·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및 의회예산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련정보의 작성
- (3) 집행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수행된 사업평가서의 제공

(c) 의회예산처장, 각부 장관, 관리예산처장의 협력을 받아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현재의 재정 · 예산 및 사업정보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유지와 동 목록 및 정보체계 내용의 요약
- (2)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의 위원회와 위원이 목록상의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지원
- (3)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의 위원회와 위원이 목록상의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지원

(d)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회계감사원장과 의회예산처장은 개별적 또는 합동으로 이 조와 제717조 및 제1112조 내용을 수행하고, 재정·예산 및 사업정보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 정보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정보파일의 구축과 유지를 하여야 한다. 동 파일은 예산요구와 지출·할당 및 예비금의 적립에 관한 정부의 부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관한 의회수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과 위원회 및 의회의 각 기관이 자료처리와 의사전달기법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파일과 색인을 유지하여야 한다.

(e)

(1)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A) 이 조와 본편 제112조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위원회와 위원의 정부재정·예산 및 사업에 관한 정보 수요를 확인할 지속적인 계획의 실행
- (B) 위원회의 필수적 정보 취득에 대한 지원
- (C) 위원회와 의회의 반복적인 보고 요청에 대한 모니터링
- (D) 보고요청의 변화와 개선을 통하여 불필요한 보고를 제거하고 의회정보의 이용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이 확인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권고안의 작성

(2) 매년 9월 2일 이전에,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근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A) 위(1)(A)에 의해 이루어진 정보수요의 확인
- (B) 기존의 보고요청과 위 정보수요와의 관계
- (C) 연방정부의 기관에 의한 정보보고가 현재 확인된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 (D) 의회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분류기준의 변동
- (E)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의 정보수요확인 프로그램의 활동·개선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F) 전년도 집행부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매년 3월 2일 이전에, 관리예산처장과 각부 장관은 의회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된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A) 의회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분류기준의 변화 시행 계획
 - (B) 전년도 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 (C) 기본 정보분류기준의 사용

[해설]

감사실(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은 연방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연방정부기관의 오·남용(abuse), 낭비(waste), 사기(fraud), 횡령(embezzlement) 등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978년 연방감사관법(the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이 제정되어 12개의 감사실이 설립된 이후에 상당히 증가하여 2016년 현재에는 73개 연방감사실(federal offices of inspectors general)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연방의회 위원회에 대한 예산관련 정보의 제공의무는 물론 연방행정위원회 소속인 감사실(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대하여 연방의회의 위원회가 세출승인예산액 관련 부가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실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회예산처(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연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방위원회(federal agency)로 예산과 경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의회예산처도 연방의회 위원회(committee of Congress),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과 더불어 재무장관·관리예산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예산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31장

제1115조 - 연방 정부와 행정기관의 업무이행계획

(a) 연방정부의 이행계획-1105 (a) (28)조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예산처장은 연방정부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들과 협력해야한다.

관리예산처장은 미국 정부의 각 예산과 함께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제1122조에 규정된 웹 사이트에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주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한다.

(1) 연방정부는 이 계획의 제1120조 (a)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목표를 위해 계획이 제출 된 회계연도 동안 성취될 수 있는 성과수준을 정의하는 연방 정부 성과목표를 수립해야한다;

(2) 현 회계연도 동안 각 연방정부 성과목표에 기여하는 기관, 조직, 정책수행 활동, 규정, 세출, 정책 및 기타 활동을 명시해야한다;

(3) 개별 연방정부 성과목표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고위 연방공무원을 명시해야한다;

(4) 연방정부의 성과지표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분기 별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A) 개별 연방정부 성과목표를 향한 전반적인 진전; 그리고

(B) 개별 기관, 조직, 정책수행 활동, 규정, 세출, 정책 및 (2)호에 따라 명시된 기타 활동의 개별기여;

(5) 명확하게 정의된 분기별 공정표(milestones)를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6) 본질적으로 정부차원이거나 크로스커팅(crosscutting)한 중대한 관리과제를 명시하고 관련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공정표(milestones)를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관리계획을 기술해야합니다.

(b) 행정위원회의 업무수행계획(Agency Performance Plans)–

각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에 행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이용 가능하며, 대통령과 의회에 행정기관의 가용성, 그러한 행정기관의 예산에 설정되어 있는 개별 정책수행활동을 다루는 업무수행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러한 계획에는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달성해야할 성과수준을 정의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2) (c)항에 의거하여 대체 양식이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이고 양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러한 목표를 적시해야 한다.
- (3) 성과 목표가 어떻게 다음에 기여하는지 기술하십시오.
 - (A) 제5장의 제306(a)(2)조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기관의 전략계획에서 수립된 일반적인 목표 및 목적; 그리고
 - (B) (a)(1)항에 의해 요구되는 연방정부 성과계획에 설정된 연방정부 성과목표 중 어느 하나의 목표 달성;
- (4) 적용가능하다면, 이 법률의 제1120(b)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행정기관의 목표 우선 순위로 지정된 성과 목표를 명시하십시오;
- (5) 다음을 포함한 어떻게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십시오. -
 - (A) 운영 프로세스, 교육, 기술 및 기계적 기술, 그리고 이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본, 정보 및 기타 자원 및 전략;
 - (B) 명확하게 정의된 공정표;
 - (C) 행정기관 내, 외부 모두에서 각 성과 목표에 기여하는 조직, 프로그램 활동, 규정, 정책 및 기타 활동을 명시;
 - (D) 해당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연방 정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그리고
 - (E) 목표달성 지도자로 알려진 개별 성과목표의 달성에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명시;
- (6) 고객 서비스, 효율성, 산출물 그리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포함하여 각 성과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형이 잡힌 성과지표의 세트를 수립해야한다;
- (7) 실제 업무수행 결과와 확정된 성과 목표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 (8) 해당 행정기관이 성과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설명 -
 - (A) 측정된 값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
 - (B) 데이터의 소스;
 - (C) 의도된 데이터 사용에 필요한 정확도;
 - (D) 필요한 정확도 수준에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제한사항; 그리고

- (E)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9) 행정기관이 직면한 주요 관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A) 그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
 - (B)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공정표; 그리고
 - (C)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담당관; 그리고
- (10) 해당 행정기관의 사명이나 목표의 달성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에 근거가 되는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수행활동을 명시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수행활동으로 지정하는 증거에 근거한 정당성을 포함해야 한다.

(c) 대체양식. -

행정기관이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특정 정책 활동의 성과 목표를 객관적이고 양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관리예산처장은 대체양식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대체양식은

- (1) (A) (i) 최소한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 (ii)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개별 기술언급을 포함하거나,
- (B) 관리예산처장이 승인한 대체양식이 프로그램 예산의 운영 성과가 기준에 부합 하는지를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용어를 사용하거나;
- (2) 이행목표를 정책수행활동의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왜 실행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d) 정책수행 활동의 취급. -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은 정책수행활동을 집계,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집계 또는 통합이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 또는 운영을 구성하는 정책수행 활동의 중요성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할 수는 없다.

- (e) 부속서(Appendix)－ 행정기관은 연간 성과계획과 함께
- (1) 국방이나 외교 정책의 이익을 위해 기밀로 처리할 것이 집행명령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고; 그리고
 - (2) 행정기관은 이러한 집행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된 계획의 일부를 포함하는 부록을 연간 실적 계획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f) 본질적 정부기능.－

이 조항에서의 기능과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성과 계획의 초안 작성은 연방공무원만이 수행해야 한다.

(g) 최고 인사담당관(Chief Human Capital Officers)－

최고 인사담당관을 두고 있는 개별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최고 인사담당관은 인적 자원 책임자와 관련된 각 기관과 관련하여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는 이 조항(b)(5)(A)에 기술된 연례 성과계획 중 해당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

(h) 정의규정(Definitions.)－ 이 조항과 제1116조부터 제1125조, 그리고 제 9703조 그리고 제9704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용어는－

- (1) “행정기관”(“agency”)은 제5장의 제306조 (f)항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 ;
- (2) “크로스 커팅 (crosscutting)”은 기관적 (행정기관 같은) 경계를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
- (3) “고객 서비스 측정(customer service measure)”은 고객, 의뢰인, 시민 또는 다른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평가로서 품질, 적시성 및 다른 요소 간의 만족도 평가를 포함한다. ;
- (4) “효율 측정(efficiency measure)”은 정책수행 활동의 투입물 (직원이 근무한 시간이나 비용 등)과 산출물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양) 또는 결과 (정책의 바람직한 결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 (5) “주요 관리 도전과제”라 함은 정부 기관 내 또는 기관 전반에 걸쳐 낭비, 사기, 남용 및 관리 불이행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큰 정부정책이나 관리기능으로 의회의 회계감사국(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나 감사관(an Inspector General)에 의해서 파악되거나 명시된 문제들로 이것들이 잘 이행되지 못하면 행정기관이나 정부가 임무를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6) “공정표(milestones)”는 주요 이행목표의 완성이나 관련이행목표의 완성 혹은 작업의 진행의 계획된 사건들을 의미한다.
- (7) “결과측정(outcome measure)”은 의도된 목적과 비교된 정책수행 활동 결과의 평가를 의미한다.
- (8) “산출측정(output measure)”이란 양적 또는 질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활동이나 노력의 표, 계산 또는 기록을 의미한다.
- (9) “성과 목표(performance goal)”란 유형적 표준, 가치 또는 비율로 표현된 목표를 포함하여 실제 업적을 비교할 수 있는 유형의 측정 가능한 목표로 표현된 목표의 성과 수준을 의미한다.
- (10)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란 산출물이나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가치 또는 특성을 한다.
- (11) “정책수행활동(program activity)”란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에 정책수행이나 재정계획으로 명시된 특정 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 (12) “정책수행평가(program evaluation)”란 객관적 측정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방 정책수행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및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이 조항은 2011년 1월 4일에 미국 공법 번호 111-352, § 3(96 Stat. 913)으로 조문화되었다. 이 조항은 원래 정부업무수행과 결과에 관한 법률(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에 관한 것으로 1993년에 처음으로 입법되었다가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동법률 근대화법(the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로 입법화된 것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표는 정부의 업무수행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위원회들이 그들의 업무수행계획

과 보고서를 컴퓨터에 의해 의한 가독성이 있는 형식(machine-readable formats)으로 출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들을 개별 행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목적이 연방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연방정부와 개별 연방정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예산관련정보와 업무수행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조항은 주로 업무수행계획(Performance Plan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수립과 더불어 고려되었던 사항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조항은 다음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성과 결과보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환경보호위원회(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예를 든다면 공식 웹사이트인 <https://www.epa.gov>를 접속하여 계획과 예산부분을 찾아보면 <https://www.epa.gov/planandbudget> 이라는 창이 열리고 여기에는 환경보호위원회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략계획(FY 2014-2018 Strategic Plan), 매년계획과 예산(Annual Planning and Budget)으로 2017년도 예산(FY 2017 Budget), 결과보고(Reporting Results)로 2016년도 결과(FY 2016 Results), 예산과 업무수행역사(Budget and Performance History)로 예산과 지출(Budget and Spending) 등 관련자료들이 있다.

미국 소비자보호위원회(the 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https://www.cpsc.gov>가 공식 홈페이지고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산과 예산집행에 관련된 정보는 <https://www.cpsc.gov/About-CPSC/Agency-Reports/Performance-and-Budg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접속해보면 예산관련자료들과 업무수행관련 자료들이 있다.

제31장

제1116조 -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보고

(a) 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관리예산처(OMB)에 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공개해야한다.

(b)

(1) 개별 정보의 업데이트는 1115 (b) 항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성과계획에 설정된 성과 목표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고 각 회계 연도가 끝난 후 15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 부담으로 정부, 의회 또는 정책 파트너에게 중요한 가치가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

(2) 성과목표가 1115 (c)항의 대체 형식으로 명시된 경우, 성과가 최소한으로 효과적이거나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과는 이러한 명시사항과 관련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c) 개별 정보의 업데이트는-

(1) 성과목표 달성의 성공 여부를 검토하고 이전 5 회계 연도의 실제 실적을 포함해야한다.

(2)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성과목표에 도달 한 성과를 기준으로 현재 회계 연도의 성과계획을 평가해야한다.

(3)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기술해야한다.(정책 활동의 성과가 1115 (c) (1) (A) (ii)에 의거 한 성공적인 정책 활동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다른 대안 양식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수준의 성취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A) 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는가;

(B) 확정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 그리고

(C) 성과 목표가 비실용적이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어떤 조치가 권장되는지;

(4) 이 법률의 제9703조에 근거하여 권리포기(waiver)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때 효과성을 측정하고 그 사용을 기술해야 한다.

- (5) 기관의 전략적 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의 평가와 성과목표의 심사를 포함해야 한다;
- (6)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성과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 (A) 측정된 값을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 (B) 데이터 소스;
 - (C) 의도된 데이터 사용에 요구되는 정확도의 수준;
 - (D)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의 데이터에 대한 한계; 그리고
 - (E)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보상했는지; 그리고
- (7)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완료된 정책수행 평가결과의 요약본을 포함해야 한다.
- (d) 만약 행정기관의 성과 업데이트가 국방이나 외교 정책의 이익을 위하여 기밀로 처리되도록 행정명령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특별히 승인된 업무수행 활동이나 정보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제1115 (e)조에 따라 규정된 기밀부속서에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 이 조항의 기능과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기능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업데이트의 초안 작성은 연방공무원만이 수행해야 한다.
- (f) 매 회계 연도마다 관리예산처장은 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이나 활동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계획에서 표시된 업무수행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기관들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행정기관의 장;
 - (2) 상원의 국토 안보 및 정부 문제위원회(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3) 하원의 감시와 정부개혁 위원회(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al Refor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그리고

(4) 의회감사실(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 만약 한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이나 활동이 1 회계 연도 동안 관리예산처(OMB)에 의해 결정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미충족 목표의 정책수행 효율성을 측정가능한 이정표로 증진하기 위하여 관리예산처(OMB)에 업무성과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개별 미충족 목표의 업무수행 개선전략을 감독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h)

(1) 관리예산처(OMB)가 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이나 활동이 2년 연속하는 회계 연도 동안 충족되지 않은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의회에

(A) 행정기관이 법률의 개정활동이나 계획된 행정적 행위들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B) 만약 예산액이 관리예산처장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이라고 결정되고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명된 추가적 자금지원활동을 기술한다.

(2) 제(1)항(B)호에 기술된 추가 기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재 프로그램 또는 권한의 이전을 이용하여야한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한 후에 관리예산처장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의회에 추가 재 프로그램 또는 권한 이전을 요청해야한다.

(i) 관리예산처(OMB)가 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이나 활동이 3년 연속 회계연도 동안 업무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리예산처장은 그러한 결정이 있었는지 60일 이내에 업무수행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추천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추천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업무수행목표를 미충족한 개별 정책수행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의 재승인;
- (2) 개별 업무수행목표에서 제안된 업무수행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행활동에 필요한 법률개정안 제안;
- (3) 대통령 예산의 삭감이나 감축으로 이어지는 계획된 행정활동이나 정책수행활동의 적시.

[해설]

이 조항은 2011년 1월 4일에 미국 공법 번호 111-352, § 4(96 Stat. 913)로 조문화되었다. 이 조항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개별 미국 정부기관의 소개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의 집행에 관련한 업무 성과에 관한 사항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제31장

제1117조 - 면제

관리예산처장은 1년 예산이 2천만 달러 이하인 행정위원회에게는 제 1115조와 제1116조의 요구사항이나 제5장의 제306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연방행정위원회들은 업무수행계획(Performance Plans)이나 업무성과보고(Agency performance reporting)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러한 소액의 연방예산을 소요하는 있는 행정기관들은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고 비율이 낮기 때문에 관리

예산처장의 재량적 판단으로 업무수행계획(Performance Plans)이나 업무성과보고(Agency performance reporting)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 3 장 의회의 예산심의 관련 규범

I.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CBICA)

1. CBICA의 입법 배경

(1) 의회의 예산통제권의 한계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연방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법 체계상 의회는 회계연도의 시작 이전에 예산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기존의 법률 하에서 상대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의회의 예산통제권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운용 예산계속결의(continuing resolution)⁶⁾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문제도 나타났다. 예산안의 절반 정도가 예산계속결의를 요하게 되면서 재정지출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비효율적 지출이 유발되었다.⁷⁾ 의회의 재정통제력이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의회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로 지불되는 금전의 총액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당해 회계연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실제 사용할 것인지가 통제 없이 결정되었다. 예산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예산절차가 분리 및 비공개됨에 따라 예산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거나 예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도 한계도 있었다.⁸⁾

6) 정부로 하여금 직전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을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의미한다.

7) H.R. REP. NO. 658, 93d Cong., 1st Session. 1, 20 (1974) reprinted in 1974, U.S. CODE CONG. & ADMIN. NEWS(이하, HOUSE REPORT) at 24, reprinted at 3470-71.

이 같은 방만한 재정운영은 1974년 들어 극에 달하였는데, 당시 의회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던 예산의 비율이 75%에 달하기도 하였으며,⁹⁾ 그 결과 이른바 뒷문지출(backdoor spending)의 비율도 증가하게 되었다.¹⁰⁾ 이런 상황에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의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의 일부 항목들, 특히 사회보장비 지출을 거부(impoundment)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의 예산동결권한이 의회의 예산관련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강력히 대두되었고 그 결과 의회의 예산통제권 강화의 움직임도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2) 의회의 예산통제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의 요청

닉슨의 지출거부 사태에 대응하여 연방 의회는 기존의 재정권한을 둘러싼 구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동결권한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통령이 예산절약이나 조기완공 그리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예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서 종래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닉슨 대통령 집권기에 와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어, 100개 이상의 예산프로그램이 닉슨의 견제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닉슨의 예산동결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 내 각계로부터 예산배정을 원하는 소송이 야기되기도 했다.¹¹⁾ 의회는 이러한 조치를 헌법이 연방재정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8) HOUSE REPORT at 22, reprinted at 3468-69.

9) HOUSE REPORT. at 22, reprinted at 3469.

10)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재정지출은 세출예산과정내의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가 법률의 위임, 의회의 할당, 자금에 대한 채무(obligation of funds)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자금에 대한 채무는 의회가 자금을 할당하고 난 이후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밀지출은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며,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의회는 예산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채무관계로 구속을 받게 되어 필요 자금을 반드시 공급해야 할 처지에 처하게 된다. *Ibid.*

11) HOUSE REPORT. at 25, reprinted at 3472.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예산절차에 대한 통제권강화 및 대통령에 의한 지나친 예산동결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이하 ‘CBICA’)'을 제정하였다.¹²⁾ 이 법의 제정으로 대통령의 지출 거부를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의한 예산 심의 과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상·하양원에 예산위원회(The Budget Committee)를 새로 설치하고, 의회에 대통령 산하의 관리예산처(OMB)에 준하는 재정 전문기관으로 의회예산처(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신설되었다.

(3) 동법의 주요 내용

동법은 연방재정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¹³⁾ 이를 실현하기 위해 i) 예산절차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고, ii) 매 회계연도 연방 세입·세출의 적정수준을 의회가 결정토록 하며, iii) 예산동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iv) 국가적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며, v) 의회의 직무수행에 조력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관련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들을 두었다.¹⁴⁾ 이 외에도 큰 규모의 사회보장지출, 예산안 처리의 빈번한 지연, 예산외 지출의 확대 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예산권한의 많은 부분을 찾아오고 의회 자체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정비가 이루어졌다. 상·하 양원의 예산위원회 및 의회예산처도 이 법을 통해 신설되었다.

법률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C Chapter 17

12) Pub. L. No. 93-344, 88 Stat. 297 (1974). 동법은 2 U.S.C.§105, 2 U.S.C.§§621~688에 편재되어 있다.

13) HOUSE REPORT, at 25, reprinted at 3471.

14) 2 U.S.C.§621 (1982).

- § 601 - 설치
- § 602 - 의무와 기능
- § 603 - 예산자료에 대한 공적 접근
- § 604 - 생략
- § 605 - 연방 재산의 판매 또는 임대, 공급, 서비스
- § 606 - 과잉 및 무용 자산의 처분
- § 607 - 연간휴가 기간 동안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일괄지급
- § 608 - 직원체력증진 및 특별성과 보상을 위한 일괄지급
- § 609 - 직원교육
- § 610 - 직원을 대신한 학자금 상환
- § 611 - 직원개발프로그램
- § 612 - 관리직 교환프로그램

2. 의회의 예산 및 재정 관련 활동: U.S.C Chapter 17A

- § 621 - 목적에 관한 공표
- § 622 - 용어의 정의
- § 623 - 예산계획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
- SUBCHAPTER I - 의회예산절차 (§§ 631 to 645a)
- SUBCHAPTER II - 재정절차 (§§ 651 to 658g)
- SUBCHAPTER III - 신용개혁 (§§ 661 to 661f)
- SUBCHAPTER IV - 예산협약집행규정 (§ 665...665e)

3. 지출거부통제(Impoundment Control): U.S.C Chapter 17B

- SUBCHAPTER I - 총칙 (§ 681)
- SUBCHAPTER II - 예산권한의 폐기, 유보 및 집행연기에 대한 의회의 고려 (§§ 682 to 688)
- SUBCHAPTER III - 항목별거부권 (§ 691..)

2. CBICA의 조문 해설

총 칙

제1조(약칭: 목차) 2 U.S.C. § 621

(a) 본 법은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으로 통칭된다. 다만 제1장부터 제9장까지는 「1974년 의회예산법」으로, 제10장의 A와 B는 「1974년 지출거부통제법」으로, 제10장은 「1996년 항목별 거부권법(Line Item Veto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

[해설]

법률 제1조(2 U.S.C. § 621) (a)항에서는 이 법의 명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공식명은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이며 국내에는 주로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혹은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의회의 예산 관련 권한 및 절차의 핵심 사항을 규정한 중요 재정법으로서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제1조에서는 동법의 약칭을 세 개로 나누어 제1장부터 제9장까지는 「1974년 의회예산법」으로, 제10장의 A와 B는 「1974년 지출거부통제법」으로, 제10장은 「1996년 항목별 거부권법(Line Item Veto Act)」으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표기는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CBICA’가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b)항에서는 동법의 내용 및 목차(table of contents)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 법률의 개관에 관한 설명에서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제2조(목적의 공표)

의회는 이 법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공표한다.

- (1) 예산과정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 통제를 확인함
- (2) 연방 세입과 세출의 적정 규모(appropriate level)에 대한 매년도의 의회 결정사항을 제공함
- (3) 지출유보(impoundment)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규정함
- (4) 국가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5) 의회의 직무수행에 조력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해설]

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예산과정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 통제를 확인하고, 연방 세입과 세출의 적정 규모에 대한 매년도의 의회 결정사항을 제공하고, 지출유보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규정하며, 국가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의회의 직무수행에 조력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a) 이 법의 목적상,

- (1) “예산지출(budget outlay)”과 “지출(outlay)”이란 매 회계연도에 있어 예산지출권한(budget authority)에 따른 회계연도기간의 연방자금의 지출 및 순융자(net lending)를 의미한다.
- (2) “예산권한”이란 정부 자금을 포함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실제지출을 유발하게 되는 의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을 의미한다. 단, 예산권한이 여하한 자나 정부에 의해 유발되는 부채의 상환을 보장하거나 보증하기 위한 권한을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세지출”이란 연방조세법률 규정 중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 특별 유예(special credit), 세율우대, 과세이연을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손실을 의미하며,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지출합계액을 의미한다.

[해설]

제3조 정의규정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다섯 가지의 중요 용어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먼저 예산지출(budget outlay)과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예산결의안에는 지출총액이 예산수권과 실제지출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이 때 예산권한이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될 재정자원을 말하고, 실제지출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연방재무부로부터 인출되는 금액을 뜻한다. 즉, 1억 달러 규모의 교량건설을 의회로부터 수권 받았지만, 사업이 지연되어 당해 연도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지출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조세지출이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법에서는 조세지출을 ‘현실의 총소득에 특별비과세, 특별면제, 특별공제를 허용하거나 또는 특별한 세액공제, 특혜적 세율, 또는 세 부담의 이연을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세법 규정 때문에 야기되는 세수 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예산상의 모든 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지원은 간접지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종의 보조금을 부여하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지출의 개념은 미국 재무부 차관보였던 Stanley S. Surrey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으며, 1968년 예산문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계속 -

- (4) “예산공동결의안”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제301조에 규정된 1회계연도의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을 제시하는 공동결의안;
 - (B) 제310조에 규정된 1회계연도의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공동결의안; 및
 - (C) 제304조에 규정된 1회계연도의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을 수정하는 기타 공동결의안
- (5) “세출승인법”이란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1편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해설]

미국의 연방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제출형식은 법안(bill),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결의안(resolution) 등이 있다. 예산 역시 법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을 띠게 되는데, 이 중 의회예산법에서는 예산에 관한 ‘공동결의안’의 의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하여 결정되는 법안으로서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되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예산 공동결의안의 경우 상원과 하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관하여 양원의 견해를 조정하거나 임시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입법적 수단을 가리키는데,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다.

한편 세출승인법은 세출예산법으로도 불리는데 연방기관들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 및 특정목적에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 조항을 말한다. 연방정부에 대한 세출승인은 연차세출승인법 및 영속적인 법 조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 I 장 하원 및 상원예산위원회의 설립

제101조 하원 예산위원회 -주요 규정만 발췌-

(e) 예산위원회는 다음의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세출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 소속 위원 중 5인
- (2)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위원 중 5인
- (3) 그 밖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 11인
- (4) 다수당 원내 대표부 1인
- (5) 소수당 원내 대표부 1인

1974년 이후 5회 연속된 회기 가운데 두 회기 이상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위원에 대한 선임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예산위원회

(a) 모든 예산공동결의안(1974년 의회예산법 3(a)(4)에서 규정) 및 여타 사안들은 1974년 의회예산법 제III편 및 제IV편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 (1) 1974년 의회예산법 제III편 및 제IV편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의 보고
- (2) 현행 법률과 법률안의 예산지출(budget outlays) 영향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연구 결과의 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 (3)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요청 및 평가, 조세지출, 정책, 계획의 예산지출과의 조정 방법에 관한 제안 및 그 연구 결과의 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 (4) 의회예산처의 기능 및 책무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

제102조 상원 예산위원회

(f)(2) 예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 (1) 1974년 의회예산법 제III편 및 제IV편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의 보고
- (2) 현행 법률과 법률안의 예산지출(budget outlays) 영향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연구 결과의 상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 (3)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요청 및 평가, 조세 지출, 정책, 계획의 예산지출과의 조정 방법에 관한 제안 및 그 연구 결과의 상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 (4) 의회예산처의 기능 및 책무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

[해설]

미국 의회의 예산심의 기구는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의회 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로 구성된다. 이 중 예산위원회는 법률안 및 현행 법률에 대한 영향 즉 소요비용을 추계하고, 세출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기법을 고안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¹⁵⁾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기적으로 양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 위원회들은 의회예산처의 기능과 업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나아가 총예산지출의 측정 등과 같은 예산에 관한 현행분석을 역시 주기적으로 양원에 보고하게 된다.¹⁶⁾ 예산위원회는 상·하 양원에 공히 설치되어 있는데, 두 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동일하다. 즉 양원의 예산위원회가 공히, 동법상양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안의 보고, 현행 법률 및 법률안의 예산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상·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조세지출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요청 및 평가, 조세지출, 정책, 계획의 예산지출과의 조정 방법에 관한 제안 및 그 연구 결과의 상·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의회예산처의 기능 및 책무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5) HOUSE REPORT, at 54-76 and S. REP. NO. 688, 99th Cong., 1st Sess. 1, 56 (1974).

16) *Ibid.*

1974년 처음 설립 당시에는 예산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여 다른 위원회들에게 원하지 않는 법률제정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의회에서 허용한 수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의회의 예산 경향은 매년 변화하므로 예산위원회의 지위 또한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순환직인데 비해,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영구직이기 때문에 상원 예산위원회가 하원 예산위원회보다 영향력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더 강력한 측면이 있다.

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총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세출위원회 소속 위원 중 5인, 세입위원회 소속 위원 중 5인, 그 밖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 11인, 그리고 원내의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부 각 1인씩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의회예산처(CBO)

제201조(설치)

(a) 총칙

- (1) 연방 의회의 산하에 의회예산처(CBO)를 둔다. 의회예산처는 처장에 의해 운영되며, 처장의 사고나 궐위 시에 직무를 대행하고 처장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1인의 부처장을 둔다.
- (2) 처장은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하원의장 및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tempore)이 임명한다. 동 권고안은 당파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근거한다. 부처장은 처장에 의해 임명된다.
- (3) 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선거 직전년도 1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만료 전에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부처장은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 (4) 처장은 상원 또는 하원의 결의안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 이하 보수 관련 규정은 생략함 -

(d) 연방 정부와의 관계

처장은 연방 정부의 각 부처·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연방 규제기관·규제위원회로부터 정보, 자료, 추계서 및 통계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들 기관들은 처장이 직무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단 자료의 제공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처장에게는 이들 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통해 보상 또는 보상 없이 해당기관의 설비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들 기관의 장에게도 설비, 시설 및 인력을 의회예산처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f) 세입추계

의회 회기 동안 심의되거나 법제화될 수 있는 소득세, 토지세, 증여세, 소비세 및 원천징수세와 같은 세입 입법에 관하여, 의회예산처는 합동조세위원회가 제공하는 세입추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입추계는 해당 회기동안 의회예산처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는 하원 또는 상원의 모든 위원회에 전달되어 당해 위원회가 세입추계를 의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하원의 예산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수행 및 예산공동결의안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추계를 의결한다.

(g) 세출승인

의회예산처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세출예산이 매 회계연도별로 승인된다.

[해설]

의회예산처(CBO)는 연방의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세입·지출 문제들에 관해서 의회가 대통령과는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1974년 의회예산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기술평가원(OTA)과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이며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예산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산출액을 상·하 양원의 의원들과 양원의 예산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예산처(CBO)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의회가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행정부에 의존하였으나 CBO 설립 이후로는 예산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독자적 입수가 가능해졌다.

CBO의 처장은 양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선거 직전년도인 1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CBO의 내부 조직은 처장 1인, 부처장 1인, 그리고 8개의 실(예산분석실, 재정분석실, 보건인적자원실, 거시경제분석실, 미시경제연구실, 국가안보실, 조세분석실, 기획관리실)로 구성된다. 아울러 CBO 처장 직속으로 의회담당관, 공보관, 경제분석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다. 한편 의회예산법 제(a)항 제(2)호에서는 처장은 당파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CBO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02조(직무와 기능)

(a) 예산위원회에 대한 지원

의회예산처의 우선되는 직무와 기능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권한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 (1) 신규 예산지출권한 또는 조세지출을 인가하거나 규정하는 예산안, 세출승인법안 또는 기타 법안에 대한 정보
- (2) 세입 및 수입, 추정세입 및 수입과 세입여건의 변화에 관한 정보
- (3) 예산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되는 정보

(b) 세출·세입·재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상·하원 세출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하원 세입위

위원회에 해당)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예산처는 해당 위원회의 권한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반 정보(이 조 (a)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c) 그 밖의 위원회와 의원들에 대한 지원

(1) 상·하원의 다른 위원회(위 3개 위원회를 제외한) 또는 의회 합동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예산처는 이 조 (a)항 (1)·(2)에 규정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 및 요청될 수 있는 관련 추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하원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예산처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안에 대한 예산상 또는 재정상의 영향을 검토하는 위원회와 협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A) 주정부, 지방정부, 인디언자치정부에 예산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

(B) 민간 부문에 예산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

(C) 민간 부문에 고용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

(3) 상·하원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예산처는 이 조 (a)항 (1)·(2)에 규정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 및 요청될 수 있는 관련 추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d) 위원회와 합동위원회에 대한 의회예산처 직원의 파견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의회예산처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 상·하원의 여타 위원회 및 의회 합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b)항 또는 (c)항의 조항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회예산처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해설]

CBO의 임무는 재정정책과 관련된 현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며, 행정부 내의 각종 기관 및 부처로부터 이와 같은 정보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주된 업무이다.¹⁷⁾ 이 과

정에서 취합된 정보들은 분석과정을 거쳐 의회의 전 위원회에 공유시키며,¹⁸⁾ 양원 예결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¹⁹⁾

CBO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경제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전망 경제전반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행정부에 의존하는 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회예산처의 경제전망 내용들은 연방정부 관리예산처(OMB)의 경제전망 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나 정확도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한 CBO는 5년간의 세입, 재정적자규모의 예측 등 세출 및 재정수지규모의 변화를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재정수입규모를 초과하는 재정지출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며, 자체자료와 독립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하여 행정부 예산안을 검토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끝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칠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의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석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연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규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적자 흑자 규모는 어느 수준이 적절할지, 항목별 지출규모는 어느 수준에서 규율할 것인지 등을 평가하는 비용추계 업무도 담당한다. 이 같은 비용추계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한편,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재정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e) 예산위원회에 대한 보고

(1) 매년 2월 15일 까지, 처장은 상·하원의 예산위원회에 대하여 그 해

17) 2 U.S.C.§ 601(d) (1982).

18) *Id.* §602(c).

19) *Id.* §602(a).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정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총세입, 총신규예산지출수권, 총지출규모에 대한 대안
- (B) 다음 회계연도의 대통령 제출예산안에 근거하고 있는 추정 경제요소와 규모 변경을 고려시 현행법 하의 조세지출 규모
- (C) 제257조 (b)(2)(A)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준선(baseline)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각 사업과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 제257조 (b)(2)(C)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세에 대한 예산지출권한과 지출의 규모에 대한 설명서

의회예산처의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에는 1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토론내용을 비롯하여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예산지출 배정상의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배정은 주요 사업 및 기능별 분류에 의한 배정을 말하며, 배정의 변경이 중대한 국가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미국의 균형성장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의회예산처장은 수시로 업데이트된 재정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처장은 상·하원의 세출위원회와 협의 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열거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당해 회계연도에 세출승인권한이 법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나 자금을 받은 모든 사업과 활동
 - (B) 당해 회계연도에 세출승인권한이 법으로 부여된 모든 사업과 활동. 다만, 다음 회계연도에 세출승인권한이 법으로 부여되지 않는 사업과 활동을 제외한다.

[해설]

의회예산처는 예산심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 통합하고 있으며, 재정정책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에 제출한다. 관리예산처는 집권당의 정책과 같은 입장에서 서게 되지만, 의회예산처는 야당의 입장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의회예산처도 관리예산처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작성하고 있으나 의회예산처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예산의 심의는 1974년의 의회예산법에 의해 설치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와 의회예산처(CBO)에 의해 진행된다.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위원회가 청문회가 개시되며 예산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진다. 의회예산처가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부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한도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

제3장 의회예산과정 (U.S.C. 제2편 의회, 제631조~제645(a))

제300조(일정표) 매 회계연도의 의회예산과정에 대한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시 한	내 용
2월 첫 번째 월요일	대통령 예산서 제출
2월 15일	의회예산처 예산위원회 보고서 제출
대통령 예산안 제출 후 6주 이내	각 위원회, 예산위원회에 ‘검토 및 추계서’ 제출
4월 1일	상원 예산위원회 예산공동결의안 보고
4월 15일	의회, 예산공동결의안 심사완료
5월 15일	하원, 연차 세출승인법안 심의가능
6월 10일	하원 세출위원회 최종 연차세출승인법안 보고
6월 15일	의회, 조정입법에 대한 심의완료
6월 30일	하원, 연차세출승인법안에 대한 심의완료
10월 1일	회계연도 개시

[해설]

동법은 종전의 예산절차에 관한 일정 전반을 재조정하여 현재와 같은 심의과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매년 2월 첫째 월요일에 대통령이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예산처는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예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행정부 예산안의 세입세출계획의 예산우선순위를 분석해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상·하원의 각 분과위원회는 행정부 예산안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분과위원회의 입장과 예산액 추계(estimates)를 포함한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양원의 예산위원회는 세입, 예산권한의 허가, 세출, 예상되는 적자 및 흑자를 포함한 예산결의안을 준비해 의회에 제출한다. 이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5월 15일부터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세출 우선순위를 포함한 세출법안들(Appropriation Bills)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여 6월 10일까지 심의를 마친다. 그리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권한허가와 세출법안들의 차이는 의결된 총예산한도액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6월 30일까지 의회는 세출법안들을 의결한다.

한편 의회예산법은 종전의 회계연도의 개시일 7월 1일과 종료일 6월 30일을 변경하여 현재와 같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였다.²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985년의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과 1990년의 ‘예산집행법’ 및 1993년의 ‘포괄적 예산적자감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관리예산처, 의회, 대통령이 참여해 예산 적자 예측과 이에 따른 적자감축을 위한 세출안 삭감 계획수립, 그리고 대통령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회계연도를 개시하게 된다. 의회의 소집일이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10월 1일로 잡게 되면 재정관련 법률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3개월 더 확보할 수 있다. 아

20) 31 U.S.C.§1102.

올러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1월중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1921년 예산회계법의 규정²¹⁾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예산회계법에 추가하여 대통령에게 11월 1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현행사업예산(current services budget)²²⁾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²³⁾ 여기서 현행사업예산이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활동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예산당국의 제안을 의미한다.

제301조(연차 예산공동결의안의 채택)

(a) 예산공동결의안의 내용 - 의회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해 10월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다음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예산공동결의안에서는 10월1일에 시작하는 다음회계연도 및 계속되는 적어도 4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 (1)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지출 총액
- (2)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세출위원회가 보고하는 법안과 결의안에 의한 증감규모를 감안한 총연방세입
- (3) 예산흑자 및 적자
- (4) 이 조 (a)항(1)에 따른 총 규모의 배정(allocation)을 토대로 한 주요 기능별 분류에 의한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지출
- (5) 공적 채무(public debt)
- (6) 이 장에서 상원의 시행의결에 따른, 결의안의 다음회계연도 및 계속되는 4회계연도 각각에 대한 사회보장법 제2장에 규정된 노인, 유족, 장애자보험사업의 지출액
- (7) 이 장에서 상원의 시행의결에 따른, 결의안의 다음회계연도 및 계속되는 4회계연도 각각에 대한 사회보장법 제2장(그리고 1986년 내국세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노인, 유족, 장애자보험사업의 수입액

21) 31 U.S.C.§1109.

22) SENATE REPORT. NO. 688, 93d Cong., 2nd Sess. 1, at 65 (1974).

23) *Id.*.

공동결의안상에서는 이 조 (a)항에서 규정된 흑자 및 적자 총액의 산정이나 이 장에서 규정된 여타 흑자 및 적자 총액 산정에 있어, 사회보장법 제2장 및 1986년 내국세법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유족, 장애인보험사업의 지출 및 수입 총액을 포함할 수 없다.

[해설]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부터 의회의 예산절차가 개시된다. 여기서는 예산결의안(resolution), 조정지침(reconciliation), 세출승인(appropriation), 수권(authorization) 과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하원의 예산위원회와 상원의 예산위원회는 각각 청문회를 열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예산결의안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 보고되어 각각 수정을 거친 후, 상하원 공동위원회에서 차이점을 수정한다. 수정사항에 관한 보고서가 각 원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예산결의안이 성립한다.

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활동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조화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전체와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만든 것이 예산결의안이다. 1974년의 의회예산법에 의해 도입된 예산결의안은 매우 간단한 문건이다. 여기에는 예산총괄, 기능별 배분, 그리고 조정지침이 포함된다. 예산총괄은 지출총액한도(spending ceiling)와 세입한도(revenue floor) 및 양자의 차액에 따라 흑자 또는 적자를 표시하고, 부채한도를 포함한다. 기능별 배분은 지출총액을 20개의 기능에 얼마씩 배분할 것인가를 기재한다. 의회예산법은 향후 5개년 이상의 예측치를 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때는 10개년 예측치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측치 산정작업은 관리예산처(OMB)가 아닌 의회예산처(CBO)에서 한다. CBO는 비정파적, 중립적 입장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출기준치는

정책과 법률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가정 하에, 향후 지출 수준을 예측한 금액이다. 행정부 예산안은 세부적인 지출내역까지 포함하지만, 의회의 예산결의안은 전반 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거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심의는 세출위 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서는 세출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이 되서는 안 된다. 예산결의안은 일정상 매년 4월 15일까지 성립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일 예산결의안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의안을 준용하게 된다.

(e) 청문회와 보고서

- (1) 총칙 - 이 조 (a)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을 작성하는 상·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의원, 연방부처와 청, 일반 국민 및 해당 국가조직의 적합한 대표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어야 한다.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공동결의안 심사시 이 조 (d)항에 따라 합동경제 위원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제시된 단기와 중기목표에 대한 권고안을 동 결의안의 일부분으로 심사할 수 있다. 공동결의안 보고서에서는 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상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의안상의 세입추계와 예산지출권한 규모 및 지출규모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권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수록할 수 있다.
- (2) 심사보고서의 필수내용 - 공동결의안이 첨부된 심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A) 공동결의안에 제시된 각 회계연도상의 총 신규예산지출권한 총지출 총세입 흑자 또는 적자 규모와 대통령제출 예산안이 제시하는 규모와의 비교
 - (B) 주요 기능별 분류를 위하여, 재량금액과 의무지출금액으로 분리한 내용이 포함된 총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총지출에 대한 추계서
 - (C) 결의안상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 경제전망 및 심사결과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제전망과 목표

[해설]

대통령이 의회에 접수한 행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원의 예산위원회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예산결의안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 보고되어 각각 수정을 거친 후, 상하원 공동위원회에서 차이를 수정한다. 수정사항에 관한 보고서가 각 원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예산결의안이 성립한다.

제302조(위원회 배정)

(a) 위원회간 지출배정(committee spending allocations)

(1) 위원회간의 배정 -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양원합동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합동설명서에는 동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결의안과 일치하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금액을 제공 또는 창출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 하원 위원회별 결의안상의 첫 번째 회계연도와 적어도 계속되는 4회계연도 각각 및 전체회계연도의 총 신규예산지출권한 배정규모 및 총지출 총액 배정규모.
- 다만, 세출위원회의 경우에는 결의안상의 당해 회계연도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이중배정 금지 - 하원에서는 1개의 위원회에 배정된 어떤 항목(item)도 다른 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다.

(3) 금액의 추가 배분(Further Division of Amounts)

(A) 상원 - 상원의 경우 세출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이 1985년 균형예산 및긴급재정적자제법 의 제250조(c)(4)에 규정된 분류(category)에 맞추어 추가 배분되어야 하며, 동법 제251조(c) 항에 제시된 각 분류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B) 하원 - 하원의 경우 각 회계연도별로 각 위원회(세출위원회는 제외)에 배정된 금액이 합동보고서 제출일까지 법에서 규정 또는 요구하고 있는 금액과 그러지 않은 금액으로 구분하여 추가배분되어야 한다. 세출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한다.

- (i) 재량지출되는 금액과 사업 및 의무지출되는 금액과 사업으로 적정하게 배분

- (ii) 1985년 균형예산및긴급재정적자통제법 제250조(c)(4)에 명시된 분류와 일치하게 배분
- (4) 배정되지 않는 금액 - 상원 또는 하원 모두에 있어, 1개 위원회가 신규예산지출권한 또는 지출에 대한 배정을 받지 않으면, 당해 위원회는 신규예산지출권한 또는 지출에 있어 과 동등한 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5) 하원에서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의 배정 조정
- (A) 예산공동결의안이 4월15일(이 법상 의회 공동결의안 심사완료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하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 (a)항(1)에 따라 즉시 실행이 가능한 배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세출위원회에는 가장 최근에 합의한 예산공동결의안의 재량지출규모와 일치하는 배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B) 이 조 (a)항(1)에 따른 배정이 이 조에 따라 제출되어 즉시 실행이 가능하게 되면, 세출위원회는 재배정(suballocations)을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해설]

예산결의안이 통과되면, 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예산법 제302조(a)에 따라 예산을 재량적 지출 또는 직접 지출에 관한 소관이 있는 상원과 하원 위원회들에게 배정한다. 즉 기능별로 합의된 20개의 지출한도를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와 각 수권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 : 세출 위원회를 제외한 지출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한다. 위원회 숫자와 기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위원회에서 이를 각 위원회에 배정한다. 상원의 예산위원회도 상원 세출위원회와 각 수권위원회에 지출한도를 배정한다. 하원과 상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설정한다. 하원은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에 명기된 범주별로 각 위원회에 지출한도를 배분한다. 그러나 이것이 배정받은 수권위원회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기능별 배분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다. 상원의 예산위원회는 상세한

배정은 피한다. 그 대신 매년 세출에 자금이 지원되는 예산권한, 지출액 및 보장적 사업법에 대한 총액을 각각의 수권위원회에 배정한다.

제302조(위원회 배정) - 계속 -

(b) 세출위원회에 의한 재배정 - 예산공동결의안이 채택되어 즉시시행이 가능하게 되면,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상호협의후 이 조(a)항에 따라 예산연도(budget year, 다음회계연도 예산이 심의되고 있다는 연도)에 배정된 각 금액을 소위원회에 재배정한다. 상·하원 세출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변경된 재배정내용을 즉시 양원본회의에 보고한다. 하원의 세출위원회는 이 조(a)항(3)(B)에 따라 소위원회에 세부배분(division)을 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하원 본 회의에 보고한다.

(c) 규칙위반지적(point of order) - 세출위원회가 이 조 (a)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대한 배정을 받은 후에는, 이 조 (b)항에 의한 재배정(suballocation)을 할 때까지 동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을 부여하는 동 의원회 소관의 법안 공동결의안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를 하원 또는 상원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d) 계속되는 공동결의안 - 이 장 제304조에 언급된 예산공동결의안의 경우에 있어, 이 조 (a)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 및 동조(b)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정을 할 때에는 가장 최근에 합의된 예산공동결의안상의 수정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e) 배정의 변경(altercation of allocations) - 위원회가 이 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을 보고한 직후에는 언제든지 그 배정의 변경을 해당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배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해 이미 의결된 소관입법과 일치되어야 한다.

[해설]

연방예산은 재량적(discretionary) 지출과 의무적(mandatory or entitlement) 지출로 구분되며, 그 예산심의 과정 또한 다르다. 재량적 지출은 재량적 지출은 국방비, 관서운영비 등으로서 전체 연방예산의 1/3에 해당하는데, 그에 관한 심의는 전적으로 세출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세출

위원회는 세출법률안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보장적 지출(entitlements)에 대한 배정도 받는다. 주로 사회복지지출로 구성 되는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의무적(또는 보장적) 지출은 소관 수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재량적 지출을 다루는 상하원 세출위원회에는 각각 13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예산법 제302조 b항에 따라 13개 소위원회의 지출한도가 재배정된다. 소위원회들은 전체위원회로부터 제302조(b)항의 재배정을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최종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 이 재배정은 각 소위원회가 그 소관범위 내의 모든 계정에 대해서 가지는 총예산권한과 지출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지출한도를 초과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다. 의무적 지출을 심의하는 각 수권위원회는 PAYGO 원칙에 따라 어떤 지출을 한도 이상으로 증액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을 명시해야만 한다. 이는 선심성 지출을 방지하고 균형 예산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후 각 세출위원회는 자신들의 예산자원을 다시 소위원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302조(b) 보고서를 발행한다. 소위원회들에게 배정된 모든 금액의 합산액은 전체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하원의 규칙은 세출위원회가 제302조 (b)항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지출 법률안들을 심의할 수 없다.

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의 소관범위로 대변되는 연방 사업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이 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소위원회들 사이에서, 다음으로는 각 소위원회의 소관범위 내에 있는 계정들 사이에서 두 차례의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특정 소위원회에 더 배정하면 다른 위원회에 덜 주게 되고 한 계정에 배정을 늘리면 다른 계정들이 적게 받게 될 것이다. 제302조 (b)항의 재배정 때문에 세출 소위원회들은 지출계획을 서로 조정하게 됐다. 소위원회들은 더 이상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출 총액이나 다른

소위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와도 더 이상 무관할 수 없다. 모든 소위원회들은 각자의 법률안을 최종심의하기 전에, 제302조 (b)항 절차를 통해 지출할 금액을 통지받게 된다.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들과 협의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또는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고 소위원회에 배정액을 제시해 반응을 살피는데 비공식적인 협의를 성립한 경우에 한해서 제302조 (b)항 소정의 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보통 5월에 제302조 (b)항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원 위원회는 6월에 제출한다.

한편 세출위원회는 소위원회들에게 배정된 총액이 예산 한도액을 넘지만 않으면 연중 어느 때라도 제302조 (b)항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제302조 (b)항 보고서는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원래 제302조 (b)항의 배정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배정을 발생시키는 예산합의가 맺어지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된다. 이런 합의는 어떤 경우에는 일부항목을 긴급지출로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출을 확보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추가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여러 자원이 사용되는데 즉, 지출이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된다.

(g) 하원에 있어 세입세출균형원칙(pay-as-you-go)의 예외

(1) 총칙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f)항(1)호 및 4월15일 이후의 제 303조(a)항은 보고된 어떤 법안이나 공동결의안 수정안 또는 그 합동보고서에 적용될 수 없다(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가 가능).

- 만약 가장 최근에 합의된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하여, (i) 보고된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 (ii) 그 수정안의 채택 시행 (iii) 또는 합동보고서에 권고된 형태로 나타나는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이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 현재회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른 세입증가총액(심사 대상 법안의 규정을 감안할 때 지출을 초과하는 세입증가분을 포함)이 적어도 공동결의안상의 총액이내인 경우
- 공동결의안상의 연방세입 총규모가 당해 결의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경우
- 세입액이 제301조(b)항(8)에 규정된 세입세출균형원칙(pay-as-you-go) 절차에 따라 증가되고, 이러한 증가세입이 당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에 적용되는 제311조(a)항은 어떤 법안이나 공동결의안 수정안 또는 그 합동보고서에 적용될 수 없다.(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가 가능)

- 만약 가장 최근에 합의된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때 회계연도에 대하여, (i) 보고된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 (ii) 그 수정안의 채택 또는 시행 (iii) 또는 합동보고서에 권고된 형태로 나타나는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이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 현재 회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른 지출감소총액(심사대상 법안의 규정을 감안할 때 세입감소를 초과하는 지출감소분을 포함)이 적어도 공동결의안상의 총액이내인 경우,
- 공동결의안상의 연방지출 총규모가 당해 결의안이 제시한 대로 감소될 수 있는 경우,

(2) 배정 수정(revised allocations)

(A) 의회가 이 조(a)항(1)(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f)항(1)에 따라 규칙위반지적 대상이 될 수 있었던(또는 (a)항(1)(B)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제311조(a)항의 규칙위반지적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하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제302조(a)항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된 배정안과 수정된 기능별 규모 및 수정된 예산총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B) 이와 이 수정된 배정, 기능별 배분규모 및 예산총액은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가장 최근에 합의된 예산공동결의안상의 배정, 기능별 배분규모 및 예산총액으로서 심사되어야 한다.

[해설]

PAYGO 원칙은 1990년도의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에 의해 성립되었다는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동조절장치(sequester)로서 1980년대의 Gramm-Rudman-Hollings Act의 단점을 보완한다.

CBICA 즉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에서는 이 같은 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가장 최근에 합의된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하여, 보고된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 그 수정안의 채택 시행, 또는 합동보고서에 권고된 형태로 나타나는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이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Pay go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현재 회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규정에 따른 세입증가총액(심사대상 법안의 규정을 감안할 때 지출을 초과하는 세입증가분을 포함)이 적어도 공동결의안상의 총액이내인 경우나, 공동결의안상의 연방세입 총규모가 당해 결의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세입액이 제301조(b)항(8)에 규정된 세입세출균형원칙(pay-as-you-go) 절차에 따라 증가되고, 이러한 증가세입이 당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03조(예산공동결의안의 예상관련 입법 심사전 채택)

(a) 총칙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이 합의될 때까지, 하원의 경우는 그 결의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 대하여, 상원의 경우는 그 결의안이 적용되는 모든 회계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세출승인법안 공동결의안 수정안 또는 동의안 및 이들에 대한 합동보고서를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 (1)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의 최초 규정
- (2) 해당 회계연도기간의 세입증감의 최초 규정
- (3) 해당 회계연도기간에 부담하게 될 국가채무의 한도 증가 또는 감소의 규정

- (4)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의무적 지출권한(new entitlement authority)의 규정(상원에만 적용)
 - (5)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의 증감을 최초로 규정(상원에만 적용)
- (b) 하원의 예외 - 하원에 있어 이 조 (a)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A) 보고된 바와 같이 예산연도후인 첫 번째 회계연도 또는 두 번째 회계연도에 최초로 적용되는 선행적인 재량지출을 위한 신규예산 지출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
 - (B)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다음회계연도에 최초로 세입의 증감을 가져오는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
 - (2) 5월 15일 후의 모든 일반적인 세출승인법안 또는 그 수정안
 - (3) 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은 모든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
- (c) 상원에서의 세출안건의 적용
- (1) 총칙 -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이 합의되고 제302조(a)항에 따라 상원 세출위원회에 동 회계연도에 대한 배정이 행해질 때까지는, 상원은 동 회계연도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안·공동결의안, 이에 대한 수정안 또는 동의안 및 관련 합동보고서를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해설]

1974년의 의회예산법에 의해 도입된 예산결의안에는 예산총괄, 기능별 배분, 그리고 조정지침이 포함된다. 예산총괄은 지출총액한도(spending ceiling)와 세입한도(revenue floor) 및 양자의 차액에 따라 흑자 또는 적자를 표시하고, 부채한도를 포함한다. 기능별 배분은 지출총액을 20개의 기능에 얼마씩 배분할 것인가를 기재한다. 의회예산법은 향후 5개년 이상의 예측치를 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때는 10개년 예측치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측치 산정작업은 OMB가 아닌 의회예산처(CBO)에서 한다. CBO는 비정 과적, 중립적 입장에서

기준치(baseline)를 설정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출기준 치는 정책과 법률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가정 하에, 향후 지출 수준을 예측한 금액이다. 행정부 예산안은 세부적인 지출내역까지 포함하지만, 의회의 예산결의안은 전반 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거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심의를 세출위 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서는 세출위원회의 활동을 제 약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결의안은 일정상 매년 4월 15일까지 성립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만약 예산결의안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의안을 준 용한다.

제304조(예산공동결의안의 수정)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이 제301조에 따라 합의된 후 및 동 회계연도 종료전 어느 때나, 상·하원은 가장 최근에 합의한 동 회계연 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을 개정 또는 재확인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 할 수 있다.

제305조(예산공동결의안의 심사와 관련된 조항)

(a) 위원회 보고후의 하원 절차: 토론

(1) 예산공동결의안이 하원예산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고 하원의 적절 한 의안목록에 올라가면, 하원규칙 제9조 2(1)(6)에 따라 그 후에는 어느 때나 동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동의안은 토론이나 수정안의 제안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의안의 가부여부에 관한 투표를 재심의하기 위한 동의도 상정할 수 없다.

(2) 하원에서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10시간으로 제한되 는데, 이 시간은 다수당과 소수당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추가 토론시간은 이 조 (a)항(3)에서와 같이 4시간이다. 토론을 제한 하는 동의안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동결의안을 위원회에 재 회부(recommit)하기 위한 동의안은 상정할 수 없고, 공동결의안의 가 부 결정에 관한 투표를 재심의하기 위한 동의도 상정될 수 없다.

- (3) 하원 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소수당의원에 의한 1회계연도의 예산 공동결의안에 대한 모두발언이 있는 직후, 경제목표와 경제정책에 대한 4시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 (4) 하원 예산위원회가 보고한 결의안상에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될 추계 금액 및 규모(301조(a) 항에 규정된)에 대한 경제목표(1946년 완전고용법의 제3조(a)(2) 및 (4)(b)에 규정에 따른)를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그 경제목표와 관련이 있는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안은 제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추계 금액 및 규모의 변경을 제안할 때에만 상정될 수 있다.
- (5) 하원에서의 예산공동결의안의 심사는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동 결의안의 수정안은 하원규칙 제23항의 적정 조항에 따라 5분 규칙아래 심사된다. 전원위원회가 하원본회의에 그 결의안을 부의한 후에는, 동의안의 제기여부에 상관없이 결의안과 그 수정안의 순서대로 최종통과(final passage)를 하기위하여, 선결문제동의안(previous question)이 심사된다.
- 다만, 계수일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는 경우, 법 규정이나 어떤 규칙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상의 수치의 변경 위한 수정안(또는 규칙에도 구하고 결의안상의 수치의 변경을 위한 수정안(또는 일련의 수정안들)은 최종통과전 어느 때나 상정될 수 있다.
- (6)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합동보고서와 관련된 하원에서의 토론은 5시간으로 한정되며, 그 시간은 다수당과 소수당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러한 토론을 제한하기 위한 동의안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합동보고서를 재심하기 위한 동의안은 상정될 수 없고, 합동보고서의 가부여부에 관한 투표를 재심의하기 위한 동의도 상정될 수 없다.
- (7) 예산공동결의안과 관련하여 의사철자에 대한 하원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하원의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토론없이 의결된다.

(b) 위원회 보고후의 상원의 절차: 토론 수정안

- (1) 상원의 경우 예산공동결의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 및 관련 동의안과 이의에 대한 토론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제304조(a) 항에 따라 회부된 공동결의안에 대한 토론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토론시간은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 또는 그 지명인간

에 동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 (2) 예산공동결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토론대상 동의안 및 이의에 대한 토론은 1시간으로 제한되며, 그 토론시간은 제안자와 의안처리간사(manager)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다만, 결의안의 의안처리간사가 수정안 동의안 또는 이의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를 위한 시간은 소수당 대표나 그 지명인에 의하여 관리된다. 공동결의안의 조항들과 관련 없는 수정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공동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사항을 주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정안, 토론 가능한 동의안 또는 이의의 심의에 있어 상원의원에게 추가 토론시간을 줄 수 있다.

- (3) 상원예산위원회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원에 의한 1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목표와 경제정책에 대한 4시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 (4) 이 법의 다른 제한에 덧붙여, 상원 예산위원회가 보고한 결의안(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만들어진추계 금액 및1조(a)항에 규정된)에 대한 경제목표 (1946년 완전고용법 의 제3조(a)(2) 및 (4)(b)에 규정에 따른)를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경제목표와 관련이 있는 수정안이 제안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안은 제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추계 총액 및 규모의 변경을 제안할 때에만 상정될 수 있다.

- (5) 토론을 제한하기 위한 동의안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회부를 위한 동의안(상원 휴회일을 제외한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의 범위 안에서 합동보고서를 다시 보고하는 동의안을 재회부하는 것은 제외)은 심사될 수 없다.

- (6) 어떤 규칙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들이 동 결의안상에 수치의 변경, 즉 수치일치 또는 그러한 일치의 지속을 위하여 제안된 경우에는 항상 심사될 수 있다.

(c) 상원의 합동보고서 의결

- (1) 같은 효과를 지닌 동의안이 부결되었을지라도, 예산공동결의안(또는 조정법안 또는 결의안)에 대한 합동보고서 심사를 위한 동의안이 제안될 수 있다.

- (2) 상원에서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합동보고서(또는 상·하원간의 의견서)를 심사하는 동안에는, 불일치하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이들 수정안과 관련이 있는 토론대상 동의안과 이의에 대한 토론은 10시간으로 한정되고, 그 시간은 다수당 및 소수당 지도자들이나 그 지명인들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합동보고서와 관련된 토론대상 동의안 또는 이의에 대한 토론은 1시간으로 제한되고, 그 시간은 합동보고서(또는 상·하원의 의견서)의 제안자와 의안처리 간사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 (3) 합동보고서가 폐기되면, 새로운 합동보고서의 요구를 위한 토론과 조정자 임명을 1시간 내에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은 합동보고서의 의안처리간사 및 소수당 지도자나 그 임명인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합동보고서의 의안처리간사가 그 동의안, 이의 또는 수정안에 찬성하면, 그 반대를 위한 시간은 소수당 지도자나 그 지명인들에게 부여된다.
- (4)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토론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고 그 시간은 합동보고서의 의안처리간사와 소수당 지도자 또는 그 지명인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수정안의 조항과 관련이 없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d) 상원에서 공동결의안의 계수 일치
- (1) 상원에서는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예산공동결의안과
- (2) 합동보고서에서 권고한 것과 달리 규정하여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예산공동결의안의 동의에 대한 투표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해설]

양원의 예산위원회는 매년 2개의 예산한도결의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며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회예산체의 운영을 감독한다.

우선 하원예산위원회는 25명의 위원을 지니고 있으며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서 각각 5명,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13명, 다수당과 소수당의 원내총무진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위원을 막론하고 10년 동안에 예산위원회 배정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상원예산위원회의 16명의 위원은 상원의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각 정당의 상원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제306조(예산위원회에 의한 예산관련입법의 심사)

상 하원예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법안과 결의안 및 이에 대한 수정안이 동 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으면(또는 폐기된 것으로 심사되지 않으면), 동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 법안 결의안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는 해당하는 양원의 본회의에서 심사될 수 없다.

[해설]

상·하원 양원의 각 분과위원회가 행정부 예산안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분과위원회의 입장과 예산액 추계(estimates)를 포함한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양원의 예산위원회는 세입, 예산권한의 허가, 세출, 예상되는 적자 및 흑자를 포함한 예산결의안을 준비해 의회에 제출한다. 이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5월 15일부터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세출 우선순위를 포함한 세출법안들(Appropriation Bills)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여 6월 1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의회가 의결한 예산권한허가와 세출법안들의 차이는 의결된 총예산한도액을 고려하여 수정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6월 30일까지 의회는 세출법안들을 의결한다.

제307조(모든 세출승인법안에 대한 하원 위원회의 심사는 6월 10일까지 완료)

매년 6월10일까지 하원 세출위원회는 당해 소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는 그해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다음회계연도)에 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연차세출승인법안을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의회예산법은 중전의 회계연도의 개시일 7월 1일과 종료일 6월 30일을 변경하여 현재와 같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였다.²⁴⁾ 이에 따라 제307조에서는 매년 6월10일까지 하원 세출위원회는 당해 소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는 그해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다음회계연도)에 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연차세출승인 법안을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985년의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과 1990년의 ‘예산집행법’ 및 1993년의 ‘포괄적 예산적자감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관리예산처, 의회, 대통령이 참여해 예산 적자 예측과 이에 따른 적자 감축을 위한 세출안 삭감계획수립, 그리고 대통령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회계연도를 개시하게 된다. 의회의 소집일이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10월 1일로 잡게 되면 재정관련 법률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3개월 더 확보할 수 있다.

제308조(의회의 예산의결에 있어 보고서 요약서 및 계획서)

- (a) 신규예산지출권한이나 세입 또는 조세지출의 증감을 규정하는 입법에 대한 보고서
- (1) 상·하원의 위원회가 신규예산지출권한(잠정 세출승인이 아닌)을 규정하거나 1회계연도 또는 여러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 및 조세지출의 증감을 규정하는 법안 공동결의안 및 그에 대한 수정안(이하 “법안 등”이라 한다)을 본회의에 보고할 때마다,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에 부대하는 심사보고서에는 의회예산처장과 협의를 거쳐 준비된 설명서(statement)가 첨부된다. 해당 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가결된 위원회수정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유용한 설명서를 작성한다.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이러한 법안 등에 따른 규모와 가장 최근에 합의된 1회계연도 (또

24) 31 U.S.C.§1102.

는 여러 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첨부하여 제 302조(b)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상의 적정 배정규모와의 비교내용

- (B) 심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CBO의 전망서(projection)를 적시에 제출받은 경우, 이러한 법안 등이 1회계연도(또는 여러회계연도) 및 향후 4회계연도 각각에 현행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신규예산지출 권한 예산지출 세입 및 조세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
- (C) 심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CBO의 추계서를 적시에 제출받은 경우, 이러한 법안 등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신규예산지출권한 규모에 대한 추계서 내용.

(2) 합동보고서가 상·하원에 제출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항 (1)에 규정된 정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동 보고서에 첨부되는 의안처리간사(manager)의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불일치로 보고된 합동보고서 또는 수정안이 신규예산지출권한(잠정 세출승인과는 다른) 또는 1회계연도(또는 회계연도들)동안의 세입의 증감을 규정하는 경우
 -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의 기술적 불일치의 경우에 의안처리간사의 합동설명서에 수록된 조정자가 제안한 수정안이 신규예산지출권한(잠정 세출승인과는 다른)을 규정하거나 또는 1회계연도(또는 회계연도)동안의 세입이 증감을 규정하는 경우
- 합동보고서가 제출될 때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지 못하면, 해당위원회는 동 보고서의 심사에 앞서 즉시 이용가능한 정보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의회 예산의결상황에 대한 최신 결과표(up-to-date tabulation)

(1) 의회예산처장은 예산공동결의안의 적용되는 각 회계연도에 있어,세입 또는 조세지출의 증감,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는 법안 및 공동결의안에 관한 의회결의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매월별로 상세한 결과표로 구성된 보고서를 발행하여 상·하원의 위원회에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신 결과표에 한정함이 없이 가장 최근에 채택된 예산공동결의안에 포함된 세출총액(the appropriate aggregate)과 기능별

규모(지출을 포함)를 의회나 상 하원에서 채택하거나 위원회가 보고하는 법안 및 공동결의안상의 규모와 비교하고, 적정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의 규모와도 비교하여야 한다.

(2) 상 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스코어키퍼(scorekeeping)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A) 동 보고서들이 적어도 매월 제공되어야 하나, 의회의 예산심사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의원들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만큼 수시로 제공되어야 하여,

(B) 이 조 (b)(1)에 규정된 결과표의 요약(이것에 한정함에 없이)을 포함하여야 하고,

(C) 실질적 변경없이 이 조 (b)항(1)에 규정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하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c) 의회예산의결에 있어 5회계연도의 전망 -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대로 의회예산처장은 당해 회계연도 초기에 5회계연도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총 신규예산지출권한과 총 예산지출

(2) 5 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세입징수액 및 그 주요 세입원,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흑자 또는 적자규모

(3)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조세지출

(4)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의무적 지출권한

[해설]

비용추계는 연방정부 등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당해 연도 및 향후 수년간의 소요비용을 연도별로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비용추계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한편,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재정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비용추계를 통해 의회 및 의회예산처는 연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규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적자 흑자 규모는 어느 수준이 적

절할지, 항목별 지출규모는 어느 수준에서 규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재정법상 의회예산처의 비용추계의 근거는 의회예산법 제308조와 제40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 및 하원의 예산위원장이 신규 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거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가, 감소를 규정하는 입법의 경우 pay-go입법의 비용추계를 의회예산처장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09조(일상적인 세출승인법안에 대한 하원승인)

미 하원이 그 해 10월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는 연차세출승인법안(당해 세출위원회 각 소위원회 소관에 해당 하는)을 승인할 때까지, 6월 한달동안에는 3일 이상의 휴회를 규정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이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소속 소위원회의 권한상의 변동내용을 의장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세출위원회는 상·하 양원 공히 설치되어 있으며, 산하 분야별 13개 소위원회를 보유한다. 세출위원회는 예산을 확정하며 계수조정 작업을 맡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의회 예산국은 연방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제출한 예산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양원의 예산위원회를 보조하고 기타 위원회 및 위원들에게 예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하원세출위원회는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당과 소수당의 비율은 대략 3 대 2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1974년 의회예산법에 의해 그 영향력이 감소되기는 했으나 하원의 여러 위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이에 비해, 상원세출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원의원의 수가 적으므로 견적이 불가피하다. 종전에는 상원세출위원회가 하원세출위원

회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양원 세출위원회의 영향력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310조(조정)

(a) 예산공동결의안에 조정지침을 포함 -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상의 조항 및 내용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공동결의안에 총액(tota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결의안상의 총액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의 법률, 법안 및 결의안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권한이 수정되어야 한다.

(A)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

(B) 이전 회계연도(prior fiscal years)에 최초적용을 규정한 예산지출권한

(C)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신용대출권한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수정사항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조정지침을 내려야 한다.

(2) 결의안상의 총액에 의하여 세입이 수정되도록 하고, 해당 소관위원회가 세입법, 세입법안, 세입결의안의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조정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결의안상의 총액에 의하여 국가채무의 법제한도가 수정되도록 하고, 해당 소관위원회가 그 수정을 위한 권고안을 내도록 조정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동결의안에는 (1)과 (2) 및 (3)(적자감축 달성을 위한 조정지침을 포함)에서 표시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조정지침을 명시하여야 한다.

(b) 조정입법절차 -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대하여 법률, 법안, 또는 결의안의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을 명시한 공동결의안이 이 조 (a)항에 따라 채택되면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상·하원 중 어느 1개 위원회에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이 내려지면, 해당 위원회는 즉시 이에 따르고, 권고안이 포함된 조정입법을 해당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상·하원의 1개 위원회이상에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이 내려지면, 해당하는 각 위원회는 즉시 이에 따르고, 당해 예산위원회에 조정지침을 수용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를 접수하는 대로 실질적 변경 없이 그 권

고안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본회의에 조정입법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정에 따라, 이 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정결의안은 의안목록에 등록(enroll)되어 있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을 하원 또는 상원의 사무총장에게 분명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공동결의안이 된다.

[해설]

미국연방정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관련 법률이 먼저 성립된 후에 비로소 부과내지 지출된다. 따라서 예산결의안에는 법률적으로 정비할 사안 등이 있으면,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서둘러 작업을 진행시키라는 조정지침(reconciliation instruction)이 포함된다. 조정지침이 사용된 것은 1980년으로서, 이후 거의 매년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의무적 지출을 심의하는 관련 특정 수권위원회들에게 몇 월 며칠까지 지출목표 또는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지시(권고)이다. 만약 소관위원회에서 필요조항을 개정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지휘 하에 본회의에서 직접 개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권고이다.

조정지침 역시 예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으로 자칫 예산위원회가 위원회 위의 위원회로 군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이 3연임까지만 할 수 있으며, 1/2 이상의 위원을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 다수당 지도부, 소수당 지도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대하여 법률, 법안, 또는 결의안의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을 명시한 공동결의안이 채택되고 상·하원 가운데 어느 1개 위원회에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이 내려지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권고안이 포함된 조정입법을 해당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상·하원 1개 위원회 이상에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위원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예산위원회에 조정지침을 수용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를 접수하는 대로 실질적 변경 없이 그 권고안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본회의에 조정입법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정에 따라, 이 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정결의안은 의안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을 하원 또는 상원의 사무총장에게 분명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공동결의안이 된다.

제401조(U.S.C. 제651조) 세출승인 대상 아닌 예산 관련 입법

- (a) 세출승인 대상이 아닌 예산 관련 입법에 대한 통제
하원 또는 상원은 아래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 또는 합동결의안,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를 심사할 수 없다.
- (1) 연방정부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신규 권한
 - (2) 연방정부가 상환책임을 지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신규 권한
 - (3) 신규 신용권한

[해설]

미국의 예산심의의 특징은 세출수권과 세출승인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출수권법은 i> 사업이나 부처의 성립과 운영조건·기한 등을 제시하고, ii> 사업이나 부처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의미한다. 수권입법은 상·하원 중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고 1년 중 항시 심사할 수 있다. 그런데 수권입법은 연차 세출예산법에 계상될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처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뒷문지출’(backdoor spending)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예산상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뒷문지출이란 세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비로서 세출예산법에 의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권법에 근거하여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의미 한다. 미국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을 승인하는 수권위원회(authorizing committees)와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는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한데 뒷문지출은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비이다. 즉 뒷문지출은 세출위원회를 우회한다. 이런 뒷문지출이 많아지면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무력해진다. 조세지출(tax expenditure), 보장적 지출(entitlement)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런 뒷문지출은 세출예산절차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방만한 재정지출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CBICA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의 뒷문지출을 통제하였다. 첫째는 계약권한(contract authority), 즉 정부가 미리 세출예산에 앞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대부권한(loan authority) 즉, 행정기관이 세출예산에 앞서 자금을 차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이며, 셋째는 강제적 자격부여(mandatory entitlements) 즉, 기존의 법률 하에서 정부가 지불채무를 지고 있는 여하한 자에 대해 자금을 지불하는 경우이다.²⁵⁾

동법 제401조에 따라, 계약 및 대출권한에 관한 입법에는 반드시, 이러한 권한이 세출예산절차 내에 정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필히 규정토록 하였다.²⁶⁾

제402조 (의회예산처의 분석)

의회예산처장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하원 또는 상원의 위원회(세출위원회는 제외)에서 보고된 의원의 법안이나 결의안 각각을 위하여 준비하고, 이 위원회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Davidson, *The Congressional Budget: How Much Change? How Much Reform?*, in *Congressional Budgeting* (W. Wander, F. Herbert & G. Copeland eds. (1984), p. 161 .

26) 2 U.S.C.§651(a)

- (1) 그 법안이나 결의안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그것이 효력을 발하는 회계연도 및 후속 4회계연도 각각에 대한 추계 및 추계의 근거자료
- (2) (1)호의 비용추계와 그 위원회 또는 연방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가 가용하다면 비용추계의 비교
- (3) 그 법안이나 결의안에 포함된 연방재무약정 설정을 위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위원회에 추계, 비교, 설명이 시기 적절하게 제출되는 경우, 제출된 추계, 비교, 설명은 이 법안과 결의안에 첨부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비용추계는 연방정부 등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당해 연도 및 향후 수년간의 소요비용을 연도별로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비용추계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한편,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재정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비용추계를 통해 의회 및 의회예산처는 연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규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적자 흑자 규모는 어느 수준이 적절할지, 항목별 지출규모는 어느 수준에서 규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재정법상 의회예산처의 비용추계의 근거는 의회예산법 제308조와 제40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 및 하원의 예산위원장이 신규 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거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가, 감소를 규정하는 입법의 경우 pay-go입법의 비용추계를 의회예산처장에 요구하여야 한다.

의회예산처는 신규예산지출권한 또는 조세지출을 인가하거나 규정하는 예산안, 세출승인법 또는 기타 법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세입 및 수입, 추정세입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제공하고 그 외의 의회위원회에 대해서도 주정부, 지방정부, 인디언자치정

부 그리고 민간부분에 예산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과 민간부분의 고용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한다. 특히 제402조에 따라 의회예산처장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하원 또는 상원의 위원회(세출위원회는 제외)에서 보고된 의원의 법안이나 결의안 각각을 위하여 준비하고, 이 위원회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지출거부의 통제

제A관 일반규정

제1001조(면책규정)

본 법이나 본 법의 수정법상 어떤 내용도

- (1) 의회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나 제한을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 (2) 그 당시 유효한 법률상 인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혹은 향후 대통령 기타 연방 공무원이 실행하거나 승인하는 집행정지를 추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 (3)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변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 (4) 예산권한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그에 따른 지출을 요구하는 법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B관 예산권한의 취소, 유보, 지출거부 제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

제1012조(예산권한의 취소)

(a) 특별교서의 제출

예산권한이 부여된 프로그램의 전체 목적이나 범위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러한 예산권한이 재정정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취소해야 하거나, 1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만 부여된 예산권한의 전부나 일부가 당해 회계연도를 위한 지출원인행위로부터 유보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마다, 대통령은 상·하양원에 아래의 내용을 명시한 특별교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취소를 제안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유보되어야 할 예산권한 금액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그 예산권한이 부여된 정부의 모든 계정, 부처, 시설 및 관련된 구체적 프로젝트나 정부기능
 - (3) 예산권한을 취소하거나 유보해야 할 사유
 - (4) 제안된 취소나 유보에 대해 추정된 재정적, 경제적, 예산상 효과
 - (5) 제안된 취소나 유보와 그 실행 결정에 관한 모든 사실, 상황, 고려사항과 예산권한이 부여된 목적, 의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취소나 유보를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추정된 효과
- (b) 지출원인행위를 실행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이러한 특별소서에서 취소가 제안되거나 유보될 예산권한 금액은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사용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45일 이내에 취소가 제안되거나 유보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절차상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가용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를 제안할 수 없다.

[해설]

CBICA는 대통령의 예산동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대통령의 예산동결권은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의 폐지 및 예산승인의 집행연기의 두가지 형태로 이행되는데 동법은 이 둘을 구분하여 의회의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예산권한의 취소(Rescission of Budget Authority)란 대통령이 예산승인의 일부 혹은 전부가 사업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불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비용의 예산승인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²⁷⁾ CBICA는 이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우선 대통령이 폐지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그 폐지의 내용을 통보하는 특별 서신을 송부토록 하였다.²⁸⁾ 그리고 만일 송부를 받은

27) 2 U.S.C. §683(a).

28) *Id.*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의회가 대통령에 의해 동결된 예산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키로 하는 입법적 조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집행토록 규정하였다.²⁹⁾

예산권한의 집행연기(Deferral of Budget Authority)란 각종 계획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승인된 예산을 대통령이 연기, 보류 혹은 지연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은 본래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해 계획 또는 활동의 이행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행사하게 된다.³⁰⁾ 이에 대해 CBICA는 대통령이 예산집행의 연기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를 통보하는 서신을 의회에 발송토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경우 만일 하원이 대통령의 동결안에 대해 거부의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연기조치가 효력을 가지게 된다.³¹⁾

29) 2 U.S.C.§683(b).

30) 2 U.S.C.§684(a)

31) *Id.*

제 4 장 재정건전성 관련 규범

I .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Public Law No: 112-25 (08/02/2011)

1. 명칭,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1) 명 칭

2 U.S.C. Chapter 20 - 예산적자감축을 위한 긴급권(EMERGENCY POWERS TO ELIMINATE BUDGET DEFICITS): 2011년 개정안의 약칭(Short Title of 2011 Amendment)을 예산통제법이라 한다. 즉 Pub. L. 112 - 25, §1(a), Aug. 2, 2011, 125 Stat. 240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title 20의 901a항, title 31의 301A, 화폐 및 재정, title 20의 본 항과 622항, 645항, 901항 및 904항, 1070a와 1087e, 교육, title 31의 3101항, 본 항과 631, 902항 및 1089항 아래 규정된 주의규정을 입법하고, title 20의 621항 아래 규정된 주의규정의 개정과 이 항 아래 규정된 주의규정을 폐지하는 이법은 2011년 예산통제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³²⁾

(2)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2011년 8월 2일 발효된 예산통제법은 부채상한의 증대를 규정하고 연방예산적자(federal budget deficit)를 줄이려 고안된 절차를 수립하였다.³³⁾ 예산통제법은 재량지출 및/또는 의무지출(직접지출)에 대한 강제

32) This Act [enacting section 901a of this title and section 3101A of Title 31, Money and Finance, amending this section and sections 622, 645, 901, and 904 of this title, sections 1070a and 1087e of Title 20, Education, and section 3101 of Title 31, enacting provisions set out as notes under this section and sections 631 and 902 of this title and section 1089 of Title 20, amending provisions set out as a note under section 621 of this title, and repealing provisions set out as a note under this section].

삭감절차를 개시하는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예산통제법 제1장은 2012~2021년 사이의 각 회계연도의 재량지출의 한계 또는 상한(caps)을 수립하고 있다. 만일 의회가 어느 회계연도에 예산통제법에 의해 허용된 지출한계 이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강제삭감의 자동감축 절차(the automatic reduction process of sequestration)가 초과부분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2012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에는 지출한도가 ‘안보(security)’와 ‘비안보(nonsecurity)’의 범주로 구분되었고, 안보의 범주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재향군인업무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및 국무부(State)가 포함된다. 2014 회계연도에는 안보와 비안보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산통제법 제1장은 매년도 단일한 재량지출한도를 수립한바 있다. 둘째, 예산통제법 제4장은 채무감축에 관한 초당파적인 상·하원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를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예산통제법 제101조는 향후 10년 간 조정 가능한 법정 상한을 재량지출에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제251조를 수정하는 것이며 이는 강제삭감절차(Sequestration process)에 의해 주로 강제될 것이다(enforced). 재량지출은 매년 세출안승인절차를 통하여 규정되고 통제된다. 재량지출에 대한 법정상한은 1990년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 (Title XIII of P.L. 101-508)에 의해 이전에 이미 만들어 졌는데, 동법은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또한 수정하였으며, 1993년과 1994년 확장되었지만(extended), 2002 회계연도 말에 기한만료로 소멸하였다. 예산통제법 제104조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에 있는 소멸 시일을 폐기함으로써, 강제삭감절차를 포함하여 이전의 법령상의 재량지출한도제도가 가진 다양한 특징을 되살리고 있다.³⁴⁾ 예산통제법은 부채

33) CRS Report R41965,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by Bill Henruff Jr., Elizabeth Rybicki, and Shannon M. Mahan.

상한증가에 대한 결의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은 상원의 불승인 결의를 거부할 것인데, 이는 연방재무국이 대통령에서 작금의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차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 2/3의 지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부채상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각 원의 2/3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예산통제법 제1장은 2012~2021년 사이의 각 회계연도의 재량지출의 한계 또는 상한(caps)을 수립하고 있고, 여기에 채무감축의 총량규제를 위하여 상하 양원의 8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슈퍼위원회(Super Committee)를 두어 국가채무 감축계획(deficit reduction plan)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채무감축에 관한 상·하원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로서 12명으로 구성된다.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각 대표들이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위원회가 채무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1월 23일까지 회합을 갖는다. 만약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채무감축 계획안을 의결하여 연방의회에 그 계획안을 보내면, 연방의회는 12월 23일까지 그 계획안에 대해 찬반의 투표를 한다. 슈퍼위원회는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또는 국가채무 감축을 마련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도 감축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슈퍼위원회의 기능은 우리나라 의회의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슈퍼위원회’는 사회복지와 의료보험을 포함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또 수입을 증대시키며, 또는 지출·수입양자를 상계할 수 있다. 만약 슈퍼위원회가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의회가 그 계획에 승인을 거부할 경우, 1.2조 달러의 국가채무를 자동으로 삭감한다.

34) CRS Report for Congress,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11면.

2. 법률의 개관

TITLE I - 10년 재량 한도와 강제삭감(TEN-YEAR DISCRETIONARY CAPS WITH SEQUESTER)

- Sec. 101. 재량지출 한도의 집행
- Sec. 102. 개념
- Sec. 103. 보고와 명령
- Sec. 104. 소멸
- Sec. 105. 1974년 의회 예산 및 지출정지 통제법의 수정안
- Sec. 106. 상원예산집행

TITLE II - 균형예산수정안에 대한 투표

- Sec. 201. 균형예산수정안에 대한 투표(Vote on the balanced budget amendment)
- Sec. 202. 다른 원(other House)에 의한 고려

TITLE III - 부채 상한 불승인 절차

- Sec. 301. 부채 상한 불승인 절차
- Sec. 302. 예산목표의 집행

TITLE IV - 적자감축합동선정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 Sec. 401. 합동선정위원회의 설치(Establishment of Joint Select Committee)
- Sec. 402. 합동위원회 권고의 신속고려(Expedited consideration of joint committee recommendations)

Sec. 403. 재정(Funding)

Sec. 404. 규칙제정(Rulemaking)

TITLE V – 연방 (무상)장학금(PELL GRANT)과 학자금 대여 프로그램
변경(생략)

Sec. 501. 연방 무상장학금

Sec. 502.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이자보조 학비대여 권
한의 종료

Sec. 503. 직접 용자 상환 장려제도의 종료

Sec. 504. title IV의 비적용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negotiated rulemaking)
과 마스터 일정 예외 (master calendar exception)

3. 주요 조문의 해설

TITLE I – 10년간의 재량지출 상한과 강제감축(TEN-YEAR DISCRETIONARY
CAPS WITH SEQUESTER)

(1) 제101조 (2 U.S.C. § 900)의 주요 내용

**SEC. 101. 재량지출의 한계 강제 (ENFORCING DISCRETIONARY SPENDING
LIMITS).**

(a) 집행 -

(1) 강제삭감 - 의회가 회기마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후 15일 이내에,
그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 어떠한 예산연도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삭감을 실행할 것이다.

(2) 예산불일치의 제거 - 그 범주 내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
한 통일적인 비율로 정해진 때에 그 계정에서 법정된 수준의 강제삭
감예산 자원의 배수(multiplying)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큼 특정 범주에

속한 각각의 비면제 예산계정은 감액되어야 한다.

- (3) 군 인원(Military Personnel) - 만일 대통령이 section 255(f) 아래에서 강제삭감으로부터 어떤 인원 계정을 면제하기 위한 권한을 사용하려면, 각각의 하위기능적 범주 051(section 255(f) 아래에서 규정된 권한이 행사되었던 그러한 군인원 계정 이외의)은 군 인원계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지출경비는 감액되지 않는 총 금액만큼을 상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범주 내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일적인 비율로 정해진 때에 그 계정에서 법정된 수준의 강제삭감예산 자원의 배수(multiplying)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큼 더 감액되어야 한다.
- (4) 분할-연도 지출(PART-YEAR APPROPRIATIONS) - If, on the date specified in paragraph (1)에서 특정된 날짜에 만일 예산연도의 일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출을 하게하거나 만드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면, 그러면 paragraphs (2) and (3) 아래에서 계산된 강제삭감금액은 다음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 (A) 당해 계정 또는 그 당해 계정을 위한 후속 분할-연도 지출 계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법에 의해 가능한 해마다 정해진 금액과;
- (5) 회고 검토(LOOK-BACK) - 6월 30일 이후에 진행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 지출이 책정 되어 해당 연도의 범주 내에서 불일치를 야기하는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해당 범주 내의 그 어떠한 강제삭감금액을 고려한 후), 차기 회계 연도의 해당 범주에 대한 재량지출 한도는 해당 위반 금액 또는 그 금액만큼 감소해야한다.
- (6) 회기 내의 강제삭감 - 한 회계 연도의 예산지출이 책정 되어 (의회가 그 회계 연도의 7월 1일 전까지 해당 예산 연도의 회기 종료를 연기하는 한 후) 그 해의 범주 내에서 불일치를 야기하는 경우(해당 범주 내의 사전 강제삭감 금액을 고려한 후), 15일 후에는 (2) 항에서 (4) 항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해당 범주 내에서 해당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삭감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 (7) 추정액 -
 - (A) 의회예산처 추정치 - 의회가 재량지출에 대한 조치를 완료 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의회예산처는 하원 예산 및 상원 예산위원회와 협의 한 후 OMB에 현재의 연도에 대한 새로운 재량 예산

권한 및 지출 및 예산 법령에 의해 제공된 예산 연도와 에 관한 추정 액수를 제공해야 한다.

- (B) 관리예산처 추정치 및 차이점 설명 - 관리예산처는 그 어떤 재량 지출법안의 제정일 이후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하원에 그 법안의 의회예산처 추정치, 해당 연도에 대한 새로운 재량예산 권한과 지출임의의 예산 한도 및 해당 연도에 대한 지출 및 예산 법령에 의해 제공된 예산 연도의 관리예산처 추정치와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의회예산처 추정치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관리예산처와 의회예산처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관리예산처가 판단하면, 관리예산처는 그 차이에 관한 하원 예산 및 상원 예산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며 그러한 차이와 협의는,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위원회에 보고서 발간 전에 논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면에 의한 의견교환을 포함하여야 한다.
- (C) 가정 사항 및 지침 - 본 항에 따른 관리예산처 추정치는 현 경제적 및 기술적 가정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한다. 관리예산처는 본 항에 의거하여 의회에 전달된 관리예산처 추정치를 사용해야한다. 관리예산처와 의회예산처는 하원 예산위원회와 상원, 의회예산처 및 관리예산처 간의 협의 후에 본 단락에 따라 세출규모점검(scorekeeping)기준에 따른 추정치를 작성해야한다.
- (D) 연례 세출승인 - 이 항의 목적 상, 연간 세출 예산에 의해 제공되는 금액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재량 세출 예산이 포함되어야하며, 만일 있다면, 예산 세액은 회계 연도 이전에 제정 된 법률로부터 결과한 그 입법안에 규정된 자금을 위한 계정을 위한 예산연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 (b) 재량세출 한도 조정.
- (1) 개념 및 정의 - 대통령이 미국 법령 Title 31의 1105항에 의거하여 예산을 제출할 때, 관리예산처는 예산을 계산하고, 예산에는 예산 년 및 각 후속연도(outyear) 개념과 정의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재량세출한도 (누적 조정 한도)를 조정을 포함해야한다. 그러한 변경은 최신 개념 및 정의를 사용하여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의 기준선 수준에 일치하여야 하며, 그러한 변경 전에 적용된 개념 및 정의를 사

용하는 수준을 뺀 것이다. 그러한 변경은 하원 예산과 하원 예산 및 상원 예산과의 협의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협의에는 그 위원회에 대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논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면상의 의견교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강제삭감 보고 - 관리예산처가 회계 연도 254 (e), (f) 또는 (g)에 의거 한 강제삭감 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이 제출 한 강제삭감 보고서와 격리 된 예산을 계산해야 하며, 미국 법령 Title 31의 1105 (a)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계 연도 및 각 후속 연도에 대한 재량세출 한도 (조정 된 한도)를 조정을 포함해야 한다.

(A) 긴급 세출응급 처치; 해외 비상 작전 / 긴급테러에 관한 세계 전쟁 - 어떤 회계 연도에 대해, 재량계정에 대한 세출이 제정되면 -

(i) 의회는 회계 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비상사태 요건을 지명하고, 대통령은 이후에이를 지정한다.

(ii) 의회가 회계 기준에 의한 법령의 해외 비상 작전 / 테러와의 세계 전쟁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후속 적으로 지명 한 경우, 조정은 비상사태로 지정된 재량 계정 또는 해외 비상사태/테러와의 세계 전쟁에 대한 예산 배분의 합계를 포함한다.

(B) 장애 검토의 지속 및 재결정 - (i) 만일 사회보장법 타이틀 II 및 XVI 아래에서 계속되는 장애 검토를 위한 금액과 사회 보장법 Title XVI의 적격성 재결정 결정과 관련된 비용을 명시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세출 예산을 작성하는 법안이나 공동 결의안이 제정 된 경우, 해당 회계 연도의 조정은 해당 회계 연도에 대한 해당 비용에 대해 해당 법에 규정 된 추가 신규 예산 권한이 되지만,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생략)

(C) 의료보호 사기 및 남용 통제 (i) 보건 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75-8433--0--7-571)의 의료보호 사기 남용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법안이나 공동 결의안이 제정되면 그 회계 연도에 대한 조정은 그 회계 연도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법에 규정 된 새로운 예산 권한의 금액이 되지만,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생략)

(D) 재해 기금.--

(i) 2012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 연도까지, 의회가 법령의 재난 구호로 지정한 재량계정에 대한 세출이 제정되면, 회계연도에 대한 조정은 재량계정에서 회계연도에 대한 재난구조를 위한 것으로 지정된 세출의 합계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전체규모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I) 가장 높은 해와 가장 낮은 해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재난 구호를 위해 제공된 평균 자금; 그리고

(II) 이전 회계연도의 재난 구호로 지정된 제정된 새로운 재량 예산 권한이 해당 회계 연도의 하위 절 (I)에서 계산 한 평균치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으로, 제정된 금액과 해당 회계 연도의 해당 하위 절에서 계산된 허용 조정 사이의 금액..

(ii) OMB는 2011년 예산통제법 제정 일 이후 30 일 이내에 각 (i) (II)에 따라 계산 된 평균액을 각 원의 세출예산위원회(Committees on Appropriations and Budget)에 보고해야 한다.

(iii) 이 호의 목적을 위해 “재난 구호”라는 용어는 Robert T. Stafford 재해구호 및 응급지원법 (42 USC 5122 (2))의 102 (2)항에 의거하여 수행된 활동을 의미한다.

(iv) 한 회계연도의 이 호에 따른 재해 구호로 간주되는 세출은 회계 연도에 대한 (A)호에 의거한 조정을 받지 아니한다.

(c) 재량권한 지출액 - 이 조항에서 사용 된 바와 같이, ‘재량 지출 한도’는 다음을 의미 한다;

(1) 2012 회계연도에 대해 -

(A) 안보 부문, 684,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그리고

(B) 비안보 부문의 경우 359,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2) 2013 회계연도에 대해 -

(A) 안보 부문, 68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그리고

(B) 비안보 부문의 경우 361,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3) 2014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06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4) 2015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08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5) 2016 회계 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07,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6) 2017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31,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7) 2018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5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8) 2019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82,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9) 2020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재량 범주의 경우, 1,208,000,000,000 달러를, 그리고 (10) 2021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재량 범주에 대해 제 (b) 항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1,234,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해설]

1) 부채 상한 증가와 불승인 절차

2011년 8월 2일 발효된 예산통제법은 부채상한의 증대를 규정하고 연방예산적자(federal budget deficit)를 줄이려 고안된 절차를 수립하였다.³⁵⁾ 예산통제법은 재량지출 및/또는 의무지출(직접지출)에 대한 강제 삭감절차를 개시하는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예산통제법 제1장은 2012~2021년 사이의 각 회계연도의 재량지출의 한계 또는 상한(caps)을 수립하고 있다. 만일 의회가 어느 회계연도에 예산통제법에 의해 허용된 지출한계 이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강제 삭감의 자동감축 절차(the automatic reduction process of sequestration)가 초과부분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3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RS Report R41965,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by Bill Henruff Jr., Elizabeth Rybicki, and Shannon M. Mahan을 참조.

2) 3회에 걸친 부채상한의 증가

예산통제법 (Budget Control Act: BCA)은 부채 한도 증가분을 3 회에 걸쳐 최소 2.1 조 달러 (최대 2.4 조 달러)까지 승인한다. 첫째, 대통령의 보증(certification)에 따라 제한 대상 부채가 부채 한도의 1,000 억 달러 이내인 경우, 부채 한도가 즉시 4,000 억 달러로 인상된다. 둘째, 의회가 대통령의 보증서 수령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불승인 결의안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부채 한계는 추가 5,000억 달러 증가한다. 의회가 상한양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안을 (아마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 행사하면 부채 한도가 증가하지 않고,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수정 된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통제법 Section 253, 255, 256에 규정된 강제삭감절차 및 면제 조항에 따라 “비례적“으로 예산 자원을 삭감하는 것이 요청된다.

3) 법령상의 재량지출의 한계(Statutory Discretionary Spending Limits)

새로운 법령상의 상한제도는 2012회계연도-2021회계연도를 커버하는 각 회계연도의 새로운 예산항목의 금액에 대해 한계를 설정한다 (표 1 참조). 2012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에는 지출한도가 ‘안보 (security)’와 ‘비안보(nonsecurity)’의 범주로 구분되었고, 안보의 범주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재향군인업무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립핵안전위원회(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정보사회운영항목(intelligence community management account)와 모든 국제업무의 예산기능에 있는 모든 항목[all accounts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function (budget function 150)] 즉 국무부(State)를 위한 재량지출의 포함한다.³⁶⁾ 비안보범주는 모든 다른 예산 항목에서의 재

36) OMB는 2012 회계연도의 재량지출액이 예산통제법상의 지출한도의 범위 내였으

량지출을 포함한다. 2014 회계연도에는 안보와 비안보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출상한은 단일한 범주(재량적인 범주에 의해 특정된)에서의 지출에 부과되었으며, 이는 모든 예산 항목의 모든 재량지출을 포함한다. 예산통제법 제1장은 매년도 단일한 재량지출한도를 수립한바 있다.

[표] 2012회계연도-2021회계연도의 재량지출에 대한
법령상의 상한 및 일정한 조정

(단위 10억 달러)

회계연도	재량지출한도	프로그램 통합주도권을 위한 최대 조정액 (Maximum Adjustments for Program Integrity Initiatives)
2012	\$684 안보 \$359 비안보	\$0.893
2013	\$686 안보 \$361 비안보	\$1.050
2014	\$1,066	\$1.253
2015	\$1,086	\$1.484
2016	\$1,107	\$1.561
2017	\$1,131	\$1.723
2018	\$1,156	\$1.743

므로 당해 연도에는 강제삭감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OMB는 2013년 4월 9일에 마찬가지로 2013 회계연도 재량지출한도가 예산통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2013 회계연도의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량지출강제삭감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2019	\$1,182	\$1.784
2020	\$1,208	\$1.784
2021	\$1,234	\$1.805

* 근거: 2011년 예산통제법(P.L. 112-25)에 의한 수정된 균형예산 및 긴급적 자통제법 제251(b)(조정 관련) 및 251(c)(상한 관련)

* 조정(adjustments): 프로그램 통합 계획을 위한 조정에는 장애 수당 및 보충 보안 수입 (SSI) 및 SSI 수혜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재검토 및 “의료보호 사기 및 남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상이 포함된다. “조정은 또한 개념과 정의의 변경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으로 지정된 재량 세출, 해외 비상 작전 / 세계 테러와의 전쟁에 지정된 재난 구호로 지정 될 수 있다. 첫 3 단계의 조정은 그러한 조정에 제한이 없도록 지정된 금액과 같지만, 마지막 단계 인 재난 구제 조정은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매년 재난 구호에 대한 역사적인 평균을 기반으로 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OMB는 BCA 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예산통제법에 포함된 부채상한증가에 대한 동의에 이르는 것은 향후 연방지출의 감소를 위해 고안된 입법절차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산통제법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세출승인절차를 사용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상한을 정하였다. 따라서 의회예산처의 추정은 연방정부지출을 9,170억 만큼 감축시킬 것이다. 또한 예산통제법에 의한 상한은 특정 목적, 예컨대, 테러에 대한 국제대응(Global War on Terrorism)의 비용을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가능한 상한들은 특정 항목(accounts)이나 각 세출법안(appropriations bills)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것들은 재량지출의 총액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상한이다. 처음 2 회계연도 동안은, 상한들은 두 가지의 범주의 지출에 부과된다: 안보(security)와 비안보(nonsecurity). 다

른 회계연도 동안은 모든 재량지출상의 상안이 창설된다. 이러한 상안이 어떻게 위원회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정규의 세출승인절차를 통하여 의회와 대통령이 만들 것이다.

(2) 제102조와 103조의 주요 내용

Sec. 102. 정의.

1985년의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의 250 (c)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4)를 삭제하고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삽입 한다:

“(4) (A) ‘비안보 범주’라는 용어는 (B)에 정의 된 안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재량세출을 의미한다.

(B) ‘안보 범주’라는 용어는 국방부, 국토 안보부, 재향 군인 문제 담당 부서, 국가 핵 안전국, 정보 공동체 관리 계정에 대한 기관 예산과 관련된 재량 세출을 포함하며(95--0401--0-1-1-054), 예산 기능 150(국제 업무)의 모든 예산 계정을 말한다.”

(C) ‘재량 범주’라는 용어는 모든 재량적 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2) 단락 (8) (C)에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삽입한다.

(3) (14)항을 삭제하고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삽입 한다:

“(14) ‘후속연도’라는 용어는 예산연도 이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4) 마지막에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추가 한다:

“(20) “비상 사태”라는 용어는

(A) 생명 또는 재산의 손실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예방 또는 완화 또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 (또는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이로부터의 지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B)는 ‘예상치 못함’이다.

(21) “예상치 못함”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인 상황이 -

(A) 갑자기, 곧 급작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거나 생기지 않

는다.

- (B) 긴급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요구를 의미한다.
- (C) 예상치 못한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 (D) 임시적인, 영구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Sec. 103. 보고와 명령.

1985년 균형 예산 및 비상 적자 통제법의 254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 된다 :

- (1) (c) (2)항에서 “2002”를 삭제하고 “2021”을 삽입 한다.
- (2) (e)항의 끝 부분에 “이 보고서에는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재난 자금 조정에 대한 사전검토가 포함될 것이다.”를 삽입 한다.
- (3) (f) (2) (A)에서 “2002”를 삭제하고 “2021”을 삽입한다. 마지막 기간 앞 부분에 ‘재해 자금 조달을 위한 조정의 최종 추정치를 포함하여’를 삽입한다.

[해설]

102조는 개념정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3조는 현재 연도(2011년)와 2021년에 이르기까지 적용 가능한 재량지출의 한계를 각 영역별로 그리고 그러한 상한 안에서 어떠한 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특정하기 위한 재량에 의한 사전검토와 최종 강제삭감 보고서를 요구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 (1)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재난 자금 조정의 사전검토를 포함하는 강제삭감 보고서 업데이트 및 (2) 조정의 최종 추정치를 포함하여 현재 연도 및 이후 연도의 2021 년까지의 최종 강제삭감 보고서 재난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101 조와 연결되어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에는 지출한도가 ‘안보 (security)’와 ‘비안보(nonsecurity)’의 범주로 구분되었고, 안보의 범주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재향군인업무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및 국무부(State)가 포함된다.³⁷⁾ 2014 회계연도에는 안보와 비안보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산통제법 제1장은 매년도 단일한 재량지출한도를 수립한바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재정의 되어(these terms are redefined), ‘안보’는 국방부의 예산으로 구성되고, ‘비안보’는 모든 다른 정부지출(VA, DHS, 그리고 State)을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재정의된 안보와 비안보 사이의 구별은 2014~2021 사이의 각 회계연도에 그대로 유지된다. ‘안보-비안보’의 구별은 강제삭감이 이러한 범주 안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만일 의회가 주어진 회계연도에 어느 범주에 허용된 예산을 넘어 사용하게 되면, 초과지출은 그 제한 위반이 이루어진 범주 안에서 취소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는 예산통제법 제1장 아래에서 광의로 정의되었으며 원래는 2012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에 지출이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양원 합동위원회의 실패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절차 아래에서는 안보가 보다 협소하게 정의 되며 분리된 안보와 비안보의 범주는 2021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에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3) 제105조 (2 U.S.C. § 645)의 주요 내용

“Sec. 105. 1974 년 의회의 예산 및 투입 통제에 대한 개정.

(a) 조정.- 1974년 의회예산법 31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a)의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

“(a) 조정 - 세출안 또는 공동 결의안보고 후 또는 그 개정안에 대한 제안 또는 회의 보고서의 제출시 하원 예산위원회 또는 상원위

37) OMB는 2012 회계연도의 재량지출액이 예산통제법상의 지출한도의 범위 내였으므로 당해 연도에는 강제삭감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OMB는 2013년 4월 9일에 마찬가지로 2013 회계연도 재량지출한도가 예산통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2013 회계연도의 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량지출강제삭감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예산 권한 및 그로부터 나오는 지출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1985년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의 251 (b)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2) (b)와 (e)를 삭제하고 (c)와 (d) 항을 각각 (b)와 (c) 항으로 재지정한다.

(3) 끝에 다음 새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d) 하원에서의 긴급적자 등.- (1) 하원에서 보고된 세출안 또는 공동 결의안이나 이에 대한 수정안 또는 회의 보고서에 1985년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251 (b) (2) (A)에 따라 긴급요구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감소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1974년 의회예산법의 Title III 및 Title IV 및 하원의 규칙을 위한 조항의 예산 효과를 계상하지 않는다.

(2) (A) 하원에서 보고된 세출안 또는 공동 결의안 또는 이에 대한 수정안 또는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감소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상황으로 이 조항의 타이틀 제4항 및 하원 규칙에 대한 예산 조항의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B) 하원에서 (A) 호에 따라 지정을 파기하겠다는 제안은 이 타이틀과 제4조 및 하원 규칙의 목적상 예산 효과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C) (B)호에 따라 개정 된 개정안은 보류 조치에 의해 충당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된 각 금액을 충당하거나 달리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계류 중인 수단의 독회에서 순서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e) 불필요한 지출 한도의 집행 - 하원이나 상원에서 제시된 임의 지출 한도를 초래하는 법안, 공동 결의안, 수정안, 동의서 또는 회의 보고서를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의 251항을 초과 할 것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b) 정의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 제3절은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끝에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11) ‘긴급상황’과 ‘예상치 못한’이라는 용어는 1985년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의 250 (c) 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c) 재량한도에 대한 이의절차..- 1974년 의회예산법의 904 (c) (2)절은 “및 312 (c)”를 삭제하고 “312 (c), 314 (e)”를 삽입하여 개정된다.”

[해설]

105조는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원 의원이 Gramm-Rudman-Hollings Act에 의해 요구되는 액수와 동일하게 새 예산 권한 및 지출에 대해 적절한 예산 조정을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원에서 예산위원회의 의장이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을 제공하거나 수입을 줄이는 조항 (긴급적자상황을 지정)을 포함하는 보고 된 법안 또는 공동 결의안, 수정안 또는 회의 보고서의 예산 효과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974년 의회 예산법(CBA),이 법 및 하원 규칙을 위해 재량 지출한도를 초과하게 하는 법안이나 동의를 검토하기 위해 양 기관에서 고려의 순서를 어긋나게 하여 통제 효과를 만든다.

(4) 제106조 (2 U.S.C. § 645)의 주요 내용

Sec. 106. 세입 예산 집행.

(a) 총칙

- (1) 1974년 의회예산법을 2012년 4월 15일까지 시행 할 목적으로, 그 법의 제 300 항을 포함하여, 예산에 대한 사전 합의의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당, 집계 및 수준 (b)(1)항은 2011회계연도 및 2013년-2021년의 적절한 예산 수준을 갖춘 2012회계 연도 예산의 동시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원에서 적용된다.
- (2) 2012년 4월 15일 이후 1974년 의회예산법을 시행 할 목적으로, 해당 법의 항 300을 포함하여 예산에 대한 사전합의에서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당, 집계 및 수준을 포함한다.

(b) (2) 항에 설정된 예산은 2012회계연도 및 2014년에서 2022회계연도의 적절한 예산 수준을 갖춘 2013회계연도 예산의 동시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원에서 적용된다.

(b) 위원회 할당, 총계 및 수준

(1) 예산위원회의 의장은 이 조의 제정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세출위원회,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2항을 시행하기 위해 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와 일치하는 2011년과 2012 회계연도의 위원회 배정;

(B) 2011년, 2012년, 2012년, 2016년 및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 분담위원회 이외의 모든 위원회, 의회 예산 국의 2011년 3월 기준선과 1974년 의회예산 법의 302항을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과 이 법안 이전에 제정되었지만 의회 예산 국의 2011년 3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의 예산 효과를 고려하여 조정됨.

(C) 2011년과 2012 회계연도의 총 지출수준과 2011년, 2012년, 2012년에서 2016년, 2016년에서 2021년까지의 총 수입 수준은 2011년 3월 의회예산처의 이 법안의 예산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기준선과 일치하며, 이 법안 이전에 제정되었지만 의회예산처의 2011년 3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 및 1974년 의회예산법의 31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회보장 세입 및 지출 수준 (D)이 법안과 이 법안이 제정 한 법안의 예산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정된 2011년 3월 의회예산 이 법에 규정되었으나 1974년 의회 예산법의 302항과 311 항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 예산 처의 2011년 3월 기준선에 포함되지 않은 것.

(2)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까지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A) 세출위원회,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2항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와 일치하는 2012년 및 2013년 회계연도 할당액;

- (B) 의회 예산 이외의 모든 위원회 (2012년, 2013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원회 예산에 대한 의회예산 제302항을 시행하기 위한 2012년 3월 기본예산 1974년 법;
- (C) 2012년, 2013 회계 연도의 총 지출 수준 및 2012년, 2013년, 2013년 -2017년 및 2013-2022 회계 연도의 총수입 수준을 합산하여 2012년 3월 의회예산처의 기준 및 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 1974년 의회예산법의 31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그리고 의회예산법의 302항과 311항을 시행하기 위한 2012년 3월 의회예산 예산과 일치하는 2012년과 2013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22 회계 연도의 사회 보장 수입 및 지출 수준
- (D) 2012년과 2013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22 회계연도의 사회 보장수입 및 지출 수준은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2항과 311항을 시행하기 위한 의회예산처의 2012년 3 월 기준예산과 일치

(c) 상원의 paygo 예산점검표(Scorecard)

- (1) S. Con. 20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본항의 제정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s. 21 (제110회 회기)에서 예산 상원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회계 연도의 직접 지출 및 수입의 잔액을 0으로 줄여야한다.
- (2) 2012년 4월 15일까지, S. Con의 20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Res. 21 (제110차 회기)에서 예산 상원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회계 연도의 직접 지출 및 수입의 잔액을 0으로 줄여야한다.
- (3) (2)항에 따라 상원의 paygo 예산점검표를 재설정하면, 의장은 의회 기록에 그러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공표해야한다.

(d) 추가 조정

- (1)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의거 한 임의 재량 지출 한도에 대한 후속 조정을 설명하기 위해이 조에 따라 설정된 배정, 집계 또는 수준을 수정할 수 있다.
- (2) 본 조항에 의거 한 할당, 집계 또는 레벨 설정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S. Con.의 섹션 412 ~ 414. Res. 13 (제111차 회기)는 효력을 유지한다.

(e) 기한종료

(1) (a) (1), (b) (1) 및 (c) (1)은 2012회계연도 예산의 동시 결정이 상원과 하원에 의해 합의 된 경우 1974년 의회예산법 301조에 따라 만료된다.

(2) (a) (2), (b) (2) 및 (c) (2)는 201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동시 결정이 상원과 하원에 의해 합의 된 경우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1조에 따라 만료된다.

[해설]

106조는 2012년 4월 15일까지 CBA를 시행하고 이전의 동시 예산 결의안에 예산 효율표를 집행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 정한 배분, 집계 및 수준이 상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FY2011 및 FY2013-FY2021에 대한 적절한 예산 수준과 함께 2012 회계 연도에 대한 동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106조는 2012년 4월 15일 이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상원의 동일한 할당, 집계 및 수준을 2012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도의 적절한 예산 수준을 갖춘 2013 회계연도 동시 예산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106조는 위원회 할당, 집계 및 수준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며, 상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회계 연도의 직접 지출 및 수익의 잔액을 0으로 줄인다. (2) 2012년 4월 15일까지 (3) 상원의 paygo 예산점검표(scorecard)를 재설정 할 때, 의회 기록에 그러한 조치에 대한 통지를 공표한다. 106조는 위원장이 재량 세출 한도에 대한 후속 조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법에 명시된 배정, 총계 또는 수준을 수정하도록 승인하며, 제106 조는 2012 회계 연도 또는 2013 회계 연도에 대한 동시 예산안이 양 기관에 합의 된 경우 이 조의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제거한다. 또한 106조는 상원규칙에 의한 Paygo제도의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즉, 의회규칙으로서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은

실정법에 의존하는 절차가 아닌 의회의 법제정 절차상의 관행을 통해 정착된 절차이다. 상원은 1993년 이래로 독자적인 세입-지출 균형원칙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하원은 2007년 이후에야 채택하였다.³⁸⁾ 특히 상원 규칙으로서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은 예산통제법 상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을 확장하기(augment)위한 목적으로 기초되었는데,³⁹⁾ 상원·하원 규칙으로서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은 모두 직접지출과 수입에 관한 입법 절차에서 적자 중립적이지 않은 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⁴⁰⁾

이와 비슷한 초기의 노력으로는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에서 의무지출을 규정한 것, 소득의 적정 수준에 관한 의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총지출 한도를 정한 것(제311조), 위원회 지출 분할을 규정한 것(제302조), 협상 절차를 규정한 것(제310조 내지 제311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의회예산법의 해석을 통해 예산 결의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인 의회규칙으로서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을 창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2000회계연도 예산 결의안 제207조에서와 같이 의회의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 내용에 명문화되기도 하였다.

1993년 연방 상원에서 결의된 상원 규칙으로서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은 재정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원래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은 수입과 직접 지출에 관한 입법적 고려를 제약하는 새로운 규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후 개정 과정에서는 만료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가능한 규칙 회피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적용의 확대를 피한다든지, 수입 감소나 직접 지출 증가 등의 보완을 위해 사용하려는 예산 잉여금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이 첨가되었다.⁴¹⁾

38) Keith, 4면.

39) Keith, 2면.

40) Keith, 4면.

41) Keith, 6면.

하원에서는 그 전 몇 차례의 제정 시도가 좌절된 후, 2007년에야 세입-지출 균형원칙을 제정하였다. 상원 규칙과 마찬가지로 하원 규칙에서도 현 회계연도, 그 다음 회계연도, 그리고 이어지는 4회계연도를 포함한 6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5회계연도를 합친 11회계연도 동안 직접 지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입법은 적자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상원 규칙과 달리 하원 규칙에서는 잉여를 감소시키는 직접 지출 입법 자체의 심의 또한 금지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⁴²⁾

의회규칙상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을 실행하는 방식은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point of order)를 이용하는 것이다.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란 일반적으로 의회의 회의 중에 있는 상원의원이 회의 절차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적시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말한다. 의원이 이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심의의 절차가 중단되므로 실질적인 거부권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며, 의장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의 투표로 결정한다.⁴³⁾ 또한 이 규칙은 의원의 주장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의원이 이를 반드시 주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세입-지출 균형원칙과 관련하여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는, 예산이 세입-지출 균형원칙을 위반하여 결의되려 하는 경우, 즉 동등한 상쇄분(offset)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적자 증가 혹은 잉여 감소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의원 개인이 이 절차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여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다.⁴⁴⁾ 의회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이 실정법상의 세입-지출 균형원칙보다 규범력이 컸다고 분석될 수 있는 것은, 의사진행규칙상의 이의제기라는 전자의 실행 방식이 강제조정이라는 후자의 실행 방식에 비해 훨씬 의도대로 잘 작동하였

42) Keith, 7면.

43) 김종면·임현정, 『주요국의 예산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2009), 19면.

44) Bradford & Scorgin, 3면.

다는 뜻이다. 즉, 의사진행규칙상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세입-지출 균형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잘 먹히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 실제 의사진행규칙상 세입-지출 균형원칙상의 이의제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부분의 제안은 재적의원 5분의 3이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되었다. 규칙이 생긴 1993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총 44회의 이의제기가 이루어 졌으며 이 중 8차례 정족수를 채워 세입-지출 균형원칙에 입각한 이의제기가 무력화되었다.

강제조정이라는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의회와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의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으로 실정법상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⁴⁵⁾ 이러한 이유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입법을 통해 강제조정 절차를 무력화시켰으며 실제 삭감이 실행된 예에서도 그 액수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세입-지출 균형원칙이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은 2002년 이후 폐지된 실정법상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계속 그 생존을 유지하여 온 의회규칙으로서의 세입-지출 균형원칙에 의하였던 것이다. 의회 내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정파의 대립이 첨예한 곳이기때문에, 입법절차로서의 의사진행 규칙상 이의제기는 수 십 차례 발동되면서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한계로서 명실 공히 그 위상을 쌓아왔다.

45) 전임 정권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을 물려받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도 1993년 이후 사회복지의 확충을 철학으로 삼는 민주당 의회세력과 뜻을 합하여 각종 사회복지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TITLE II – 균형예산개정안 투표(VOTE ON THE BALANCED BUDGET AMENDMENT)

(1) 제202조 (2 U.S.C. § 645)의 주요 내용

Sec. 202. 다른 원에 의한 고려.

(a) 각원의 고려 -

(1) 참조 - 상원으로부터 201항에 기술된 공동 결의안을 하원이 받는 경우, 그러한 공동 결의안은 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5일의 입법일 이내에 공동 결의안을 보고하지 못하면, 하원이 위원회를 해체하여 공동 결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옮겨야 한다. 하원이 공동 결의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그러한 동의를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상대방이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0분의 논쟁을 제외하고는 개입 없이 명령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한 동의를 채택되면, 하원은 즉시 (3)항에 따라 공동 결의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동의를 폐기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 한다.

(2) 고려 사항의 진행 - 공동 결의안이 적절한 의사진행일정에 회부되거나 위원회가 그것의 대안으로부터 (청구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면제된 후에, 다음의 공동 결의안을 검토하기로 청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원이 공동 결의와 관련하여 진행할 동의를 처리 한 후에는 그러한 동의를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전 질문은 개입 동의 없이 그 채택 동의 명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를 폐기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고려 사항 - 공동 해결책은 회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 결의안에 대한 모든 주문 지점과 그 고려 사항은 면제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반대자가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시간의 토론과 공동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1회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개입 없이 공동 통과 결의로 명령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공동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정당하지 않아야 한다.

- (b) 상원의 결정 사항 - (1) 상원이 하원에서 201조에 기술된 공동 결의안을 받는 경우, 그러한 공동 결의안은 상원의 적절한위원회에 회부되어야한다. 그러한 위원회가 상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5회 회의가 끝날 때 공동 결의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결의안은 합동 결의안을 심의 할 때 자동으로 면제되며 적절한 의사진행일정에 배치되어야한다.
- (2) 공동 결의 및 이에 대한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와 항소에 대한 고려는 20시간을 넘지 않아야하며, 과반수와 소수파 지도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 토론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른 청구안에 대한 개정안이나 연기 명령, 또는 다른 청구에 대한 검토 진행 동의나 공동 해결책을 재개하기 위한 동의는 순서에 있지 않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 또는 이의 제기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의 제기자와 동의 또는 이의 제기에 반대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나누어 질 수 있다. 정족수 청빙 및 투표에 사용 된 시간을 포함하여 공동 결의안의 심의를 위해 사용 된 모든 시간은 총 20시간 동안 고려되어야한다.
- (3) 상원이 공동 결의안을 진행하기로 투표 한 경우, 공동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공동 결의안이 보고되거나 회피 된 이후 또는 결론 직후에 7차 회의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취해 져야한다. 공동 결의안을 심의하고, 상원의 규칙에 따라 요청한 경우 토론의 결론에 단일 정족수가 요청된다.

[해설]

Title II : 균형 예산 수정안에 대한 투표 - 201조는 2011년 9월 30일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원과 상원에 헌법에 대한 균형 예산 수정안을 제안하는 공동 결의안 통과에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조는 양원에서 공동 결의안을 심의하기위한 상세한 입법 절차를 규정한다.

TITLE III – 부채 상한 불승인 절차(DEBT CEILING DISAPPROVAL PROCESS)

(1) 제301조의 주요 내용

301조 부채상한 불승인 절차

- (a) 총칙 - 미국 법전 Title 31의 부제 III의 31 장 1 부 조항은 개정 됨 -
 - (1) 3101(b)항에서 “또는 이와 달리”를 삭제하고 “또는 3101A 또는 다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를 삽입함; 그리고
 - (2) 3101항 이후에 다음을 삽입함:

§3101A. 부채 한도 조정

- (a) 총칙 .-
 - (1) 900 억 달러 .-
 - (A) 인증 -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서면 인증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제 3101 조 (b) 항의 한도 초과분이 한도의 \$100,000,000,000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는 것과 재무부 장관은 기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필요하며, 본 항에 따라 제정 된 비승인 공동 결의안의 제정에 따라 추가로 \$900,000,000,000를 차입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제출하면, 3101 (b) (‘부채 한도’로 언급)항에 제공된 부채 한도가 \$400,000,000,000만큼 증가한다.
 - (B) 분쟁 해결 - 의회는 (b)에서 (f) 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A)에 의거하여 당국의 비승인 결정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하여 고려 된 불승인의 공동 해결은 (b) (2) 항에 제공된 언어만을 포함해야 한다. 본 항에 의거 한 불승인 결의안 제정 없이 불승인 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 부채 한도가 추가로 \$500,000,000,000 증가한다.

(2) 추가 금액

- (A) 인증 - 제 (1) 항에 의거하여 부채 한도가 \$900,000,000,000만큼 증가한 경우, 대통령은 제한 대상 부채가 \$100,000,000,000 이내임을 의

회에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 3101 (b)에 의거하여 차용을 요구하고 기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요구되는 경우 재무부 장관은 본 항에 의거하여 제정 된 반대 의사 결정을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차용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i) 조항 (ii) 또는 (iii)이 적용되지 않는 한 \$1,200,000,000,000.

(ii) 미국의 기록원이 미국 헌법에 대한 균형 예산 수정안을 제안하는 공동 결의안에 따라 미국 헌법 수정안을 비준하기 위해 미국에 제출 한 경우 \$1,500,000,000,000; 또는

(iii) 2011년 예산 통제법의 401 (b) (3) (B) (i) (II) 조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적자 감축액이 \$1,200,000,000,000를 초과하는 공동위원회 의안이 제정되면, (ii)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적자 감축액과 동일한 액수이지만 \$ 1,500,000,000,000보다 크지 않은 액수.

(B) 분쟁 해결 - 의회는 (b)에서 (f) 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A)에 의거하여 당국의 비승인 결정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하여 고려된 불승인의 공동 해결은 (b) (2) 항에 제공된 언어만을 포함해야 한다. 본 항에 의거 한 불승인 결의안을 제정하지 않은 채 비 승인 시간이 소멸되면 부채 한도가 (A) 호에 의거하여 승인 된 금액만큼 증가한다.

(b) 불승인에 대한 공동결정.-

(1) 총칙 - (a) (1) (A)에 규정 된 채무 한도액이 \$400,000,000,00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일 그러한 추가 금액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불승인하는 공동 결의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이 조항 하에서 의회가 (a)(1)(A)항에 의해 규정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또는 (a) (2)항에 기술된 인증을 의회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의회가 회기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한도는 인상되지 않는다,

(2) 공동 결의안 내용 -이 조의 목적 상, '공동 결의안'이라는 용어는 아래의 공동 결의안만을 의미한다 -

(A)(i) 2011년 9월 6일, 7일, 8일 또는 9일에 도입된 (a)(1)항에 규정된 인증에 대한 것 (또는, 상원이 회기 중이지 않은 경우, 상원이 개

회 중인 다음 역수상의 날짜); 그리고

(ii) (a)(2)항에 규정된 인증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그 날짜 후 3일 이내에 도입된다.

(B)는 서문이 없다;

(C) 제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연방 법전 Title 31의 3101A 항에 의거하여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 행사 거부에 관한 공동 결의안’(그러한 제출 일을 포함하는 공란과 함께); 그리고

(D) 결의안 이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연방 법전 Title 31의 3101(A)(a) 항에 의거한 인증에 따라 행사된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것.’

(c) 하원에서의 신속한 숙고.-

(1) 재소집 - (a)(2)항에 규정된 인증을 받으면 대변인은 하원개원이 연기될 경우 이 절에 따라 하원이 그러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하원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해산 - 공동 결의안이 회부된 하원의 어느 위원회든 수정안을 첨부하지 않고 공동의 결의를 발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동 결의안을 보고해야한다.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공동 결의안을 보고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그 공동 결의안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산되며, 공동 결의안은 적절한 일정표에 회부되어야한다.

(3) 숙려 절차 - 공동의 결의안이 공동의 결의안을 하원에 보고했거나 검토를 끝낸 후, 합동 결의안이 채택된 후 6일 이내에 명령이 내려져야한다. (a)항에 의거하여 하원에서 공동 결의안을 숙려하기 위한 절차로의 진행이 청구된다. 청구에 대한 모든 의회의 의의제기는 면제된다. 하원이 특정 제출물을 다루는 공동 결의안을 진행할 동의를 처리한 후에는 그러한 동의를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전 질의사항은 개입청구 없이 그 채택 동의 명령에 따라 고려되어야한다. 그 청구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한다. 폐기된 청구를 재고려하기 청구는 수용되지 않는다.

(4) 고려 사항 - 공동 결의안은 읽은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 결의안에 대한 모든 의의제기와 그 고려 사항은 면제됩니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상대방이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시간의 토론을 제외하고는 개입 없이 공동 통과 결의안에 따라 순서대로 고려되어야한다. 공동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수용되지 않는다.

(d) 상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1) 재소집 - (a)(2)항에 의거 한 인증을 받으면, 상원 의원이 2일 이상 휴회 또는 휴회 한 경우 상원의 소수 지도자와 협의한 후 상원의 다수 지도자 ,이 조에 따라, 상원은 그러한 메시지를 접수 한 후 2일째 날까지 소집해야한다고 상원의 구성원에게 통고해야한다.

(2) 일정표 배치 - 상원에 소개가 있을 때, 공동 결의안은 즉시 의사진행일정에 올려 져야한다.

(3) 원내토의 고려 사항

(A) 총칙 - 상원의 상임 규칙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a)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기간 중 언제든지 의의제기로 이루어지며 (a)(1)항에 규정된 인증은 2011년 9월 14일에 끝나고, (a)(2)항에 규정된 인증은 의회가 하위 항목 (이전의 동일한 효과에 대한 동의가 동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결의안을 검토하기로 청구하면, 공동 결의안 (및 결의안의 검토 반대)에 대한 모든 명령은 면제된다. 절차진행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못한다. 동의여부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청구는 정당한 의의제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의안의 심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공동 결의안은 결정될 때까지 미완성업무로 남는다.

(B) 고려 사항 - 공동 결의안과 그와 관련한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와 이의제기에 대한 고려는 1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하며, 대다수와 소수파 지도자 또는 그의 피지명자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 토론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업무에 대한 개정안이

나 연기 명령,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숙려 진행청구나 공동 해결책을 재개하기 위한 청구는 의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C) 통과 투표 - 상원이 공동 결의안을 진행하기로 투표 한 경우,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결의안의 심의가 끝난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결의안에 단일 정족수 요청 상원의 규칙에 따라 요청 될 경우 토론의

(D) 절차안에 대한 의장의 결정 - 경우에 따라 상원의 규칙 적용과 관련한 의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공동의 결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논쟁 없이 결정되어야한다.

(e)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은 수정안 - 이 조에 따라 고려 된 비승인의 공동 결정은 하원 또는 상원 중 어느 한쪽의 수정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f) 다른 원의 청구에 의한 조정-

(1) 총칙. 공동 결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한 의원이 다른 결의안을 공동의 결의안을 수령하면,

(A) 다른 하원의 공동 결의안은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수령하는 다른 원에서의 절차는 다른 하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동의 결의안이 수령인의 공동 의결을 대신 할 때까지 통산 투표 때까지 다른 하원으로부터 공동의 해결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해야한다.

(2) 다른 원의 공동 결의안 처리

상원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공동 결의안을 도입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하원의 공동 결의안은 본 항에 의거 한 신속한 발의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다.

(3) 동반 조치의 처리 - 만일 상원에서 공동 결의안이 통과 된 후,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동반 조치를 받으면 동반 조치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4) 통과 후의 고려 사항 - (A) 의회가 공동의 결의안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서명 한 날짜를 종료 한 날 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b)(1)항에 설명 된 적절한 의사진행상의 일정을 계산할 때 공동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이나 거부권 (그러나 어느 한쪽의 하원이 회기가 아닌 날 제외)은 무시되어야한다.

(B) 이 조항에 따라 상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토론은 대다수 리더와 소수파 리더 또는 그들의 지명 된 사람들 간에 똑 같이 1시간으로 나누어 져야한다.

(5) 거부권의 압도(VETO OVERRIDE) .- (b)(1)항에 설명 된 적절한 달력 일 내에, 의회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행사 된 권한에 관한 거부 결정을 무시 한다 (a)항 (1)호 (A)에 규정 된 한도의 \$400,000,000,000 증가를 제외하고는 제 3101조(b)항에 규정 된 채무 한도가 인상되지 않아야한다.

(6) 강제삭감 - (A)(b)(1)항에 설명 된 5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하면, 대통령은 결의안이 그의 서명 없이 그 공동결의안이 법률이 되도록 허용하거나, 한다. (a)항에 따라 행사된 권한과 관련하여 공동 결의안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압도하면, 지출을 \$400,000,000,000 줄이기 위한 강제삭감절차가 있어야한다. 관리예산처는 즉시 강제삭감을 실행해야한다.

(B) 관리예산처는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 통제법의 255항, 256항, 253항의 (c), (d), (e) 및 (f)에 따라 그러한 강제삭감액의 각 절반을 집행해야한다. 그러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초과 적자’의 의미는 (A)호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g) 하원과 상원의 의사규칙 -이 하위 항목과 하위 절 (b), (c), (d), (e) 및 (f) (단락 (6)을 제외함)는 의회에 의해 제정된다-

(1) 상원과 하원의 제재 권한 행사로서 각 하원의 규칙의 일부로 간주되나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그 공동의 결의안의 경우 그 하원에서, 그리고 그것은 다른 규칙들보다 우선하며, 그러한 규칙들과 모순된다; 그리고

(2)(어느 한쪽에서 언제든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하원의 절차에 관한 한) 하원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원의 다른 규칙에 따른다.

(b) 수정안 준수 - 미국 연방 Title 31의 31장의 항에 대한 표는 3101항에 관한 항목 뒤에 다음과 같은 새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 된다 :

“3101A. 부채 한도의 대통령 수정.”

[해설]

Title III : 부채 상한 불승인 절차 - 301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에게 공적 부채가 14조 2천 9백 4십억 달러의 공공 부채 한도 내에서 1,000억 달러 내에 있음을 의회에 승인하고 추가 차입이 필요하므로, 재무부 장관에게 공동 비승인 결의안 제정에 따라 추가로 9000억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공인 된 후 공적 부채 한도를 4000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의회가 공동 결의안을 제정하지 않은 채 불승인 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 추가로 5천억 달러를 한도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미국의 기록원이 비준을 위해 균형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거나 합동위원회가 1.2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를 책정 한 경우 1조 2천억 달러, 즉 1조 5천억 달러를 추가로 차용한 재무부 장관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결의안이 비준을 위해 제출 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자 감축에 1조 달러가 적자 감면액이 제정되지만 1조 5천억 달러를 넘지 않아야한다. 또한 301조는 공적 부채한도의 추가 상향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 의회가 공동 결의안을 제정하지 않은 채 비승인시기가 만료되면 공적 부채 한도를 추가로 상향 조정한다. 의회가 대통령 허가증을 수령 한 후 50일 이내에 또는 의회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회가 추가 인증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천억 달러 증가 제외). 그러한 추가 액수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불승인하는 공동 결의안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양 기관의 공동 결의안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절차를 규정한다.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하거나 서명이 없는 법안이 되거나 의회가 거부권을 무시하면 관리예산처를 통해 지출을 4천억 달러 줄이기 위한 강제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 제302조의 주요 내용

Sec. 302. 예산 목표 집행.

(a) 총칙 -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은 제251조 뒤에 다음의 조항을 삽입한다. 다음은 새로운 항이다:

251A항 예산 목표 집행.

2012년 1월 15일 예산통제법안 401(b)(3)(B)(i)(II)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자 감축에 \$1,200,000,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달성하는 공동위원회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 한, 제251조 (c)항에 열거된 일방적 지출 한도를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재량 지출 및 직접 지출을 줄여야한다.

(1) 개정된 안보 범주와 비안보를 개정함.

(A) “개정된 안보”라는 용어는 예산 기능 050에서의 재량 세출을 의미한다.

(B) 개정된 비안보 범주는 예산 기능 050 이외의 재량 세출을 의미한다.

(2) 개정된 재량 지출 한도 - 제251 (c)절에 따라 2013년에서 2021년까지의 재량에 대한 지출 한도는 다음으로 대체되어야한다.

(A) 2013회계연도 -

(i) 안보 부문에서는, \$546,000,000,000의 예산권한; 그리고

(ii) 비안보 부문에서는, \$501,000,000,000의 예산권한.

(이하 생략)

- (3) 총 결손 계산 - 관리예산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회계연도마다 이 절에서 요구하는 적자 감축량을 계산한다.
- (A) \$1,200,000,000,000으로 시작;
- (B) 예산통제법 제401(b)(3)(B)(i)(II)에 규정 된 바와 같이 공동위원회 법안의 제정에 의해 달성된 적자 감축액을 공제
- 2011년 법;
- (C) 부채 서비스 계정에 대해 그 차이를 18 % 삭감; 그리고
- (D) 결과를 9로 나눈다.
- (4) 기능 할당 - 2013년 1월 2일, 2013회계연도 및 2514(c)항에 따라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강제삭감 예측 보고서에서 국방 기능 및 기타 모든 기능 (비국방 기능)의 계정에 대한 절반에 해당하는 임의의 세출 및 직접 지출 계정에 대한 해당 연도의 문단 (3)까지에 따라 관리예산처는 계산 된 총 감축량의 절반을 할당한다.
- (5) 방위 기능 감축-관리예산처는 다음과 같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방위비 지출에 대한 임의 예산 및 감축 지출에 대한 감축량을 계산해야한다.
- (A) 재량지출-관리예산처는 재량지출감축을 다음에 의해 계산한다.
- (i) 제(4)항에 따라 그 해에 할당 된 국방 기능에 대한 총 감축량을 취한다;
- (ii) 해당 연도의 개정 된 안보 부문에 대한 재량 지출 한도를 곱한다; 그리고
- (iii) 안보 범주에 대한 재량 지출 한도와 해당 연도의 국방 기능 내 직접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예산처의 기본 지출 추정치를 기준으로 나눈다.
- (B) 직접 지출 - 관리예산처는 단락 (4)에 따라 그 해에 요구되는 국방 기능의 총 감축량을 감안하고 (A)에 따라 계산 된 임의 감축량을 차감하여 직접 지출 감축량을 계산해야한다.
- (6) 비국방 기능 감축.-관리예산처는 다음과 같이 비 국방 기능의 프로그램에 대해 2013년에서 2021년까지의 각 재량 지출에 대한 지출을 임의 배당으로 계산하고 지출을 지시해야한다.

- (A) 재량지출.-관리예산처는 재량지출감축을 다음에 의해 계산한다.
 - (i) 단락 (4)에 따라 그 해에 할당 된 비 국방 기능에 대한 총 감축량을 취한다;
 - (ii) 해당 연도의 수정 된 비안보 범주에 대한 재량 지출 한도를 곱한다; 그리고 (iii) 수정 된 비안보 범주에 대한 재량지출 한도와 해당 연도의 비 국방 기능에 대한 직접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예산처의 기본 지출 추정치를 나누어서 계산한다.
 - (B) 직접 지출 - 관리예산처는 (4)항에 따라 그 해에 요구되는 비 국방 기능에 대한 총 감축량을 감안하고 (A)에 따라 계산 된 재량 감축량을 차감하여 직접 지출 프로그램 축소를 계산해야한다.
- (7) 재량감축의 식재(Implementing Discretionary Reductions).-
- (A) 2013 회계연도 - 2013년 1월 2일에 관리예산처가 계산하고 253(f)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은 계정을 안보 범주 또는 비안보 범주 내에서 해당 시간에 해당 계정의 예산 자원 수준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 된 달러 금액으로 계산하여 효과적인 강제삭감을 명령해야한다.
 - (i) 개정된 안보 범주의 경우, (5) 항에 따라 계산된 국방 기능 재량 감소와 동일한 금액; 그리고
 - (ii) 수정된 비안보 범주의 경우, (6) 항에 따라 계산된 비국방 기능 재량 감소분과 동일한 액수.
 - (B) 회계연도 2014-2021. 관리예산처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계연도마다 254 (c) 항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연도 사전 보고서를 제출 한 날에 재량 지출 한도-
 - (i) 제5항에 따라 계산된 국방 기능 재량 감소액 만큼 개정 된 안보 범주에 대하여; 그리고
 - (ii) 개정 된 비안보 범주의 경우 (6)항에 따라 계산 된 비국방 기능 재량 감소액 만큼 개정한다.
- (8) 직접 지출 감소 실행 - 각 해당 연도의 (4)항에 명시된 날짜에 관리 예산처가 준비하고 대통령은 계산 된 직접 지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직접 지출에 대한 발급시 (5)항 및 (6)항에 따라 효과적인

강제삭감을 명령해야한다. 이 단락에 따른 직접 지출의 격리를 시행할 때, 관리예산처는 2010년 법정지불유예법 (Actual Pay-As-You-Go Act) 제6조, 제255조에 명시된 면제 및 제256조 단, 제256조 (d)항에 명시된 의료보호 프로그램의 감면율은 회계 연도의 2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9) 의료보호 조정 - 단락 (8)이 없는 상태에서 한 회계 연도 동안 의료 프로그램의 비율 감소가 2%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예산처는 기타 모든 재량 지출 예산의 감면을 늘리고 (6)항을 비 국방 기능에서 (6)항이 요구하는 감축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조정한다.

(10) 감축의 이행.-이 조항에 따라 부과 된 모든 감축은 제 256 조 (k)항에 따라 이행되어야한다.

(11) 보고서 - (4)항에 명시된 날짜에 관리예산처는 본 절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에 대한 정보, 조정 된 임의 지출 한도, 각각의 비과세 직접 사용에 필요한 감축 목록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출 계정 및 이 제목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그 밑에 취해진 조치를 향상시키는 설명 및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b) 수정안 준수 - 1985년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 통제법의 제 250 (a)항에 명시된 목차는 제 251 조 관련 항목 다음에 다음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251A항. 예산 목표 집행.

[해설]

302조는 재정적자의 감축에서 12조 달러의 감축액보다 더 큰 감축을 할 수 있는 합동위원회의 안이 2012년 1월 15일까지 시행되지 않은 한 재량지출 한도를 개정하고 이법에 규정된 재량세출수입안과 직접지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램-루드만-홀링스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재량지출의 감축을 위한 관리예산처의 추계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TITLE IV – 적자감축 공동선정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1) 제401조의 주요 내용

Sec. 401. 공동선정위원회의 설립.

(a) 정의 -이 제목에서 :

- (1) 공동위원회 - “공동위원회”라는 용어는 (b)(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적자 감축 공동 선정위원회를 의미한다.
- (2) 공동위원회 법안 - “공동위원회 법안”이라는 용어는 (b)(3)(B)항에 의거하여 추천되고 제402조(a)항에 따라 도입 된 공동위원회의 제안 된 입법 언어로 구성된 법안을 의미한다.

(b) 공동선정위원회 (Joint Select Committee)의 설립 -

(1) 설립 - 공동 선택

의회의위원회는 “적자 감축에 관한 공동선정위원회”를 의미한다.

- (2) 목표 - 공동위원회의 목표는 2012년에서 2021년 회계 연도 동안 적자를 최소한 \$1,500,000,000,000 줄이는 것이다.

(3) 직무 .-

(A) 총칙-

- (i) 단기 및 장기 재정 불균형의 개선 - 공동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단기 및 장기 재정 불균형을 크게 개선 할 권고 및 입법 용어를 제공해야한다.
- (ii) 위원회의 권고 - 2011년 10월 14일까지 하원과 상원의 각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문단 (2) 공동위원회의 고려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적자 감축을 위한 법률 변경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 보고서, 권고안 및 입법 용어.-

- (i) 총칙- 2011년 11월 23일까지 공동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표결을 행한다 -
 - (I) 공동위원회의 사실관계의 확인, 결론, 권고 및 (5)(D)(ii)항이

요구하는 의회예산처의 추정치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포함하는 보고서; 그리고

(II)는 하위 절(I)에 기술된 권고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 용어를 제안했으며 2012년 회계 연도에서 2021년까지의 적법한 감축량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한다. 보고서나 입법 용어에 포함된 하위 의원 규칙 또는 상원의 상설 규칙은 단순히 자문으로 간주된다.

(ii) 보고서 및 입법 동의 승인 - (i)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 및 입법안의 보고서는 합동위원회 위원 다수의 승인을 요한다.

(iii) 추가견해 - 제(ii)항에 따른 보고서 및 입법 언어의 승인에 관한 최종 합동위원회 표결시 보조, 소수 또는 추가 견해를 제출할 의사를 통지한 합동위원회 위원 - 그러한 견해를 공동위원회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3일간의 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런 견해는 공동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같은 부피 또는 그 일부로 인쇄되며 그 내용은 보고서의 표지에 기록되어야한다. 시기적절한 통지가 없는 경우 공동위원회 보고서는 그러한 견해 없이 즉시 인쇄되고 전송될 수 있다.

(iv) 보고서 및 입법적 표현의 전달 - 2011년 12월 2일까지 (ii)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보고서 및 입법 언어를 승인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합동위원회 보고서 및 입법안을 제출해야한다 (i)항에 규정된 입법적 표현은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각 하원의 다수 및 소수 지도자에게 전달된다.

(v) 공동 선언문 및 입법적 표현 - 공동위원회 보고서 및 입법적 표현의 승인 또는 불승인 (ii)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모든 보고서 및 입법적 표현을 만들고 대중에게 공개된 투표를 실시한다.

(4) 구성원-

(A) 총회 - 공동위원회는 (B) 호에 따라 임명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 지명 -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 (i) 상원의 다수당 원은 상원 의원 가운데 3명을 임명한다.
- (ii) 상원의 소수 지도자는 상원 의원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 (3)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 (4) 하원의 소수 지도자는 하원 의원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 (C) 공동의장.-
 - (i) 총칙 -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이 2명을 둔다. 대다수의 상원 의원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명의 공동 의장을 지명한다. 하원 의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두 번째 공동 의장을 지명해야한다. 공동 의장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되어야한다.
 - (ii) 직원 지휘 - 공동 행동하는 공동 의장은 공동위원회의 직원을 고용해야한다.
- (D) 일자 - 공동위원회 위원은 본 법 제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명되어야한다.
- (E) 임명 기간 - 구성원 자격은 공동위원회의 존립기간 동안 부여된다. 공동위원회의 공석은 그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석이 발생 한 날로부터 14일 (역일 기준)까지 원본 지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 져야한다. 한 구성원이 공동위원회는 하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직을 그만두는 경우, 그 위원은 더 이상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며 공석은 유지되어야 한다.
- (5) 행정 -
 - (A) 일반론 - 공동위원회가 권한, 기능 및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 의장이 승인 한 공동위원회의 실제 및 필요한 경비를 상원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원이 지불할 권한이 있다.
 - (B) 비용 - 공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법(Public Law) 79-304조의 제11항에 따라 공동 경제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5 USC 1024 (d))
 - (C) 정족수 - 공동위원회의 위원 7명은 투표, 회의 및 청문회의 목적으로 정족수를 구성한다.

(D) 투표 -

- (i) 대리투표- 공동위원회 구성원을 대신하여 대리 투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ii) 의회예산처 추정 - 의회예산처는 미 의회예산법 308(a) 및 201(f)항에 따라 법안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야한다 (단락 (3) (B)에 기술 된 바와 같이). 1974 (2USC639(a) 및 60 (f))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효과의 추정 포함). 또한 의회 예산 국은 2021 년 이후의 법안의 예산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합동 위원장이 인증 한 최소 48시간 전에 공동위원회의 공동 위원은 보고서, 권고 또는 입법 언어의 모든 버전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 회의 -

- (i) 최초 회합 -이 법 제정일로부터 45일 (역일 기준) 이전에 공동 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ii) 의제 -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회의 개최 48시간 이전에 공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을 제공해야 한다.

(F) 청문회 -

- (i) 총칙 - 공동위원회는 이 조항을 수행 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 앉아서 행동하며, 증인의 출석과 서적, 서류 및 문서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 그러한 증거를 받고, 공동위원회가 권고하는 그러한 맹세를 집행한다.
- (ii) 공청회의 청문 절차 및 책임
 - (I) 공고.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청문회의 개최일, 장소, 시간 및 주제를 더 일찍 청문회를 시작할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공청회 개최일보다 7일 이전에 공개해야한다.
 - (II) 서면 진술서 - 증인이 출두하기 최소한 2일 전에, 공동위원회가 그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데 적절한 이유가 있어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증언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G) 기술적 지원 - 공동 의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연방 기관은 공동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c) 공동위원회의 직원 .-

(1) 총칙.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상원의 직원을 위한 지침과 상원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과 고용 요건을 준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보상을 공동으로 지명하고 수정할 수 있다.

(2) 윤리적 기준 - 하원에서 봉사하는 합동위원회의 위원은 하원의 윤리 규칙 및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위원회의 위원들과 공동위원회의 직원들에게 봉사하는 상원 위원들은 상원의 윤리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d) 종료 - 공동위원회는 2012년 1월 31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해설]

예산통제법 제4장은 채무감축에 관한 초당파적인 상·하원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를 규정하고 있다.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최소 1.2조 달러의 재정적자감축에 관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3~2021 회계연도기간에 걸쳐 1.2조 달러의 감축을 실행하도록 의도된 일련의 자동지출감축이 작동될 것이다. 이러한 자동지출감축은 2013~2021 회계연도에 각각 의무지출에 관한 강제삭감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013회계연도에는 의무지출의 1년간의 삭감이 작동되고 2014~2021회계연도에 걸쳐 보다 낮은 재량지출한도가 설정될 것이다. 지출감축은 안보 범주와 비안보 범주를 대상으로 구분되어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은 예산통제법상에 예산통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재량지출한도와 채무한도 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채무감축의 총량규제는 상하

양원의 8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슈퍼위원회(Super Committee)가 예산통제법에 의거해서 국가채무 감축계획(deficit reduction plan)을 마련한다. 공식적으로 채무감축에 관한 상·하원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로서 12명으로 구성된다.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각 대표들이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위원회가 채무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1월 23일까지 회합을 갖는다. 만약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채무감축 계획안을 의결하여 연방의회에 그 계획안을 보내면, 연방의회는 12월 23일까지 그 계획안에 대해 찬반의 투표를 한다. 슈퍼 위원회는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또는 국가채무 감축을 마련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도 감축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슈퍼위원회의 기능은 우리나라 의회의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슈퍼위원회’는 사회복지와 의료보험을 포함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또 수입을 증대시키며, 또는 지출·수입양자를 상계할 수 있다. 만약 슈퍼위원회가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의회가 그 계획에 승인을 거부할 경우, 1.2조 달러의 국가채무를 자동으로 삭감한다.⁴⁶⁾

(2) 제402조의 주요 내용

Sec. 402. 공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고려.

(a) 소개 - 401(b)(3)(B)(ii)항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401조 (b)(3)(B)(iv)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은 다음 날 상원 의원 다수가 상원 의원에 의해 상원 의원이 상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 다수가 지명 한 상원 의원이 상원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상원의 다수 지도자 또는 하원의 다수 지도자가 지명 한 하원 의원이 다음 입법 일

46) 정영화, 국가의 공공부채에 대한 헌법경제학 -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4), 110면.

에 (요청에 따라) 대표할 수 있다.

(b) 하원에서의 고려 .-

(1) 참고 및 보고. - 공동위원회 법안이 언급된 하원의 모든 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까지 개정 없이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공동위원회 법안을 그 기간 동안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은 동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 할 수 없도록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안은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하원에 보고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하원이 법안을 퇴출시키겠다는 움직임을 중단 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상대방이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0분의 토론을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고 채택하기로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동의가 채택되면, 하원은 즉시 (2)항 및 (3)항에 따라 합동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여야한다. 동의가 폐기 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2) 고려의 진행. - 공동위원회 법안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집행이사회에서 배제 된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닌) 마지막위원회가 고려된 것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을 청구해야한다. 하원이 공동위원회 법안과 관련하여 진행할 발의안을 폐기 한 후에는 그러한 발의안이 정해지지 아니한다. 이전 질문은 개입 동의 없이 그 채택 동의 명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가 폐기 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3) 고려 사항 - 공동위원회 법안은 읽은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모든 주문 요지와 그 고려 사항은 면제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반대자가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시간의 토론과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하나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고 통과하는 공동위원회 법안에 따라 명령 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위원회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4) 통과 투표 - 공동위원회 결의안 통과는 2011년 12월 23일까지 이루어져야한다.

(c) 상원에서의 신속한 절차.-

- (1) 위원회의 고려 사항 - (a)항에 의거 상원에서 소개된 공동위원회 법안은 관할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언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수정 없이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비호의적인 권고안, 또는 권고안 없음을 늦어도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 권고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제출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제출안의 심의에서 면제되며, 제출안은 해당 지출일정에 배정되어야 한다.
- (2) 진행 예정 - 상원의 상임 규칙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 법안이 보고되거나 모든 위원회에서 면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람한다. 상원의 대다수 지도자 또는 다수당 지명자의 지명된 사람이 공동위원회 법안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하도록 지시 받았다. 또한, 상원 의원이 2일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공동위원회 법안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효과에 대한 이전 동작이 동의되지 않아도 진행할 동작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합동위원회 법안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명령은 면제된다. 진행할 동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청구는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위원회 법안의 심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법안은 처분될 때까지 미완성 사업으로 남는다.
- (3) 고려 사항 -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모든 주안점과 공동위원회 법안의 검토는 면제된다. 공동위원회 법안과 그와 관련한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 및 항소 고려는 소수자 지도자들 또는 그들의 지명된 사람들 간에 똑같이 분배될 수 있는 총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정당하고, 정당하게 선출되고 선서된 위원의 5분의 1의 찬성표를 요구해야 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 또는 이의 제기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의 제기자와 동의 또는 이의 제기에 반대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총회 요청 및 투표에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여 합동

위원회의 심의회 심의를 위해 사용 된 모든 시간은 총 30시간 동안 고려되어야한다.

(4) 개정안 없음 - 공동위원회 의안에 대한 개정안 또는 연기를 촉구하는 발언, 또는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 동의 또는 공동위원회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동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5) 통과 투표 - 상원이 공동위원회 법안을 진행하기로 동의 한 경우,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난 직후에 이루어져야하며, 단일의 정족수 요청 요청한 경우 토론의 결론에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2011년 12월 23일까지 이루어져야한다.

(6) 절차의 결정에 대한 의결 - 경우에 따라, 상원의 규칙의 공동위원회 결의안에 관한 절차의 적용과 관련된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는 논쟁 없이 결정되어야한다.

(d) 수정안 - 공동위원회 법안은 하원 또는 상원에서 개정 될 수 없다.

(e) 다른 원에 대한 고려 .-

(1) 총칙- 공동위원회 결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하원이 다른 위원회로부터 공동위원회 제출법안을 수령하면,

(A) 다른 하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B) 수령한 원에서의 절차는 합당한 투표가 있을 때까지 다른 하원으로부터 공동위원회 결의안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며, 다른 원이 수령한 공동위원회 결의안은 수령한 원의 공동 결의안을 대신 할 수 있다.

(2) 수입 계측-이 조항은 상원에서 수령 한 공동위원회 법안이 수익 계측일 경우 하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f) 다른 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칙 .-

(1) 다른 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의 처리 - 상원이 이 조항에 따라 공동

위원회 법안을 도입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하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은 이 조에 따라 신속한 원내 절차를 거칠 자격이 부여된다.

(2) 상원에서 동반자 조치의 처리 - 상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이 통과된 후 상원은 하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을 받으며, 이 경우 하원 합동위원회 법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상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관한 투표는 하원에서 받은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로 간주된다.

(3) 거부권 - 대통령이 공동위원회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상원의 거부권에 관한 토론은 다수 및 소수 지도자 또는 그들의 지명된 사람 간에 똑같이 1 시간으로 분할된다.

(g) 특권의 상실 - 아래아 같은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공동위원회 법안에 적용을 중단한다.

(1) 공동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까지 401(b)(3)(B)(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제안된 입법 용어에 대해 투표하지 못한 경우; 또는 (2) 공동위원회 법안이 2011년 12월 23일까지 양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설]

제402조는 공동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양원의 방침에 대한 입법 절차를 규정한다. 만일 (1) 위원회가 2011년 11월 23일까지 보고서 또는 입법안에 투표하지 못한 경우; 또는 (2) 입법안이 2011년 12월 23일까지 양원 모두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안 처리 절차는 공동위원회의 세출법안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외에 제403조는 (1) 하원의 해당 계정 및 (2) 상원의 임시 자금에서 동등한 부분으로 공동위원회를 위한 자금을 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하원에서의 고려와 관련하여 공동위원회 법안이 언급된 하원의 모든 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까지 개정 없이 하원에 보고해

야 한다. 위원회가 공동위원회 법안을 그 기간 동안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은 동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 할 수 없도록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법안은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하원에 보고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하원이 법안을 퇴출시키겠다는 움직임을 중단 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원이 공동위원회 법안을 진행하기로 동의 한 경우,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공동위원회 법안 에 대한 논의가 끝난 직후에 이루어져야하며, 단일의 정족수 요청 요 청한 경우 토론의 결론에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2011 년 12월 23일까지 이루어져야한다. 상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이 통과 된 후 상원은 하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을 받으며, 이 경우 상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관한 투표는 하원에서 받은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로 간주된다.

II.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Title II of P.L. 99-177, 2 U.S.C. 900-922)

1. 제정 배경 및 연혁

1982년의 불황과 레이건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예산을 둘러싼 대결 은 연간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 이어졌다. 의회는 이러한 적자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5년 예산균형과 긴급적자통제법 (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또는 그램-루드만-홀링스법(Gramm-Rudman-Hollings Act)으로 불리는 법을 제정 했다.⁴⁷⁾ 이 법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누진적으로 적자를 축

47) Allen Schick, *The Federal Budget - Politics, Policy. Process*, 3d. Ed., Brooking Institution Press, 2007, 22쪽.

소시켜 1991년에는 균형예산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⁴⁸⁾ 연방대법원이 1986년에 동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의회는 이를 개정해 균형예산 목표연도를 1993년으로 연기했다.⁴⁹⁾ 예상적자가 목표치를 상회하면 대통령이 예산강제삭감명령(Sequestration)을 발동할 수 있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제적자는 목표치를 상회했다. 따라서 실제적자가 목표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회계연도 시작 때 예상적자가 그 해 허용범위 안에 있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동법은 그다지 실효적이 못했던 것이다.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실제 적자증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추계잘못이든, 경제상황의 변화이든 또는 새로운 정책 때문이든, 의회나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재정적자의 증가를 상쇄할 어떠한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실제적자가 아니라 예상적자를 이용한 것은 실제 정부저축이 아니라 예산측정치의 조작과 회계상 요령 등을 이용하게 만들었고, 결국 예상되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연간 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상 예산적자는 동법의 시행 마지막 해인 1990년에 법 시행 이전인 1984년 보다 더 많아졌음에서 그 결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실패로 끝난 동법은 예산결정관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는바 1990년 제정된 예산집행법 등에 나타난 규칙들이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즉 그램-루드만-홀링스법은 비록 백악관과 의회를 각기 다른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이 수입과 지출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예산 관련 규칙이 있다는 생각을 일깨워 준 것이다. 예를 들면, 1921년 예산회계법과 1974년 의회예산

48) The Gramm-Rudman-Hollings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Pub.L. 99-177, title II, December 12, 1985, 99 Stat. 1038, 2 U.S.C. § 900) 및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Reaffirmation Act of 1987 (Pub.L. 100-119, title I, Sept. 29, 1987, 101 Stat. 754, 2 U.S.C. § 900)는 연방정부의 지출에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제한을 부과한 법 이었고 동법에 의한 지출상한의 설정은 그 이후 예산안책정에 있어 반영되었으나, 동법에 의한 연방적자의 감축정책이 실패로 판명된 뒤 의회는 고정된 적자감축목표를 대체하는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을 통과시켰다.

49) *Bowsher v. Syna.*, 478 U.S. 714 (1986).

법은 각각 대통령과 의회에 그들이 각자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램-루드만-홀링스법의 전제는 정치인들도 특정 종류의 예산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정치인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한다고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아가 연방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⁰⁾

당초 그램-루드만-홀링스법의 목표는 1991년에 단지 640억 달러의 적자를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의회와 대통령은 1990년에 당면한 예산 위기로 곤경을 겪게 되었는바, 1990년 7월 시점에서의 예상액이 2,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방위비와 사회복지프로그램, 빈곤층에 대한 지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예산강제삭감을 할 수 없는 규모였다. 어려운 협상이 진행되어 세금인상, 지출삭감, 새로운 예산집행규칙 등의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여 이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변화는 향후 5년간에 걸쳐 적자를 4,82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협상의 마무리단계에 있던 1990년 국가경제가 심한 불황기의 국면에 빠져 들어가 적자는 계속 증가해 1992년 2,9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⁵¹⁾ 이러한 적자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 예산집행법에 규정된 새로운 예산규칙들은 적자가 목표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강제삭감 등의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램-루드만-홀링스법의 실패로부터 의회와 대통령이 얻은 교훈은 경제상황의 변화나 사업지출액의 재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재조정할 수 없는 연간 적자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고정된 적자한도는 1990-91년 불황과 같은 예상 못한 상황변화에 따라 달성불가능하게 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정치지도자들

50) 이상경, 앞의 논문, 337-338면 참조.

51) Allen Schick, 앞의 책, 24쪽.

은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⁵²⁾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예산집행법은 새로운 적자통제절차를 도입했는데, 이는 매년 예산승인절차(annual appropriations)에 의해 통제되는 재량지출과 실제적 입법(substantive legislation)에 의해 통제되는 직접지출을 구분하였다. 예산집행법은 당초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한시법이였으나 1998년까지 연장되고 다시 2002년까지 연장되었다. 위 기간에 의회와 대통령은 6회에 걸쳐 수입-지출 균형원칙의 정상적 작동을 금지하는 실정법 조항을 제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1993년의 포괄재정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6년의 포괄정리지출승인법(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1997년의 균형예산법(The Balanced Budget Act), 1999년의 정리지출승인법(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0년의 정리지출승인법(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그리고 2002년의 국방지출승인법(The Defense Appropriations Act) 등이다.⁵³⁾ 이들 6개의 법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달리 실행되는데, 1993년의 포괄재정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6년의 포괄정리지출승인법(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1997년의 균형예산법(The Balanced Budget Act) 등 3개의 법에서는 관리예산처장이 예산절감액(savings balances)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를 삭제로써 예산절감액이 다음번 회기에서 상쇄입법을 제정하는 데 근거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예산절

52) Allen Schick, 앞의 책, 25쪽.

53) P.L. 107-117; January 10, 2002. 본 법은 관리예산처장으로 하여금 2002회계연도의 최종 강제조정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면서, 2001회계연도와 2002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균형원칙 기록표상의 수지를 0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조치로 결합된 2000~2001회계연도의 1천3백2억7천9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기록표로부터 삭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수입·지출 균형원칙 강제조정을 회피하였다. 만일 상쇄되지 않거나 회피되지 않았다면 수입·지출 균형원칙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을 2003~2006회계연도의 1천백억 달러부터 1천3백5십억 달러 범위의 수입·지출 균형원칙 기록표상의 비용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감액이 63.1억 달러에 달했던 단일 1997 회계연도에만 적용되었기도 하고, 예산절감액 5,050억 달러에 달했던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예산절감액 740.9억 달러에 달했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복수 회계연도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1999년의 정리지출승인법(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0년의 개정 정리지출승인법, 그리고 2002년의 국방지출승인법(The Defense Appropriations Act) 등 3개의 법을 통해서는 수입-지출 균형원칙 기록표상의 비용 항목을 삭제하게 된다. 이로써 2001회계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105억 달러의 강제조정, 2002회계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1,327.9억 달러의 강제조정,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강제조정을 모두 회피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초기 대대적으로 감행되었던 의료보장(medicare) 체계 변동과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산집행법의 효력이 만료한 시점인 2002년 이후에도 2006 회계연도까지 포괄적으로 강제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Public Law 107-312가 공포됨으로써 결정적으로 실정법상의 수입·지출 균형원칙이 무력화된다. 이 시기부터 다시 재정상황은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자수준은 계속 악화되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통제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이러한 예산집행법상의 규율들을 확장(augmented)하는 의회의 내부규율이 또한 때때로 개정되었고, 민주당이 의회의 통제권을 장악한 2007년에 의회내부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예산집행법에 설정된 규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산집행법은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정 가능한 적자/흑자 목표, 둘째, 재량지출의 상한, 셋째, 수입과 직접지출에 관한 수입·지출균형 조항이다. 비록 예산집행법이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그 규칙들은 흑자예산 시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⁵⁴⁾

54) 장철준, 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헌법학연구(2010),

2. 주요 조문의 해설

(1) 개 관

미국은 예산통제법상에 예산통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재량지출 한도와 채무한도 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예산통제법을 통하여 2012~2021년 사이의 각 회계연도의 재량지출의 한계 또는 상한(caps)을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강제삭감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삭감절차는 통일적인 비율에 의해 예산자원(budgetary resources)의 영구적 취소를 포함한다. 통일적인 비율에 의한 삭감은 모든 예산안, 계획안 및 사업안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에 그 예산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그런데 예산통제법에 의한 현행 강제삭감절차도 면제(exemptions)와 특별 규정(special rules)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제와 특별규정은 2012년 수정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Section 255~256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산통제법상의 강제감축이나 PAYGO법상의 강제감축에도 적용된다.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 제255조(2 U.S.C. 905)는 강제삭감으로부터 면제되는 프로그램들을 정하고 있고, 제256조(2 U.S.C. 906)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하며, 2012년 9월 예산관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삭감투명화법(the Sequestration Transparency Act)에 응답하여 예산항목의 “삭감할 수 있는(sequesterable) 것”과 “면제된(exempt)”된 것의 구분(classification)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구분을 결정하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상의 규정들을 위한 인용(citations)이 부여되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 강제삭감으로부터 면제되며, 특별 규정은 다른 강제삭감을 규율한다.

402-404면; 국회예산정책처, 의무적 지출의 통제 강화 방안 연구 (2013), 101면 이하 참조.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들은 2012년 수정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BBEDCA) 제255조와 제256조에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산통제법상의 강제감축이나 PAYGO법상의 강제감축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들을 특정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은 강제감축을 작동시키는 특정한 규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계정상의 강제삭감의 영향에 대한 의문점은 법령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강제삭감 하에서는 256조의 특별 규정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모든 비면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사업”은 통일된 비율(%)로 감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강제삭감에 복종하는 예산항목의 총액과 특별 프로그램과 특별 규정에 적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강제삭감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BBEDCA) 제255조(2 U.S.C. 905)는 강제삭감으로부터 면제되는 프로그램들을 정하고 있고, 제256조(2 U.S.C. 906)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2010년 2월 PAYGO법에 의해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13년 3월까지 실제로 강제삭감절차가 실행된 적이 없다. 아래는 법의 일반적인 설명을 의미하며 의도된 해석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예산통제법이나 법령상의 PAYGO에 따른 자동지출삭감의 작동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OMB에 의한 법적 해석이나 처분(legal interpretation and actions)에 달려 있다.

2013년 3월 1일자 OMB 보고서는 예산통제법에 따른 2013 회계연도의 강제삭감에 복종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예산계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더하며, 2012년 9월 OMB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삭감투명화법 (the Sequestration Transparency Act)에 응답하여 예산항목의 “삭감할 수

있는(sequestrable) 것”과 “면제된(exempt)”된 것의 구분(classification)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구분을 결정하는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상의 규정들을 위한 인용(citations)이 부여되어 있다. 거듭 주의할 것은, 2012년 9월 OMB 보고서에 나온 강제삭감 비율과 액수는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동 보고서는 2012년 미국납세자구제법이 2013 회계연도의 강제삭감을 2013년 1월부터 3월 2일까지 연기하고, 강제삭감될 예산항목의 액수를 감축하기 전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2) 255조 면제 프로그램(Section 255 Program Exemptions)

255. (2 U.S.C. 905) 면제 프로그램 및 활동.

- (a) 사회 보장 혜택과 철도노동자퇴직급여 1 영역
사회 보장법 Title 42 (42 U.S.C. 401 et seq.)에 의해 노인, 전쟁생존자 및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 및 미국 법전 Title 45의 231b(f)(2), 231c(a) 및 231c(f) 및 231b(a)항에 따른 급여는 이 부분에서 발령된 어느 명령에 따른 감액으로부터 면제된다.
- (b) 재향군인 프로그램 - 다음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액으로부터 면제 된다:
재향 군인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제2차 세계 대전 재향 군인 특별 혜택 (28-0401-0-1-701).
- (c) 순이자 - 순이자(모든 주요 기능 범주 900)는 이 부분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된다.
- (d) 상환 소득세 징수 -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설정하는 1986년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이 부분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액으로부터 면제된다.
- (e) 비국방 비의무적 균형예산 - 이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전되어온 의무 지워지지 않은 균형예산권한은, 국방범주의 균형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55) Karen Spar, CRS Budget “Sequestration” and Selected Program Exemptions and Special Rules (June 13, 2013), 6면 참조.

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f) 군무원의 선택적인 면제 -

(1) 일반론 - 대통령은 회장은 군무원계정에 관하여 강제삭감으로부터 그 계정을 면제 시기거나, 여기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었을 통 일적 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감액을 정할 수 있다.

(2) 제한 - 당해 예산 연도를 위해 254(a)항에 명시된 날짜 혹은 그 전에,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이 행사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1)항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g)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

[해설]

제255조는 강제삭감으로부터 면제되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다. 대부분 강제지출에 관한 것이며, 아주 일부만이 재량지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재향군인업무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에 의해 집행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많은 경우 특정한 예산 계정이 주어진다. 제255조는 강제삭감으로부터 면제되는 프로그램과 지출유형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지만, 절대적으로 강제삭감에 복종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출유형에 대한 확정적인 리스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주어진 프로그램상의 강제삭감의 영향은 OMB의 법적 해석과 처분 (legal interpretation and actions)에 좌우된다. 아래는 강제삭감으로부터 면제되는 제255조의 선택된 프로그램(selected programs)과 지출유형 (types of spending)들이다.⁵⁶⁾

-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노령, 전쟁생존자 및 장애)와 철도노동자퇴직급여 1 영역 (Tier 1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56) Karen Spar, CRS Budget “Sequestration” and Selected Program Exemptions and Special Rules (June 13, 2013), 8면 참조.

- VA에 의해 집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을 위한 특별 급여
- 순이자(Net interest) (budget function 900)
- 환불가능세금증명에 의한 개인 지급금(Payments to individuals in the form of refundable tax credits)
-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의회에 고지를 조건으로), 군인계정 전체를 면제로 하거나, 혹은 감축된 강제삭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military personnel accounts may be exempt entirely, or a lower sequestration percentage may apply).
- “다른” 예산계정이나 사업들: 일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사적인 기부, 유증 또는 자발적인 기여 등으로부터 유래하는 사업이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자발적인 지급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 실업신용기금에 대한 선급금(advances to the Unemployment Trust Fund)
 - 다양한 형태의 퇴직, 건강보호 및 장애신용기금에 대한 지급금
 - 인디언 부족이나 원주민 신용기금
 - 의료시설보장 및 대출 기금
- 특정한 연방 퇴직 및 장애 계정 및 사업
- 특정한 예산계정에서의 연방정부의 사전 법적 의무 (Prior legal obliga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specified budget accounts)
- 저소득층 프로그램: 다음을 포함한다.
 - 학문적 경쟁력/우수 장학 프로그램
 - 어린이 보호 및 발달 기금 아래에서의 의무적 재정지원
 - 어린이 영양보호 프로그램 (학교점심, 학교아침, 어린이 및 성인 보호 음식, 그리고 다른 것들을 포함하나 특별 우유는 배제됨)
 -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농산품보조음식 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 빈곤가족의 임시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과 TANF 임시기금(TANF Contingency Fund)
 - 가족부양프로그램
 - 연방무상학비보조금(Federal Pell Grants)
 - 의료보호(Medicaid)
 - 입양 보호 및 영구화 프로그램(Poster Care and Permanency programs)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이전의 food stamp)
 - 보충적 사회보장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 의료보호 D부분 저소득 특별 및 비용분담 보조금 (Medicare Part D low-income premium and cost-sharing subsidies); 의료보호 D부분 재해지원지급금 및 자격요건구비 개인 상여금(Qualified Individual Premium)
 - 특별한 경제 회복 프로그램: GSE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s, the Office of Financial Stability 및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the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다음의 “분할 처리(split-treatment)”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의 예산항목이 예산사용안의 의무적 한계조항에 복종하는 한도 내에서)
 - 연방지원 고속도로
 - 고속도로 안전 교부금(Highway Traffic Safety Grants)
 - NHTSA 운영과 연구 및 국립 운전자 등록
 - 자동차 안전 운전 프로그램(Motor Carrier Safety Operations and Programs)
 - 자동차 안전 교부금
 - 운송교부금 (Formula and Bus Grants)

(3) 256조 특별 규정(Section 256 Special Rules)

SEC. 256. (2 U.S.C. 906) [발취]

(7) 강제삭감면제 - 제 255조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활동 외에도, 이 부분 아래의 강제삭감으로부터 다음은 면제 된다:

- (A) PART D 저소득 보조금 - 사회 보장법 제1860D-14조항에 따른 우대 및 비용 분담 보조금.
- (B) PAST D 재해 보조금 - 사회 보장법 제1860D-15 (b)항 및 (e)(2)(B)항에 의한 지불.
- (C) 자격 있는 개인 우대 (Qualified Individual (QI) PREMIUMS) - 사회 보장법 제1933조에 의거한 특정 저소득층 의료보호 수혜자를 위한 의료보호 비용분담 보장을 위한 주 정부에 대한 지불.

[해설]

제256조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지출유형에 대하여 강제삭감의 특별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제256조의 특별 규정은 대부분 의무지출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아래는 제256조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이다.⁵⁷⁾

- 고등교육법 제4장-B와 제4장-D에 의한 학자금융자
- 의료보호
- 지역 및 이민자 건강보호소, 원주민(인디언) 건강검진 및 시설 및 재향군인의 의료보호
- 어린이 지원 집행(Child Support Enforcement)
- 연방지급금(federal pay)
- 연방행정비용(federal administrative expenses)
- 실업보상(Unemployment Compensation)
- 농산물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57) Karen Spar, CRS Budget “Sequestration” and Selected Program Exemptions and Special Rules (June 13, 2013), 10면 참조.

제 5 장 미국 재정법의 특징과 시사점

1. 행정부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미국의 예산편성 관련 법제를 살펴 볼 때, 관리예산처(OMB)의 예산편성에 대한 직무 수행상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작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2장에 수록한 표 “미국 예산안 작성절차와 관리예산처(OMB)의 역할”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예산안 작성절차에는 관리예산처(OMB)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단순히 당해 회계연도만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사와 지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의 연속성을 예산안의 작성과정에서 다른 연방행정기관과의 정보의 공유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대통령의 비롯한 행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연방정부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예산편성작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도 우리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제1103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상한제를 명시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는 예산상한제를 명시적 목표로 둬으로써 균형예산의 편성이 정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과 예산법률주의의 원칙을 모두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안과 연방법원의 예산안도 연방정부의 예산안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명시하면서도 연방의회의 예산안과 연방법원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관리예산처(OMB)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히 하여 관리예산처(OMB)의 예산안심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있는 것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예산기능과 법제기능의 통합화도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제31장 제1110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예산권 부여 입법의 법제화는 그러한 예산안이 제출되기 1년에 법제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이 소요되는 입법에 대해서는 관리예산처(OMB)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법제에 대한 심사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능과 법제에 대한 심사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입법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관리예산처(OMB)가 예산안에 대한 통찰과 심사기능을 넘어 미국 정부의 경제와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 등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업무방법, 활동, 조직은 물론 예산배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해서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많은 우리정부의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기능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첫째 작업이 바로 현재의 정부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작업인데 그러한 기능을 관리예산처(OMB)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관리예산처(OMB)가 제31장 제1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계, 예산 그리고 정책관련정보의 표준 정보체계와 표준 데이터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볼 만하다. 관리예산처(OMB)가 예산안의 대한 심사기능을 넘어서서 회계, 예산, 정책정보처리 등 관련분야의 표준화 작업을 선도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합치성을 유지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하에서는 의회가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해야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1장 제1113조에서는 의회정보에는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의회의 요구에 따른 정보나 지원의 제공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의 작성과 재정관련 정책분야에 미국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이다. 제31장—제1116조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보고에서 미국정부의 이 분야의 업무성과는 각 행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관리예산처(OMB)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재정관련 정책분야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지출의 근원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이고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바탕으로 한다고 것을 볼 때 이 분야의 정책투명성의 확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조항도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2. 의회의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대통령을 통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는 그에 대한 삭감권을 가짐은 물론 증액 및 신항목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산의 심의는 1974년의 의회예산법에 의해 설치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와 의회예산처(CBO)에 의해 진행된다. 반면, 세출과 세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조정할 공식기구에는 두고 있지 않다.

의회는 헌법상 세입에 관한 법률은 하원이 선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세출에 관한 법안은 상하양원 중 어느 원에서 먼저 심의해도 무방하다. 다만 실제상으로 세출예산안의 심의도 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고 상원의 의결은 하원의 의결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위원회가 예산의 대강을 정하는 제1차 예산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위원회가 청문회가 개시되며 예산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진다. 의회예산처가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부의 예산안을 비롯하여 그 동안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한도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제1차 예산결의안의 의결단계로서 상하원이 각각 그 예산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한도결의안을 의결하고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 회부한다. 여기서 합의된 제1차 예산한도액은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목표액에 불과하다. 이 목표액은 다시 해당 위원회별로 할당되는데 세출위원회는 그들에게 할당된 목표액을 분과위원회별로 세분한다.

세 번째로 세출위원회의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세출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 의한 비공개 청문회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그리고 세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하원 본회의에 상정한다. 하원에서 심의가 끝난 세출예산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를 상원세출위원회는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원세출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청문회 절차는 하원과 유사하나 형식적인 면이 다분하다. 상원은 일종의 재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하원에서 삭감된 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세출법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출위

원회에 제출하고 세출위원회는 이를 거의 수정 없이 본 회의에 상정한다. 상하원의 의견차이는 양원협의위원회에 의해 조정된다.

한편 예산위원회는 다시 제2차 예산결의안을 준비하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 제2차 예산한도결의안의 처리와 사후 조정이 이루어진다. 각 원의 예산위원회는 새로운 정보와 경제사정의 변동, 통과된 세출예산법안 등을 참고로 하여 제2차 예산한도결의안을 각각 상하원에 제출한다. 상하양원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양원협의위원회에 회부되어 타협안이 모색된다. 이에 따라 결의된 제2차 예산한도액은 제1차 한도액과는 달리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 끝으로 세출예산법 및 일반예산법이 제2차 예산결의의 범위 내에서 조정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는 종료된다.

3. 재정건전성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 특 징

- (i) 부채한도의 인상과 불승인 절차(최소 2.1조 달러, 특정 조건 하에서 2.4조 달러까지 인상)

예산통제법은 대출한도에 거의 다다른 연방정부에 대한 응답으로 대통령과 사이에 열린 협상의 결과이다(the result of negotia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Congress held in response to the federal government having nearly reached its borrowing capacity). 예산통제법은 부채한도의 인상에 막기 위해서는 상·하 각 원의 2/3의 지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불승인절차에 복종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최소한 2.1조 달러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최고 2.4조 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 (ii) 법령에 의한 재량지출 한도 설정(향후 10년간 연간 지출을 통하여 쓸 수 있는 금액의 caps를 정함)

동 법은 향후 10년간 연간 지출절차를 통하여 지출될 총금액의 한계 (caps)를 정한 것인데, OMB가 추산컨대, 이를 통하여 9170억 달러의 연방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iii) 채무감축을 위한 상·하 양원 특별 합동 위원회 신설

예산통제법은 또한 채무감축을 위한 상·하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 창설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하여 그 때까지 10년 동안 최소한 또 다른 1.5조 달러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예산법안(bill)을 만들도록 지시되었다 (The BCA also created a 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that is instructed to develop a bill to reduce the federal deficit by at least another \$1.5 trillion over the 10year period ending in FY 2021).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으로부터 결과한 입법은 양원에서 부채의 증대나 한도제한의 논쟁을 막는 특별한 절차 하에서 고려된다 (The legislation resulting from the joint committee recommendations can be considered under special procedures that prevent amendment and limit debate in both chambers). 이러한 절차들은 상원에서 증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절차들에 따르면 예산법안은 단순 다수의 지지를 받고도 상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의 상원의사 절차에 따르면 예산법안의 고려를 진행시켜나가려면 (to advance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최소한 상원의 3/5 이상(보통 60명의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iv) 예산목표의 강제: 자동지출감축 작동(Automatic Spending Reduction Trigger)

만일 재정적자를 최소한 1.2조 달러 삭감하는 상·하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의 결의가 2012년 1월 15일까지 입법화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예산통제법이 강제삭감(예산 원천의 취소: the cancellation of budgetary resources)을 포함하는 자동지출감축절차가 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2012년 벽두(early 2012)에 상·하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또는 자동절차가 감축을 해나갈 때, 2013년 시작(the beginning of 2013)에 의해 다른 입법에 의해 (아마도 현존하는 의회의 절차를 통하여)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만일 입법화된 예산안이 1.2조 달러 이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면, 3.0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초과분만큼 부채한도의 추가적인 증분이 가능하게 된다.

(v) 연방등록금지원 프로그램(Federal Student Aid Programs)

예산통제법은 또한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DL) 프로그램과 연방무상학비지원 프로그램(the Federal Pell Grant Program)에 변화를 준다. 이들은 개정된 1965년 고등교육법 제4장에 의해 승인된 연방학생지원 프로그램들이다 (two federal aid programs authorized under Title IV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HEA; P.L. 89-329). 2012년 1월 1일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예산통제법은 대학원과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Subsidized Stafford Loans의 활용가능성을 없앴으며,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장래 DL프로그램 대역 상환인센티브를 삭제하였다. CBO는 이러한 변화가 2012~ 2021 회계연도에 걸쳐 216억 달러의 직접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 추산하였다. DL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하여 절약되는 216억 달러 중 대략 170억 달러는 장차 2012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에 연방무상학자금지원의

일반적 용도로 사용되도록 지정되었다(Approximately \$17 billion of the \$21.6 billion in estimated savings from the changes in the DL program would be directed to the Pell Grant program for future general use in FY2012 and FY2013).⁵⁸⁾

(vi) 신속한 절차(Expedite Procedures): 세 가지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고려절차가 규정됨

채무인상 불승인안(a proposal disapproving a debt increase)

상·하 양원 특별 합동위원회의 결의안 (the joint committee bill)

다른 하나의 원에서 통과된 균형예산 헌법개정안 (a balanced budget constitutional amendment passe by the other chamber)

(2)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국가부도위기로까지 치닫는가 하면 유럽 등 선진국은 국가부채 누적으로 재정긴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 핵심 의제로 되었다. 한마디로 오늘날 재정적자의 문제는 거의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33.8%)은 G20 국가 평균(75.1%)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식 재정건전화 방안인 재량지출의 구조조정과 의무지출의 PAYGO 준칙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지출로도 볼 수 있는 의무지출 영역에서 이 원칙은 미국에서 재정적자 해소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58) Bill Heniff Jr., Elizabeth Rybicki, Shannon M. Mahan, CRS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2011 August 19, 1-6면 참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실상 실정법상의 수입-지출 균형원칙은 강제조정의 다양한 회피 방법으로 인해 그리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소위 의회규칙상의 원칙의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로 재정 건전화라는 결과에 공헌하였다고 한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PAYGO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특히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방 교부금에 PAYGO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의 측면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를 단행했던 레이건 정부의 감세와 2001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부시정부의 감세가 세수를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세출 측면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의료비 지출이 미국 재정적자의 핵심 요인이며 국제 정치·군사적 정세변화에 따른 국방비지출 변동도 이에 못지않게 재정적자의 요인이었다. 또 2007~2009년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쏟아 부은 막대한 재정자금 (공적 자금투입,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의 융자,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액을 포함)이 미국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운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PAYGO 준칙과 예산통제법상의 강제삭감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강제삭감의 적용을 배제하는 면제 규정과 특별 규정을 살펴보면서 많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강제삭감절차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⁶⁰⁾ 하지만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다양한 사유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

59) 자세한 것은 장철준, 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헌법학연구(2010), 391면 이하 참조.

60) 김도승,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Pay-as-you-go) 준칙 - 그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2010), 313면 이하 참조.

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른바 의무지출⁶¹⁾에 대한 관리 및 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²⁾ 따라서 미국의 PAYGO 준칙과 2011년 예산통제법 통과 이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강제삭감제도를 통해 나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61) 일반적으로 의무지출이라 함은 법률에 지출의 근거와 규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결과 예산은 단지 법률의 조항에 따라 확정된 계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 즉, 지출 근거 및 지출요건이 근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출규모 결정에 있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을 말한다. 그런데 의무지출의 하방경직성·비가역성으로 인한 재정위험은 장기적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재정위험에 대응하여 의무지출의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복지지출은 관련 입법에 따라 지출이 의무화되는 의무지출의 형태를 보이는 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을 법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법 제7조제2항) 재정관리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부기준이 없어 과연 어떠한 지출이 의무지출인지 재량지출인지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더욱이 의무지출을 적정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김도승, 의무지출과 재정관리- 의무지출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1호(2012), 31면 이하 참조.

62) 전창환, 2011년 미국의 재정적자와 재정건전화의 딜레마, 동향과 전망 통권 84호(2012), 38면이하 참조.

부 록

[부 록]

I. 연방 정부의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처 관련 법제

1101조 (31 U.S. Code § 1101) 정의

이 장에서

(1) “행정위원회 혹은 기관”에는 워싱턴컬럼비아특별지구정부(D.C.)가 포함되지만 입법부와 대법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산”은 세출된 금액으로 회계법상

(A) 기금

(B) 세출이 있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C)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타 권한

1102조 - 회계연도

재무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9월 30일에 종료한다. 법률에 의해서 발행할 것이 요구되는 세입액과 세출액은 그 회계연도에 따라 출간되어야 한다.

1103조 - 예산상한제

의회는 특정 회계연도의 미국정부의 예산지출은 그 해의 미국정부의 세입을 벗어나지 않은 속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다.

1105조 - 예산안의 내용과 의회제출

(a) 매년 1월의 첫 번째 월요일 당일 혹은 그 후 적어도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까지 대통령의 다음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에는 예산교서(budget message) 그리고 요약 그리고 부속정보(supporting information)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매년 예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정부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정보
- (2) 실재적인 경우에는 정부 프로그램의 정보와 달성에 관한 정보
- (3) 다른 정보의 바람직한 분류
- (4) 제안된 세출안과 함께 있는 지출에 관한 요약정보에 조정계정
- (5) 이 조항의 (b)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와 그 후 4개년 연속 회계연도에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예측된 지출과 제안된 세출안
- (6)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와 그 후 4회계연도의 세입예산(estimated receipts)을 다음의 조건 하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 (A) 예산이 제출될 때에 유효한 법률과
 - (B)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안의 제안들
- (7) 직전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 전용, 지출
- (8) 현 회계연도의 세입 그리고 세출, 전용과 제안된 전용
- (9) 다음의 수지보고서
 - (A) 직전 회계연도말의 재무 상태에 대한;
 - (B) 현 회계연도말의 재무의 추정적 상태; 그리고
 - (C) 만약 예산의 재정적 제안들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의 연말의 재무에 대한 추정적 상태.
- (10) 정부 부채에 관한 핵심정보
- (11) 정부의 재무 상태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세부적으로 대통령이 설명하기 원하는 다른 연방재정상태에 관한 정보
- (12) 정부의 활동 및 기능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법률에 의하여 예산안에 계상된 각각의 계획에 대하여,
 - (A) 다음 회계연도에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된 세출승인 및 지출금액과
 - (B) 다음 회계연도 이후 4회계연도 동안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출승인의 추계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I. 연방 정부의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처 관련 법제

- (13) 다음 회계연도의 추계지출 및 세출승인안이 부족한 경우, 추가재원의 한도액
- (14) 다음 회계연도의 예측 및 통제불가능한 지출의 한도액
- (15) 1974년 의회예산법 제301조 제a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 각각에 대한 분류서
- (16) 1974년 의회예산법 제3조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회계연도 조세지출예산의 규모. 다만, 이 경우 현재 상황에서 예산안 상의 계획이 행하여질 때, 그에 따라 변화되는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7) 직전회계연도 세출승인법상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승인이 수권되고 2년 후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세출수권이 있는 각 사업상의 증여·계약 및 기타 지불에 대한 2년 후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승인 추계에 관한 정보
- (18) 상대적으로 불가피한 지출이 소요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의 비교자료(주요사업별로 분류)
- (19)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과 실제세입액의 비교자료 및 주요세입원천별로 세입예산액과 실제예산액의 비교자료
- (20) 제18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된 개별 금액간의 차액에 대한 설명과 분석자료
- (21) 수평적 예산(a horizontal budget)은 다음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A) 국가기상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상사업 및 기상학과 관련된 사업
 - (B) 각 기관 사업의 특징과 세출승인액
 - (C) 추계 목표와 재정소요
- (22) 예산권한과 예산수권안, 실제지출과 실제지출안 및 다음 각목에 따른 정보
 - (A) 기관별 사업 및 임무단위로 표시한 국가 재정수요에 대한 자세한 구조
 - (B) 사업 및 임무에 대한 자료

- (23) 1970년 직업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법률과 1977년 탄광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연방 법률에 따른 세출승인에 대한 개별 세출계정
 - (24)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국고자금회수에 대하여 재무부에 대한 권고안
 - (25) 1978년 검찰법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과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 세출계정
 - (26) 국가마약통제계획에 의한 사업과 관계되고 국가마약통제국이 요구한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27) 연방재무관리국이 요구한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28) 1999 회계연도 이후,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예산에 대한 연방 정부실행계획
 - (29) 강력범죄방지신탁기금의 세입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30) 1994년 연방인력구조조정법 제5조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재 기관별 정규직 직위 규모와 감축계획
 - (31) 대통령실의 수석재무관(the Chief Financial Officer)이 요구한 세출승인금액에 관한 사업별 설명서
 - (32)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 제257조(b)(2)(A)에 규정된 기준선과 같은 법 제275조(b)(2)(C)에 규정된 물품세를 확대하는 경우, 개별 사업의 예산수권과 지출액의 수준(규모)에 관한 보고서
 - (33) 재무부 산하 조사국 범죄수사관학교와 법의학연구실 조직의 세출관련 사업별 세출계정
- ...
- (39) 112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보고서나 계획으로 요구되는 다른 계획이나 보고서와 중복되거나 오래된 것으로 행정기관들에 의해 삭제 또는 통합으로 지목된 보고서나 계획의 명단
- (b) (a)(5)항의 규정(향후 5년 동안의 추계지출서 및 세출승인안을 제출)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포함된 입법부 및 사법부의 추계된 지출계획 및 세출승인안은 매년 10월 16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이를 수정없이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c) 대통령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추계액(예산액 제출시의 현행 법률 하에서)과 이번 회계연도말 세출충당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추계액이 지출추계액보다 적은 경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상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d) 대통령이 예산액 및 그 첨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자료가 제출되기 전 이번 회계연도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 (1) 대통령은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a)항에 의하여 전달된 각 예산안에 관련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같은 보고서에는 공·사 합동자본투자사업 및 군사자본투자사업으로 분류되는 주요사업을 위한 세출승인요구안 및 신규지출원인행위수권 및 실제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같은 보고서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사업을 위한 세출승인요구안 및 지출원인행위수권 및 실제지출의 총 합계액에 대한 요약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분석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공·사 합동자본투자 및 군사 자본투자의 현재 사업수준과 그러한 투자의 10년간 경상가격 및 5년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최대·최저수준에 대한 추계서

(B) 가장 최근에 표준양식으로 작성된, 10년간의 각 주요사업 영역에서의 공·사 합동자본투자 수요의 요약과 평가분석보고서

(C) 각 주요사업에 대한 추정 공·사 합동자본투자 수요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문제의 분석과 확인

(D) 다음 각 요인을 포함한, 추정 공·사 합동자본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확인

(i)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

(ii) 공학적 기준

(iii) 경영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의 추계

(iv)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유사투자지출의 추계

(v) 앞의 투자에서 파생된 공공서비스수요에 대한 추계 및 서비스 용량의 추계

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연방의 재정적 자원이 배분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이 목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보고서의 한도까지, 자료가 이용가능하다면 같은 보고서는 주 또는 주내의 주요 대도시 정부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2)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승인, 신규지출원인행위 또는 실제지출이 다년간에 걸쳐 서비스 및 기타 편익을 제공하지만 제3호에 의하여 군사 자본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물자산의 건설·취득 및 복원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사 합동자본투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한정되는 것은 아님)

- (A) 도로 또는 교량
- (B) 공항과 항공운항시설
- (C) 대량운송시스템
- (D) 폐수처리 및 부대시설
- (E) 수자원사업
- (F) 병원
- (G) 자원재활용시설
- (H) 공공건물
- (I) 우주 및 통신시설
- (J) 철도
- (K) 연방지원 주택건설사업

(3)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세출승인, 신규지출원인행위 또는 실제지출이 다년간에 걸쳐 국가방위 및 안보를 위한 서비스 및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실물자산의 건설·취득 및 복원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군사 기본투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산은 군사기지·주둔지·군사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다.

(4) 공·사 합동자본투자와 군사자본투자의 구별, 주요 자본투자와 보통자본투자 간의 구별을 위하여, 예산관리처장은 회계검사원장과 의회예산처의 협의를 거친 후 이에 사용될 기준과 지침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분석보고서는 그러한 기준과 지침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A) “건축”이라함은 새로운 구조물 및 시설의 설계·기획 및 건립과 기존 구조물 및 시설의 증축, 기존 장소 및 인접 장소에서의 재건축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과 시설을 위한 신규 및 대체 장비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B) “취득”이라함은 소유지·부지·장비·구조물, 시설의 추가 및 구매·리스·거래·기부 등에 의한 주식의 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C) “복원”이라함은 기존 구조물 또는 설비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거나 건물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변환 또는 운용주식의 부분적 대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f) (a)항에 따라 제출된 1회계연도의 예산안은 1985년 이후에 효력을 가지는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통제법(1985년)상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g)

(1) 예산관리처장은 이 조에 따라 연례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각 예산안상 개별 대상단위로서의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자문과 지원업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A) (1)항에서의, (B)목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자문 및 지원업무”라 함은 비정부적 원천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i) 경영과 전문적 지원업무

(ii) 연구·분석·평가

(iii) 공학 및 기술적 업무

(B) (1)에서의 “자문 및 지원업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i) 정형화·자동화된 자료처리와 의사전달업무가 자문 및 지원업무를 조달계획에 있어 주요부분이 아닐 경우의 의사전달업무

(ii) 브룩스 건축 및 기술법 제901조에 의하여 정의된 건축 및 기술업무

(iii) 기초수학 · 의학 · 생물학 · 물리학 · 사회학 · 심리학 및 기타
현상에 근거한 조사업무

(h)

(1) 2003년 의약품개선근대화법률 제801(a)(2)조에 의한 메디케어 재원의
경고가 1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a)조에 의해 다음해를 위한 예산
의 의회 제출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경고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메디케어 신탁기금의 신탁운영위원회(이 법률의 제801(c)(5)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가 승인한 7회계연도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메
디케어 기금의 과도한 일반수입(2003년 의약품개선근대화법률 제801(c)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을 제거하는 법률이 이러한 입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이내에 입법화되었다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06호 - 예산안 추계 보완과 변경

(a) 매년 7월 16일 이전에 대통령은 의회에 이 법률 제1105(a)에 의해서 제출
되는 예산안에 대한 추가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예산안에는

(1) 회계연도를 위한

(A) 세입과 세출의 추정치의 재평가 혹은 실질적 변화

(B) 제출 이후에 예산안에 대한 상당한 부담

(C) 이 법률 1105(a)(8)과 (9)(B) 그리고 (C)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한
현재 정보

(D) 기능, 의무, 요구 사항,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관한 예산
과 현재의 추정치에 대한 완전하고 최신 정보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2) 예산안이 제출된 회계연도에 이후 4 회계연도 동안의 계속적으로 지출
되는 예산에 대한 추정치와 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안의 추정치 그리고

(3) 미래 회계연도를 위하여 예산안이 제출된 회계연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의 추정치에 관한 정보

(b) 매년 7월 16일 이전에 대통령은 요구된 예산권한에 대한 변화에 관한 의견서, 예상된 예산지출안,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한 예산안 제출된 회계연도의 추정된 수입안(행정부를 위해서 제안된 사전변화를 포함한)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이 법률의 1105(a)(1) - (14) 그리고 (b)에 의해 제출된 정보의 변화에 의한 효과와 실행성에 관한 지원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7월 16일까지 제출되는 정보에는 이 조의 (a)(1)에 의하여 제출될 것이 요구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1107 - 결손과 보조 세출안

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관련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예산안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결손과 보조 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안된 세출안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근거와 제안된 세출안의 제안근거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된 전체 세출안이 만약에 예산안에 포함되었다면 이 법률의 제1105(c)에 의해서 대통령이 추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그 조항에 의한 추천을 하여야 한다.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결손과 보조세출안이 제안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것을 변경없이 즉각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8 -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세출승인요구안의 작성과 제출

(a) 이 조항(이 조의 (b)(1)과 (e))에서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각부, 행정위원회, 혹은 기구들을 말한다.

(b)

(1) 행정위원회의 장의 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세출요구안을 준비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출요구안은 이 장에서 대통령이 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예정하는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이 예정된 날짜까지 세출요구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예산안에 포함될 행정위원회 세출안이나 예산안의 변화 혹은 결손과 보조 세출안을 준비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위원회 세출요구안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의 세출요구안은 대통령이 수시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비용 중심의 예산안으로부터 발전해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출안과 소요액을 분리하기 위해서 비용 중심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2)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위원회의 행정관이나 관리는 행정위원회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위원회의 결손이나 예비적 세출안을 승인하는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대통령과 의회에 할 수 있다.

(c) 행정위원회의 장은 대통령에 제출하는 세출요구안에 이 법령의 제1501조에 따른 의무들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포함하는 의무진술서를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은 일체성을 보여주는 확인서에 의해서 그 보고서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확인서는 의무 지워지는 액수를 보여주는 확인서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장은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정관들을 지명해야하고 그러한 행정관들의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확인서들과 기록들은 행정위원회 내부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로 보관하여야 한다.

- (1) 회계감사와 조정이 용이한 형태로; 그리고
- (2) 회계감사와 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d)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행정위원회의 장은

- (1) 기능과 세부기능(행정위원회의 매 조직 단위의 수행과제를 포함한)에 의해서 그들의 수행과제들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예산요구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 (2) 행정위원회의 프로그램들을 그의 수행과제들과 연계시켜야 한다.

(e) 이 조항의 (f)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위원회의 행정관이나 공무원(이 법률의 110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은 의회나

의회의 위원회에 제출추정치, 제출요구안, 추정치나 요구안에 대한 인상요구안, 혹은 정부의 재정적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한 추천서를 의회의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야 한다.

(f) 주간통상위원회는 추정예산안, 요구안, 그리고 정보(개인적 필요를 포함하고 있는), 입법추천서들, 의회의 청문회에 대비한 준비된 증언, 입법에 대한 의견서 등의 부분을 대통령이나 예산관리처에 제출하는 동시에 의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의 관리들은 조건을 부과하거나 위원회와 의회 혹은 의회의 위원회, 혹은 의회의원들과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g) 이 법률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액수는 제출추정안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가능하다. 이러한 예산액은 사용은 의회세출위원회에서 만들 규정들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다.

제1109조 현 정책들과 예상활동들의 추정

(a) 매년 1월 3일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의 당일이나 그 직후에 대통령은 만약 현재 회계연도 수준에서 정책의 변화 없이 미국정부의 프로그램들과 행위들이 이행된다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예산지출(the estimated budget outlays) 그리고 제안된 예산권한(proposed budget authority)을 의회의 상·하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기능과 행정청에 의한 예산권한과 지출”(“Budget Authority and Outlays by Function and Agency”)이라는 제목으로 매 기능의 주요 정책들에 의해 그리고 행정청에 의해 예산요약표에서 분류들 속에 기능과 속기능 별로 추정예산지출(the estimated budget outlays) 그리고 제안된 예산권한(proposed budget authority)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예산지출과 예산권한의 근거가 된 경제와 정책 추정에 관한 교서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교서에는 인플레이션, 실제경제성장, 그리고 실업률, 정책부담, 그리고 임금인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상·하 양원 합동경제위원회(The Joint Economic Committee)는 추정예산지출과 제안된 예산권한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지출과 예산권한에 대한 경제적

미국 재정법 해설서

평가를 매년 3월 1일 이전에 상·하 양원 예산위원회(the Committees on the Budget of both Houses)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0조-1년을 앞선 예산권부여 입법의 법제화요구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권을 부여하는 입법의 법제화요구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해에서 일 년이 앞선 해의 5월 16일 보다 먼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제화 요구는 적어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제1111조 - 경제와 효율성의 증진

미국정부의 경제와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은

(1) 행정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추천서를 결정하여 의회에 보낼 수 있다.

추천서에는

- (A) 행정위원회의 업무방법, 활동, 조직;
- (B) 행정위원회에 대한 예산배정;
- (C) 특정서비스에 대한 특정활동의 제시; 그리고
- (D) 특정서비스의 재그립핑; 그리고

(2) 행정부의 관리, 조정, 조직에 대한 향상된 계획의 개발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1112조 - 회계, 예산 그리고 정책관련정보

현행 미국 연방법률 번호 114-38로 법전화되어 있다.

(a) 이 조항에서는 “행정기관”(agency)은 협동적 소유권의 정부회사를 제외한 미국 연방정부의 부처(department), 행정청(agency), 혹은 정부기구(instrumentality)를 의미한다.

(b)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재무장관, 예산관리처장은 서로 협력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필요에 맞도록 행정위원회의 이용을 위한 회계,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를 위한 표준 정보체계와 표준 데이터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c)

(1)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재무장관, 예산관리처장, 그리고 의회예산처장(the Director of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과 협동하여 회계정책, 세입, 세출, 프로그램, 계획, 활동 그리고 기능을 포함한 정부의 회계, 예산, 프로그램 정보의 표준용어(standard terms)와 표준분류(standard classifications)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방정부 행정부에 의한 표준분류와 표준용어가 수립, 유지,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추천하고 이러한 용어와 분류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전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하 양원의 세출·예산 위원회, 하원의 세입위원회, 상원의 재정위원회 그리고 의회예산처의 요구들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d) 행정위원회는 제정,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정보를 의회에 제공할 때에는 앞 (c)(1)에 의해 공표된 표준용어(standard terms)와 표준분류(standard classifications)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대통령과 상의하여 행정위원회의 장관은 가능한 한 필요한 대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1) 예산과 계상의 분류에서의 일관성

(2) 분류와 조직 구조 사이의 합치성

(3) 예산의 정당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비용과 과업실행에서의 조직적 단위
위에 의한 정보

(f) 의회예산처장과 협력하여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대표들, 그리고 예산관리처장은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정부들과 지방정부들에게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이 자신들의 예산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고 때에 맞게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회계,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15조 연방 정부와 행정기관의 업무이행계획

(a) 연방정부이행계획-1105 (a) (28)조를 이행함에 있어, 예산관리처장은 연방 정부 성과계획을 수립 할 행정기관들과 협력해야한다.

예산관리처장은 미국 정부의 각 예산과 함께 이러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제1122조에 규정 된 웹 사이트에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그러나 매년 이상은 아닙니다.

(1) 연방정부는 이 계획의 제1120조 (a)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목표를 위해 계획이 제출 된 회계연도 동안 성취 될 수 있는 성과수준을 정의하는 연방 정부 성과목표를 수립해야한다;

(2) 현 회계연도 동안 각 연방정부 성과목표에 기여하는 기관, 조직, 정책 수행 활동, 규정, 세출, 정책 및 기타 활동을 명시해야한다;

(3) 개별 연방정부 성과목표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고위 연방공무원을 명시해야한다;

(4) 연방정부의 성과지표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분기 별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A) 개별 연방정부 성과목표를 향한 전반적인 진전; 그리고

(B) 개별 기관, 조직, 프로그램 활동, 규정, 세출, 정책 및 (2)호에 따라 명시된 기타 활동의 개별기여;

(5) 명확하게 정의된 분기별 공정표(milestones)를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6) 본질적으로 정부차원이거나 크로스커팅(crosscutting)한 중대한 관리 과제를 명시하고 관련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공정표(milestones)를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관리계획을 기술해야합니다.

(b) 행정기관업무수행계획(Agency Performance Plans) –

각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 월 첫째 월요일에 행정기관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통령과 의회에 행정기관의 가용성, 그러한 행정기관의 예산에 설정되어 있는 개별 정책수행활동을 다루는 업무수행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러한 계획에는 예산이 제출된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달성해야 할 성과수준을 정의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c)항에 의거하여 대체 양식이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이고 양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러한 목표를 적시해야 한다.

(3) 성과 목표가 어떻게 다음에 기여하는지 기술하십시오.

(A) 제5장의 제306(a)(2)조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기관의 전략계획에서 수립된 일반적인 목표 및 목적; 그리고

(B) (a)(1)항에 의해 요구되는 연방정부 성과계획에 설정된 연방정부 성과목표 중 어느 하나의 목표 달성;

(4) 적용가능하다면, 이 법률의 제1120(b)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행정기관의 목표 우선 순위로 지정된 성과 목표를 명시하십시오;

(5) 다음을 포함한 어떻게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십시오. –

(A) 운영 프로세스, 교육, 기술 및 기계적 기술, 그리고 이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본, 정보 및 기타 자원 및 전략;

(B) 명확하게 정의된 공정표;

(C) 행정기관 내, 외부 모두에서 각 성과 목표에 기여하는 조직, 프로그램 활동, 규정, 정책 및 기타 활동을 명시;

(D) 해당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연방 정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그리고

(E) 목표달성 지도자로 알려진 개별 성과목표의 달성에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명시;

(6) 고객 서비스, 효율성, 산출물 그리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포함하여 각 성과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형이 잡힌 성과지표의 세트를 수립해야한다;

(7) 실제 프로그램 결과와 확정된 성과 목표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8) 해당 행정기관이 성과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설명—

(A) 측정된 값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

(B) 데이터의 소스;

(C) 의도된 데이터 사용에 필요한 정확도;

(D) 필요한 정확도 수준에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제한사항; 그리고

(E)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9) 행정기관이 직면한 주요 관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그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

(B)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공정표; 그리고

(C)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담당관; 그리고

(10) 해당 행정기관의 사명이나 목표의 달성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에 근거가 되는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수행활동을 명시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수행활동으로 지정하는 증거에 근거한 정당성을 포함해야 한다.

(c) 대체양식.—

행정기관이 예산관리처장과 협의하여 특정 정책 활동의 성과 목표를 객관적이고 양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예산관리처장은 대체양식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대체양식은

- (1) (A) (i) 최소한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 (ii)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개별 기술언급을 포함하거나,
- (B) 예산관리처장이 승인한 대체양식이 프로그램 예산의 운영 성과가 기준에 부합 하는지를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용어를 사용하거나;
- (2) 이행목표를 정책수행활동의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왜 실행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유를 기술해야한다.

(d) 정책수행 활동의 취급.－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은 정책수행활동을 집계,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다만, 어떤 집계 또는 통합이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 또는 운영을 구성하는 정책수행 활동의 중요성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할 수는 없다.

(e) 부속서(Appendix)－ 행정기관은 연간 성과계획과 함께

- (1) 국방이나 외교 정책의 이익을 위해 기밀로 처리할 것이 집행명령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고; 그리고
- (2) 행정기관은 이러한 집행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된 계획의 일부를 포함하는 부록을 연간 실적 계획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f) 본질적 정부기능.－

이 조항에서의 기능과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기능으로 간주되어야한다. 이 조항에 따른 성과 계획의 초안 작성은 연방공무원만이 수행해야한다.

(g) 최고 인사담당관(Chief Human Capital Officers)－

최고 인사담당관을 두고 있는 개별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최고 인사담당관은 인적 자원 책임자와 관련된 각 기관과 관련하여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는 이 조항(b)(5)(A)에 기술된 연례 성과계획 중 해당 부분을 준비해야한다.

(h) 정의규정(Definitions.)－이 조항과 제1116조부터 제1125조, 그리고 제9703조 그리고 제9704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용어는－

- (1) “행정기관”(“agency”)은 제5장의 제306조 (f)항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2) “크로스 커팅 (crosscutting)”은 기관적 (행정기관 같은) 경계를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 (3) “고객 서비스 측정(customer service measure)”은 고객, 의뢰인, 시민 또는 다른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평가로서 품질, 적시성 및 다른 요소간의 만족도 평가를 포함한다;
- (4) “효율 측정(efficiency measure)”은 정책수행 활동의 투입물 (직원이 근무한 시간이나 비용 등)과 산출물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양) 또는 결과 (정책의 바람직한 결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 (5) “주요 관리 도전과제”라 함은 정부 기관 내 또는 기관 전반에 걸쳐 낭비, 사기, 남용 및 관리 불이행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큰 정부정책이나 관리 기능으로 의회의 회계감사국(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나 감사관(an Inspector General)에 의해서 파악되거나 명시된 문제들로 이것들이 잘 이행되지 못하면 행정기관이나 정부가 임무를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6) “공정표(milestones)”는 주요 이행목표의 완성이나 관련이행목표의 완성 혹은 작업의 진행의 계획된 사건들을 의미한다.
- (7) “결과측정(outcome measure)”은 의도된 목적과 비교된 정책수행 활동 결과의 평가를 의미한다.
- (8) “산출측정(output measure)”이란 양적 또는 질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활동이나 노력의 표, 계산 또는 기록을 의미한다.
- (9) “성과 목표(performance goal)”란 유형적 표준, 가치 또는 비율로 표현된 목표를 포함하여 실제 업적을 비교할 수 있는 유형의 측정 가능한 목표로 표현된 목표의 성과 수준을 의미한다.
- (10)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란 산출물이나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가치 또는 특성을 한다.
- (11) “정책수행활동(program activity)”란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에 정책수행이나 재정계획으로 명시된 특정 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 “정책수행평가(program evaluation)”란 객관적 측정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방 정책수행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및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116조 -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보고

(a) 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예산관리처(OMB)에 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공개해야한다.

(b)

(1) 개별 정보의 업데이트는 1115 (b) 항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성과계획에 설정된 성과 목표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고 각 회계 연도가 끝난 후 15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 부담으로 정부, 의회 또는 정책 파트너에게 중요한 가치가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

(2) 성과목표가 1115 (c)항의 대체 형식으로 명시된 경우, 성과가 최소한으로 효과적이거나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과는 이러한 명시사항과 관련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c) 개별 정보의 업데이트는-

(1) 성과목표 달성의 성공 여부를 검토하고 이전 5 회계 연도의 실제 실적을 포함해야한다.

(2)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성과목표에 도달 한 성과를 기준으로 현재 회계 연도의 성과계획을 평가해야한다.

(3)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기술해야한다.(정책 활동의 성과가 1115 (c) (1) (A) (ii))에 의거 한 성공적인 정책 활동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다른 대안 양식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수준의 성취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A) 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는가;

(B) 확정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 그리고

(C) 성과 목표가 비실용적이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어떤 조치가 권장되는지;

(4) 이 법률의 제9703조에 근거하여 기권(waiver)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때 효과성을 측정하고 그 사용을 기술했어야 한다.

(5) 기관의 전략적 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의 평가와 성과목표의 심사를 포함해야 한다;

(6)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성과목표를 향한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A) 측정된 값을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B) 데이터 소스;

(C) 의도된 데이터 사용에 요구되는 정확도의 수준;

(D)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의 데이터에 대한 한계; 그리고

(E)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보상했는지; 그리고

(7)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완료된 정책수행 평가결과의 요약본을 포함해야 한다.

(d) 만약 행정기관의 성과 업데이트가 국방이나 외교 정책의 이익을 위하여 기밀로 처리되도록 행정명령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특별히 승인된 업무수행 활동이나 정보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정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제1115 (e)조에 따라 규정된 기밀부속서에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 이 조항의 기능과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기능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업데이트의 초안 작성은 연방공무원만이 수행해야한다.

(f)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관리처장은 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이나 활동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계획에서 표시된 업무수행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기관들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행정기관의 장;
- (2) 상원의 국토 안보 및 정부 문제위원회(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 (3) 하원의 감시와 정부개혁 위원회(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al Refor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그리고
- (4) 의회정부감사실(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 만약 한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이나 활동이 1 회계 연도 동안 예산관리처(OMB)에 의해 결정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미 충족 목표의 정책수행 효율성을 측정가능한 이정표로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관리처(OMB)에 업무성과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개별 미 충족 목표의 업무수행 개선전략을 감독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h)

(1) 예산관리처(OMB)가 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이나 활동이 2년 연속하는 회계 연도 동안 충족되지 않은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의회에

(A) 행정기관이 법률의 개정활동이나 계획된 행정적 행위들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B) 만약 예산액이 예산관리처장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이라고 결정되고 예산관리처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명된 추가적 자금지원활동을 기술한다.

(2) 제(1)항(B)호에 기술된 추가 기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재 프로그램 또는 권한의 이전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한 후에 예산관리처장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의회에

추가 재 프로그램 또는 권한 이전을 요청해야한다.

(i) 예산관리처(OMB)가 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이나 활동이 3년 연속 회계연도 동안 업무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예산관리처장은 그러한 결정이 있었는지 60일 이내에 업무수행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추천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추천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업무수행목표를 미충족한 개별 정책수행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의 재승인;
- (2) 개별 업무수행목표에서 제안된 업무수행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행활동에 필요한 법률개정안 제안;
- (3) 대통령 예산의 삭감이나 감축으로 이어지는 계획된 행정활동이나 정책수행활동의 적시.

제1117조 - 면제

예산관리처 장관은 1년 예산이 2천만 달러 이하인 행정위원회에게는 제1115조와 제1116조의 요구사항이나 제5장의 제306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II.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U.S.C. 제2편 의회, 621조 ~

총 칙

제1조(약칭) 2 U.S.C. § 621

본 법은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으로 통칭된다. 다만 제1장부터 제9장까지는 「1974년 의회예산법」으로, 제10장의 A와 B는 「1974년 지출유보통제법」으로, 제10장의 C는 「1996년 항목별 거부권법(Line Item Veto Act)」으로 호칭될 수 있다.

제2조(목적의 공표)

의회는 이 법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공표한다.

- (1) 예산과정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 통제를 확인
- (2) 연방 세입과 세출의 적정 규모(appropriate level)에 대한 매년도의 의회 결정사항을 제공
- (3) 지출유보(impoundment)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규정
- (4) 국가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
- (5) 의회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1) “예산지출(budget outlay)”과 “지출(outlay)”이란 매 회계연도에 있어 예산지출권한(budget authority)에 따른 회계연도기간의 연방자금의 지출 및 순융자(net lending)를 의미한다.

(2) 예산지출권한과 신규예산지출권한

(A) 총칙 - “예산지출권한”이란 재정상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다음의 권한을 의미한다.

(i) 차감수입(offsetting receipts) 및 차감징수(offsetting collections)로 발생하는 순수익(proceeds)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대한 권한을 포함,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을 위한 자금집행을 가능케 하는 권한

(ii) 차입권한(borrowing authority)이란 하나의 연방 기관에 대하여 약속어음(promissory notes)의 발행 또는 기타 금융신용대출 등을 통해 자금의 차입,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iii) 부의 예산지출권한(negative budget authority)으로서의 차감수입 및 차감징수와, 정의 예산지출권한(positive budget authority)으로서 차감수입 및 차감징수의 축소(reduction)

(B) 예산지출권한에 대한 제한 - 연방병원보험신탁자금, 추가의료보험신탁자금 및 철도퇴직계정의 경우, 법 규정(지출제한 또는 수혜방식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1회계연도의 지출원인행위(obligation)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동 회계연도 내에 예산지출권한이 부여될 수 없다.

(C) 신규예산지출권한 - “신규예산지출권한”이란 1회계연도에 있어서,

(i) 세출을 재승인(reappropriation)함에 따라 동 회계연도에 유효하게 된 예산지출권한을 포함하여 최초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산지출권한과

(ii) 법 조항이 전년도에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지출권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남은 잔고(unobligation balances)에 대한 모든 연방계정 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의하여 미확정 금액이 들어 있는 신규예산지출권한에 있어 그 미확정금액의 변경도 포함된다.

- (3) “조세지출”이란 연방조세법률 규정 중 비과세, 면제 또는 경감, 특별유예(special credit), 세율우대, 과세이연을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손실을 의미하고,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지출합계액을 의미한다.
- (4) “예산공동결의안”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제301조에 규정된 1회계연도의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을 제시하는 공동결의안
 - (B) 제304조에 규정된 1회계연도의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을 수정하는 기타 공동결의안
- (5) “세출승인법”이란 미국 연방법전 제1편 제105조에 규정된 법을 의미한다.
- (6) “적자”란 1회계연도에 있어 동 회계연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7) “흑자”란 1회계연도에 있어 동 회계연도의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8) “정부보증기업(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이란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 (A) (i) 법에 의한 연방설립인가장이 있고,
 - (ii) 민간업체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금에 의하여 명백히 민간에 의해 소유되며,
 - (iii) 구성원의 다수가 민간소유자가 선출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 (iv) 다음의 권한을 보유한 재정기관을 의미한다.
 - (I) 특정 차입자 또는 1개 부문에 대한 신용대출 제공 등과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권한
 - (II) 차입(연방 정부의 보증 및 신용대출을 수반하지 않는)에 의한 자금조성을 하는 권한 또는 타인채무에 대한 무한 보증 권한

- (B) (i) 정부보증기업은 정부권한(조세부과권한 또는 주제통상(interstate commerce) 규제 권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 (ii) 정부를 재정적으로 구속하는 권한이 없다. 다만 정부가 책임을 지는 대출보증 약정의 수령인이 될 수는 있다.
- (iii) 정부보증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있으나, 이들은 미국 연방법전 제5장의 적용을 받는 연방 공무원이 아니다.

(9) 의무적 또는 수혜적 지출권한(entitlement authority)이란 세출승인법이 사전에 규정하지 못한 예산지출권한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의미한다.

- (A) 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따라 연방 정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정부기관들에 대하여 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경우의 지출 권한과
- (B) 푸드스탬프 식량지원사업(food stamp program)

(10) “여신권한(credit authority)”이란 직접 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 또는 우선대출보증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제 I 장 하원 및 상원예산위원회의 설립

제101조 하원 예산위원회

(e) 예산위원회는 다음의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세출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 소속 위원 중 5인
- (2)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위원 중 5인
- (3) 그 밖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 11인
- (4) 다수당 원내 대표부 1인
- (5) 소수당 원내 대표부 1인

1974년 이후 5회 연속된 회기 가운데 두 회기 이상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위원에 대한 선임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예산위원회

(a) 모든 예산공동결의안(1974년 의회예산법 3(a)(4)에서 규정) 및 여타 사안들은 1974년 의회예산법 제III편 및 제IV편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1) 1974년 의회예산법 제III편 및 제IV편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의 보고

(2) 현행 법률과 법률안의 예산지출(budget outlays) 영향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연구 결과의 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3)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요청 및 평가, 조세지출, 정책, 계획의 예산지출과의 조정 방법에 관한 제안 및 그 연구 결과의 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4)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기능 및 책무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

제102조 상원 예산위원회

(r)(2) 예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1974년 의회예산법 제III편 및 제IV편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의 보고

(2) 현행 법률과 법률안의 예산지출(budget outlays) 영향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연구 결과의 상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3)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요청 및 평가, 조세지출, 정책, 계획의 예산지출과의 조정 방법에 관한 제안 및 그 연구 결과의 상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4) 의회예산처의 기능 및 책무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

제 II 장 의회예산처(CBO)

제201조(설립)

(a) 총 칙

- (1) 연방 의회의 산하에 의회예산처를 설치한다. 의회예산처는 처장에 의해 운영되며, 처장의 사고나 궐위 시에 직무를 대행하고 처장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1인의 부처장을 둔다.
- (2) 처장은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하원의장 및 상원임시의장이 임명한다. 동 권고안은 당파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근거한다. 부처장은 처장에 의해 임명된다.
- (3) 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선거 전년도 1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만료 전에 공석을 보궐하기 위해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부처장은 해임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 (4) 처장은 상원 또는 하원의 결의안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 이하 보수 관련 규정은 생략함 -

(d) 연방 정부와의 관계

처장은 연방 정부의 각 부처·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연방 규제기관·규제위원회로부터 정보, 자료, 추계서 및 통계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들 기관들은 처장이 직무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단 자료의 제공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처장에게는 이들 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통해 보상 또는 보상 없이 해당기관의 설비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들 기관의 장에게도 설비, 시설 및 인력을 의회예산처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f) 세입추계

의회 회기 동안 심의되거나 법제화될 수 있는 소득세, 토지세, 증여세, 소비세 및 원천징수세와 같은 세입 입법에 관하여, 의회예산처는 합동조세위원회가 제공하는 세입추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입추계는 해당 회기동안 의회예산처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는 하원 또는 상원의 모든 위원회에 전달되어 당해 위원회가 세입추계를 의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하원의 예산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수행 및 예산공동결의안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추계를 의결한다.

(g) 세출승인

의회예산처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세출예산이 매 회계연도별로 승인된다.

제202조(직무와 기능)

(a) 예산위원회에 대한 지원

의회예산처의 우선되는 직무와 기능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권한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 (1) 신규 예산지출권한 또는 조세지출을 인가하거나 규정하는 예산안, 세출승인법안 또는 기타 법안에 대한 정보
- (2) 세입 및 수입, 추정세입 및 수입과 세입여건의 변화에 관한 정보
- (3) 예산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되는 정보

(b) 세출·세입·재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상·하원 세출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하원 세입위원회에 해당)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예산처는 해당 위원회의 권한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반 정보(이 조 (a)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여타 위원회와 의원들에 대한 지원

- (1) 상·하원의 다른 위원회(위 3개 위원회를 제외한) 또는 의회 합동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예산처는 이 조 (a)항 (1)·(2)에 규정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 및 요청될 수 있는 관련 추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 (2) 상·하원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예산처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안에 대한 예산상 또는 재정상의 영향을 검토하는 위원회와 협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A) 주정부, 지방정부, 인디언자치정부에 예산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
- (B) 민간 부문에 예산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
- (C) 민간 부문에 고용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안

(3) 상·하원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예산처는 이 조 (a)항 (1)·(2)에 규정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 및 요청될 수 있는 관련 추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d) 위원회와 합동위원회에 대한 의회예산처 직원의 파견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의회예산처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 상·하원의 여타 위원회 및 의회 합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b)항 또는 (c)항의 조항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회예산처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e) 예산위원회에 대한 보고

(1) 매년 2월 15일 까지, 처장은 상·하원의 예산위원회에 대하여 그 해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정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총세입, 총 신규예산지출수권, 총지출규모에 대한 대안
 - (B) 다음 회계연도의 대통령 제출예산안에 근거하고 있는 추정 경제요소와 규모 변경을 고려시 현행법 하의 조세지출 규모
 - (C) 제257조 (b)(2)(A)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준선(baseline)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각 사업과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재정적자 통제법」 제257조 (b)(2)(C)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세에 대한 예산지출권한과 지출의 규모에 대한 설명서
- 의회예산처의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에는 1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토론내용을 비롯하여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예산지출 배정

상의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배정은 주요 사업 및 기능별 분류에 의한 배정을 말하며, 배정의 변경이 중대한 국가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미국의 균형성장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의회예산처장은 수시로 업데이트된 재정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상·하원의 세출위원회와 협의 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열거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당해 회계연도에 세출승인권한이 법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나 자금을 받은 모든 사업과 활동

(B) 당해 회계연도에 세출승인권한이 법으로 부여된 모든 사업과 활동. 다만, 다음 회계연도에 세출승인권한이 법으로 부여되지 않는 사업과 활동을 제외한다.

제 3 장 의회예산과정

(연방법전 제2편 의회, 제631조~제645(a))

제300조(일정표) 매 회계연도의 의회예산과정에 대한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시 한	내 용
2월 첫째 월요일	대통령 예선서 제출
2월 15일	의회예산처 예산위원회 보고서 제출
대통령 예산안 제출 후 6주 이내	각 위원회, 예산위원회에 '검토 및 추계서' 제출
4월 1일	상원 예산위원회 예산공동결의안 보고
4월 15일	의회, 예산공동결의안 심사완료
5월 15일	하원, 연차 세출승인법안 심의가능
6월 10일	하원 세출위원회 최종 연차세출승인법안 보고

6월 15일	의회, 조정입법에 대한 심의완료
6월 30일	하원, 연차세출승인법안에 대한 심의완료
10월 1일	회계연도 개시

제301조(연차 예산공동결의안의 채택)

(a) 예산공동결의안의 내용 - 의회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해 10월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다음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예산공동결의안에서는 10월1일에 시작하는 다음회계연도 및 계속되는 적어도 4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 (1)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지출 총액
 - (2)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세출위원회가 보고하는 법안과 결의안에 의한 증감규모를 감안한 총연방세입
 - (3) 예산흑자 및 적자
 - (4) 이 조 (a)항(1)에 따른 총 규모의 배정(allocation)을 토대로 한 주요기능별 분류에 의한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지출
 - (5) 국가채무(public debt)
 - (6) 이 장에서 상원의 시행의결에 따른, 결의안의 다음회계연도 및 계속되는 4회계연도 각각에 대한 사회보장법 제2장에 규정된 노인, 유족, 장애인 보험사업의 지출액
 - (7) 이 장에서 상원의 시행의결에 따른, 결의안의 다음회계연도 및 계속되는 4회계연도 각각에 대한 사회보장법 제2장(그리고 1986년 내국세법 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노인, 유족, 장애인 보험사업의 수입액
- 공동결의안상에서는 이 조 (a)항에서 규정된 흑자 및 적자 총액의 산정이거나 이 장에서 규정된 여타 흑자 및 적자 총액 산정에 있어, 사회보장법 제2장 및 1986년 내국세법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유족, 장애인 보험사업의 지출 및 수입 총액을 포함할 수 없다.

(b) 공동결의안의 기타 사항 - 예산공동결의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1) 이 조 (f)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1946년 고용법 제4조(b)에 규정된 실업을 축소목표에 대한 의회의 의견
 - (2) 제310조에 의한 조정지침(reconciliation directives)
 - (3) 의회가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이나 제301조(b)항에 따라 보고되는 공동결의안상의 양자 모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때에만, 해당 회계연도의 신규예산지출권한 또는 신규의무적지출권한을 규정하는 법안 및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절차사항
 -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관련된 다른 의사절차 또는 기타 사항의 제시
 - (5) “적자산정에 따른 채무증가(Debt increase as Measure of Deficit)”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각 회계연도의 국가채무한도(미국연방법전 제31편 제310조, public debt limit)에 산입되는 채무액을 공동결의안에 제시하여야 한다.
 - (6) “연방퇴직신탁자금잔액의 공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잔액을 공동결의안에 제시하여야 한다.
 - (7) 위원회 배정, 총규모와 여타 규모들의 입법을 통한 수정을 위해 관련되는 상원에서의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수정은 결의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 또는 전체회계연도의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고, 결의안 채택후 제정된 다른 입법과 함께 고려시에도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 (8) 하원에서 세입세출균형원칙(pay-as-you-go) 실현을 위한 의사절차
 - (9) 직접대부재원 지출원인행위규모 및 우선대부보증약정 규모
- (c) 하원규칙의 개정에 영향을 주는 절차와 안건에 대한 심사 - 만약 하원 예산위원회가 하원규칙의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와 안건이 들어있는 예산공동결의안을 보고하면, 그때부터 5일 이내(하원유회일을 제외)에 그 설명서와 함께 동 공동결의안이 규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규칙위원회는 위와 같이 회부된 공동결의안의 절차나 안건을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수정안들을 공동결의안과 함께 보고할 권한이 있다.

(d) 다른 위원회의 검토와 추계 -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제1105조(a)항에 따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6주 이내 또는 예산위원회가 요구한 기한 내에, 하원 및 상원의 각 위원회는 이 조 (a)항 및 (b)항에서 규정하는 공동결의안상의 제시내용들에 대한 검토 및 추계서(위원회가 의결한)를 해당 하원 및 상원의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동경제위원회는 1946년 고용법의 목표에 부합하는 재정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상·하원의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하원 및 상원의 각 위원회는 그 권한 또는 기능과 관련된 이 조(a)항 및 (b)항에서 규정하는 공동결의안상의 제시내용들에 관한 검토 및 추계서를 해당하는 상·하원의 예산위원회 및 합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의 각 위원회가 행정부가 제출한 중대한 예산상 또는 재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입법제안서를 심사하거나, 주정부 지방정부 인디언자치정부(tribal government)에 중대한 예산상의 영향을 주거나 민간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연방 사업의 시행, 수정 또는 재수권을 규정하는 법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추계서를 각 상원 또는 하원의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 청문회와 보고서

(1) 총칙 - 이 조 (a)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을 작성하는 상 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의원,연방부처와 청, 일반국민 및 해당 국가조직의 적합한 대표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어야 한다.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공동결의안 심사시 이 조 (d)항에 따라 합동경제위원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제시된 단기와 중기목표에 대한 권고안을 동 결의안의 일부분으로 심사할 수 있다. 공동결의안 보고서에서는 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상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의안상의 세입추계와 예산지출권한 규모 및 지출규모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권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수록할 수 있다.

(2) 심사보고서의 필수내용 - 공동결의안이 첨부된 심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공동결의안에 제시된 각 회계연도상의 총 신규예산지출권한 총지출 총세입 흑자 또는 적자 규모와 대통령제출 예산안이 제시하는 규모와의 비교

(B) 주요 기능별 분류를 위하여, 재량금액과 의무지출금액으로 분리한 내용이 포함된 총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총지출에 대한 추계서

(C) 결의안상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 경제전망 및 심사결과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제전망과 목표

(d) 결의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시 그 의결의 근거내용과 방안을 소개하는 정보, 자료 및 대비내용

(e) 주요 항목 및 기능별 분류에 의한 대통령제출 예산안과 결의안상의 조세지출(조세지출예산) 추계규모

(f) 제 302조(a)항에 명시된 위원회 배정(allocation)

(3) 심사보고서의 기타내용 - 공동결의안이 첨부된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A)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지원 규모의 상당규모 변동시 그 설명서

(B) 결의안에 의하여 권고되고 있는 연방세입규모의 주요세원간 배정 사항

(C)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서 및 결의안상에 투자로 분류되는 총연방예산지출액 및 GDP의 배분에 대한 정보, 자료 및 대비내용

(D) 건설비 수리비 및 임차비로 나누어서 본 공공건물들에 대한 예산지출권한의 추정규모 및 지출추정규모

(E)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및 재정정책과 관련한 기타 내용

(f) 실업을 감소목표의 달성

(1) 1946년 고용법 제4조(C)에 의거, 대통령이 동법 4(b)에 제시된 실업률 감소목표를 동항이 규정하는 5년이 지난후 일년안에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미국 대통령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제현황보고)에 제시하면, 의회는 그 제시한 날짜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 의안에서 의회의견으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연도를 제시할 수 있다.

(2) 의회가 목표연도 (1946년 고용법 제4조(b)에 제시된 실업감 소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연도)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표시한 직후, 동법 제 4(e)에 따라 대통령이 그 목표연도(이 항 (1)에 따른 의결 또는 가장 최근의 의결을 통해 의회가 의견서에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연도)와 달리 다른 연도에 실업을 감소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경제보고서에서 제시하면, 그 제시한 날짜 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 의안에서 의회의견으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연도를 제시할 수 있다.

(3)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결의안의 조항을 상정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수정안이 목표연도까지 달성될 수 있다는 경제목표(1946년 고용법 의 제3조(a)(2) 및 (4)(b)에 규정된)와 일치하는 타당한 방법으로 동결의안에 제시된 추계액 금액 및 규모의 수정을 제안할 경우에 한한다.

(g) 경제전망

(1) 1개이상의 경제적 및 기술적 전망에 근거한 금액과 규모가 제시된 1회계연도에 대한 공동결의안 수정안 및 관련 양원합동보고서(conference report, 양원합동위원회의 협상결과보고서)의 경우 상원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2)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합동보고서에 첨부되는 합동설명서(joint explanatory statement)에는 일반화된 경제전망(common economic assumptions)을 제시하

여야 하며, 동 설명서와 보고서의 내용은 동 전망에 근거하여야 하고, 기술적 불일치시에 제안되는 양원 이견사항조정협의를 따른 모든 수정안들(합동설명서에 수록된)도 동전망에 근거하여야 한다.

(3) 변경되는 경제조건 또는 기술적 추계에 의하여 주기적인 재추계의 대상이 되는 1974년 의회예산법의 제3장 및 제4장상의 공동결의안은 일반화된 경제 및 기술전망에 근거하여야 한다.

(h) 예산위원회의 다른 위원회와의 협의 - 하원예산위원회는 예산공동결의안의 준비 심사 및 시행에 있어 다른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과 관련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i) 규칙위반지적(point of order)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사항 -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때 회계연도에 있어 사회보장수입의 잉여(사회보장지출을 초과하는 수입)를 감소시키는 결의안(또는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은 상원에서 심사될 수 없다.사회보장수혜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사항에 대한 조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1986년 내국세법 제1장의 어떠한 수정도 사회보장세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처리될 수 없다.

제302조(위원회 배정)

(a) 위원회간 지출배정(committee spending allocations)

(1) 위원회간의 배정 -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양원합동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합동설명서에는 동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결의안과 일치하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금액을 제공 또는 창출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 하원 위원회별 결의안상의 첫 번째 회계연도와 적어도 계속되는 4회계연도 각각 및 전체회계연도의 총 신규예산지출권한 배정규모 및 총지출 총액 배정규모.

- 다만, 세출위원회의 경우에는 결의안상의 당해 회계연도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이중배정 금지 - 하원에서는 1개의 위원회에 배정된 어떤 항목(item)도 다른 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다.

(3) 금액의 추가 배분(Further Division of Amounts)

(A) 상원 - 상원의 경우 세출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이 1985년 균형예산 및긴급재정적자제법 의 제250조(c)(4)에 규정된 분류(category)에 맞추어 추가 배분되어야 하며, 동법 제251조(c) 항에 제시된 각 분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B) 하원 - 하원의 경우 각 회계연도별로 각 위원회(세출위원회는 제외)에 배정된 금액이 합동보고서 제출일까지 법에서 규정 또는 요구하고 있는 금액과 그러지 않은 금액으로 구분하여 추가배분되어야 한다. 세출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한다.

(i) 재량지출되는 금액과 사업 및 의무지출되는 금액과 사업으로 적정하게 배분

(ii) 1985년 균형예산및긴급재정적자통제법 제250조(c)(4)에 명시된 분류와 일치하게 배분

(4) 배정되지 않는 금액 - 상원 또는 하원 모두에 있어, 1개 위원회가 신규 예산지출권한 또는 지출에 대한 배정을 받지 않으면, 당해 위원회는 신규 예산지출권한 또는 지출에 있어 과 동등한 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5) 하원에서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의 배정 조정

(A) 예산공동결의안이 4월15일(이 법상 의회 공동결의안 심사완료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하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 (a)항(1)에 따라 즉시 실행이 가능한 배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세출위원회에는 가장 최근에 합의한 예산공동결의안의 재량지출규모와 일치하는 배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이 조 (a)항(1)에 따른 배정이 이 조에 따라 제출되어 즉시 실행이 가능하게 되면, 세출위원회는 재배정(suballocations)을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b) 세출위원회에 의한 재배정 - 예산공동결의안이 채택되어 즉시시행이 가능하게 되면, 상 하원의 세출위원회는 상호협의후 이 조(a)항에 따라 예산연도(budget year, 다음회계연도 예산이 심의되고 있다는 연도)에 배정된 각 금액을 소위원회에 재배정한다. 상 하원 세출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변경된 재배정내용을 즉시 양원본회의에 보고한다. 하원의 세출위원회는 이 조(a)항(3)(B)에 따라 소위원회에 세부배분(division)을 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하원 본회의에 보고한다.

(c) 규칙위반지적(point of order) - 세출위원회가 이 조 (a)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대한 배정을 받은 후에는, 이 조 (b)항에 의한 지배정(suballocation)을 할 때까지 동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을 부여하는 동 의원회 소관의 법안 공동결의안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를 하원 또는 상원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d) 계속되는 공동결의안 - 이 장 제304조에 언급된 예산공동결의안의 경우에 있어, 이 조 (a)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 및 동조(b)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정을 할 때에는 가장 최근에 합의된 예산공동결의안상의 수정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e) 배정의 변경(altercation of allocations) - 위원회가 이 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을 보고한 직후에는 언제든지 그 배정의 변경을 해당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배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해 이미 의결된 소관입법과 일치되어야 한다.

(f) 규칙위반지적(point of order)의 대상이 되는 입법

(1) 하원 - 의회가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을 의결한 후,

(A) 보고된 바에 따른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

(B) 그 수정안의 채택과 시행

(C) 또는 합동보고서에 있어 권고된 바에 따른 법안과 결의안의 시행
이 첫 번째 회계연도 또는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이

조 (a)항 및 (b)항에 따른)을 초과하게 되면, 매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는 법안 공동결의안 및 수정안과 이에 대한 합동보고서를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2) 상원 - 예산공동결의안이 채택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 공동결의안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를 상원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A) 세출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있어, 첫 번째 회계연도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지출(이 조(a)항에 규정된)이 배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B) 세출위원회의 경우, 신규예산지출권한 및 지출(이 조 (b)항에 규정된) 재배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g) 하원에 있어 세입세출균형원칙(pay-as-you-go)의 예외

(1) 총칙

(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f)항(1)호 및 4월15일 이후의 제 303조(a)항은 보고된 어떤 법안이나 공동결의안 수정안 또는 그 합동보고서에 적용될 수 없다(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가 가능).

- 만약 가장 최근에 합의된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하여, (i) 보고된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 (ii) 그 수정안의 채택 시행 (iii) 또는 합동보고서에 권고된 형태로 나타나는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이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 현재회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른 세입증가총액(심사대상 법안의 규정을 감안할 때 지출을 초과하는 세입증가분을 포함)이 적어도 공동결의안상의 총액이내인 경우

- 공동결의안상의 연방세입 총규모가 당해 결의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경우

- 세입액이 제301조(b)항(8)에 규정된 세입세출균형원칙(pay-as-you-go) 절차에 따라 증가되고, 이러한 증가세입이 당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에 적용되는 제311조(a)항은 어떤 법안이나 공동결의안 수정안 또는 그 합동보고서에 적용될 수 없다.(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가 가능).

- 만약 가장 최근에 합의된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때 회계연도에 대하여, (i) 보고된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 (ii) 그 수정안의 채택 또는 시행 (iii) 또는 합동보고서에 권고된 형태로 나타나는 법안 또는 결의안의 시행이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 현재 회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른 지출감소총액(심사 대상 법안의 규정을 감안할 때 세입감소를 초과하는 지출감소분을 포함)이 적어도 공동결의안상의 총액이내인 경우,
- 공동결의안상의 연방지출 총규모가 당해 결의안이 제시한 대로 감소될 수 있는 경우,

(2) 배정 수정(revised allocations)

(A) 의회가 이 조(a)항(1)(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f)항(1)에 따라 규칙위반지적 대상이 될 수 있었던(또는 (a)항(1)(B)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제311조(a)항의 규칙위반지적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하원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제302조(a)항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된 배정안과 수정된 기능별 규모 및 수정된 예산총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B) 이와 이 수정된 배정, 기능별 배분규모 및 예산총액은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가장 최근에 합의된 예산공동결의안상의 배정, 기능별 배분규모 및 예산총액으로서 심사되어야 한다.

제 I 장 하원 및 상원예산위원회의 설립

제101조 하원 예산위원회

(e) 예산위원회는 다음의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세출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 소속 위원 중 5인
- (2)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위원 중 5인

(3) 그 밖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 11인

(4) 다수당 원내 대표부 1인

(5) 소수당 원내 대표부 1인

1974년 이후 5회 연속된 회기 가운데 두 회기 이상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위원에 대한 선임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예산위원회

(a) 모든 예산공동결의안(1974년 의회예산법 3(a)(4)에서 규정) 및 여타 사안들은 1974년 의회예산법 제Ⅲ편 및 제Ⅳ편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1) 1974년 의회예산법 제Ⅲ편 및 제Ⅳ편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의 보고

(2) 현행 법률과 법률안의 예산지출(budget outlays) 영향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연구 결과의 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3)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요청 및 평가, 조세지출, 정책, 계획의 예산지출과의 조정 방법에 관한 제안 및 그 연구 결과의 하원에 대한 주기적 보고

(4) 의회예산처의 기능 및 책무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

제303조(예산공동결의안은 예상관련입법의 심사전에 채택)

(a) 총칙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이 합의될 때까지, 하원의 경우는 그 결의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 대하여, 상원의 경우는 그 결의안이 적용되는 모든 회계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세출승인 법안 공동결의안 수정안 또는 동의안 및 이들에 대한 합동보고서를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1)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의 최초 규정

(2) 해당 회계연도기간의 세입증감의 최초 규정

(3) 해당 회계연도기간에 부담하게 될 국가채무의 한도 증가 또는 감소의 규정

- (4)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의무적 지출권한(new entitlement authority)의 규정(상원에만 적용)
- (5)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의 증감을 최초로 규정(상원에만 적용)

(b) 하원의 예외 - 하원에 있어 이 조 (a)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A) 보고된 바와 같이 예산연도후인 첫 번째 회계연도 또는 두 번째 회계연도에 최초로 적용되는 선행적인 재량지출을 위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
 - (B)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다음회계연도에 최초로 세입의 증감을 가져오는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
- (2) 5월 15일 후의 모든 일반적인 세출승인법안 또는 그 수정안
- (3) 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은 모든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

(c) 상원에서의 세출안건의 적용

- (1) 총칙 -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이 합의되고 제302조(a)항에 따라 상원 세출위원회에 동 회계연도에 대한 배정이 행해질 때까지는, 상원은 동 회계연도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안·공동결의안, 이에 대한 수정안 또는 동의안 및 관련 합동보고서를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제304조(예산공동결의안의 수정)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이 제301조에 따라 합의된 후 및 동 회계연도 종료전 어느 때나, 상·하원은 가장 최근에 합의한 동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을 개정 또는 재확인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제305조(예산공동결의안의 심사와 관련된 조항)

(a) 위원회 보고후의 하원 절차: 토론

- (1) 예산공동결의안이 하원예산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고 하원의 적절한 의안목록에 올라가면, 하원규칙 제9조 2(1)(6)에 따라 그 후에는 어느 때나 동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동의안은 토론이나 수

정안의 제안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의안의 가부여부에 관한 투표를 재심의 하기 위한 동의도 상정할 수 없다.

(2) 하원에서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10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이 시간은 다수당과 소수당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추가 토론시간은 이 조 (a)항(3)에서와 같이 4시간이다. 토론을 제한하는 동의안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동결의안을 위원회에 재회부(recommit)하기 위한 동의안은 상정할 수 없고, 공동결의안의 가부 결정에 관한 투표를 재심의하기 위한 동의도 상정될 수 없다.

(3) 하원 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소수당의원에게 의한 1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모두발언이 있는 직후, 경제목표와 경제정책에 대한 4시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4) 하원 예산위원회가 보고한 결의안상에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편 추계 금액 및 규모(301조(a) 항에 규정된)에 대한 경제목표(1946년 완전고용법의 제3조(a)(2) 및 (4)(b)에 규정에 따른)를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그 경제목표와 관련이 있는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안은 제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추계 금액 및 규모의 변경을 제안할 때에만 상정될 수 있다.

(5) 하원에서의 예산공동결의안의 심사는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동 결의안의 수정안은 하원규칙 제23항의 적정 조항에 따라 5분 규칙아래 심사된다. 전원위원회가 하원본회의에 그 결의안을 부의한 후에는, 동의안의 제기여부에 상관없이 결의안과 그 수정안의 순서대로 최종통과(final passage)를 하기위하여, 선결문제동의안(previous question)이 심사된다.

다만, 계수일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는 경우, 법 규정이나 어떤 규칙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상의 수치의 변경 위한 수정안(또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상의 수치의 변경을 위한 수정안(또는 일련의 수정안들)은 최종통과전 어느 때나 상정될 수 있다.

(6)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합동보고서와 관련된 하원에서의 토론은 5시간으로 한정되며, 그 시간은 다수당과 소수당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러한 토론을 제한하기 위한 동의안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합동보고서를 재심하기 위한 동의안은 상정될 수 없고, 합동보고서의 가부여부에 관한 투표를 재심의하기 위한 동의도 상정될 수 없다.

(7) 예산공동결의안과 관련하여 의사철자에 대한 하원규칙의 적용과 관련되는 하원의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토론없이 의결된다.

(b) 위원회 보고후의 상원의 절차: 토론 수정안

(1) 상원의 경우 예산공동결의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 및 관련 동의안과 이의에 대한 토론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제304조(a)항에 따라 회부된 공동결의안에 대한 토론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토론시간은 다수당 리더와 소수당 리더 또는 그 지명인간에 동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2) 예산공동결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토론대상 동의안 및 이의에 대한 토론은 1시간으로 제한되며, 그 토론시간은 제안자와 의안처리간사(manager)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다만, 결의안의 의안처리간사가 수정안 동의안 또는 이의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를 위한 시간은 소수당 리더나 그 지명인에 의하여 관리된다. 공동결의안의 조항들과 관련 없는 수정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공동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사항을 주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정안, 토론 가능한 동의안 또는 이의의 심의에 있어 상원의원에게 추가 토론시간을 줄 수 있다.

(3) 상원예산위원회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원에 의한 1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목표와 경제정책에 대한 4시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4)이 법의 다른 제한에 덧붙여, 상원 예산위원회가 보고한 결의안(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만들어진추계 금액 및1조(a)항에 규정된)에 대한 경제 목표 (1946년 완전고용법 의 제3조(a)(2) 및 (4)(b)에 규정에 따른)를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경제목표와 관련이 있는 수정안이 제안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안은 제시하는 목표에 불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추계 총액 및 규모의 변경을 제안할 때에만 상정될 수 있다.

(5) 토론을 제한하기 위한 동의안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회부를 위한 동의안(상원 휴회일을 제외한 3일을 초과하지 않는날의 범위안에서 합동보고서를 다시 보고하는 동의안을 재회부하는 것은 제외)은 심사될 수 없다.

(6) 어떤 규칙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들이 동 결의안상에 수치의 변경, 즉 수치일치 또는 그러한 일치의 지속을 위하여 제안된 경우에는 항상 심사될 수 있다.

(c) 상원의 합동보고서 의결

(1) 같은 효과를 지닌 동의안이 부결되었을지라도, 예산공동결의안(또는 조정법안 또는 결의안)에 대한 합동보고서 심사를 위한 동의안이 제안될 수 있다.

(2) 상원에서 예산공동결의안에 대한 합동보고서(또는 상 하원간의 의견서)를 심사하는 동안에는, 불일치하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이들 수정안과 관련이 있는 토론대상 동의안과 이의에 대한 토론은 10시간으로 한정되고, 그 시간은 다수당 및 소수당 지도자들이나 그 지명인들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합동보고서와 관련된 토론대상 동의안 또는 이의에 대한 토론은 1시간으로 제한되고, 그 시간은 합동보고서(또는 상 하원의 의견서)의 제안자와 의안처리간사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3) 합동보고서가 폐기되면, 새로운 합동보고서의 요구를 위한 토론과 조정자 임명을 1시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은 합동보고서의 의안처리간사 및 소수당 지도자나 그 임명인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합동보고서의 의안처리간사가 그 동의안, 이의 또는 수정안에 찬성하면, 그 반대를 위한 시간은 소수당 지도자나 그 지명인들에게 부여된다.

(4)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토론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고 그 시간은 합동보고서의 의안처리간사와 소수당 지도자 또는 그 지명인간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관리된다. 수정안의 조항과 관련이 없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d) 상원에서 공동결의안의 계수 일치

(1) 상원에서는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예산공동결의안과

(2) 합동보고서에서 권고한 것과 달리 규정하여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예산공동결의안의 동의에 대한 투표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제306조(예산위원회에 의한 예산관련입법의 심사)

상 하원예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법안과 결의안 및 이에 대한 수정안이 동 위원회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으면(또는 폐기된 것으로 심사되지 않으면), 동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 법안 결의안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는 해당하는 양원의 본회의에서 심사될 수 없다.

제307조(모든 세출승인법안에 대한 하원 위원회의 심사는 6월 10일까지 완료)

매년 6월10일까지 하원 세출위원회는 당해 소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는 그 해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다음회계연도)에 관한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연차세출승인법안을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제308조(의회의 예산의결에 있어 보고서 요약서 및 계획서)

(a) 신규예산지출권한이나 세입 또는 조세지출의 증감을 규정하는 입법에 대한 보고서

(1) 상 하원의 위원회가 신규예산지출권한(잠정 세출승인이 아닌)을 규정하거나 1회계연도 또는 여러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 및 조세지출의 증감을 규정하는 법안 공동결의안 및 그에 대한 수정안(이하 “법안 등”이라 한다)을 본회의에 보고할 때마다,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에 부대하는 심사보고서에는 의회예산처장과 협의를 거쳐 준비된 설명서(statement)가 첨부된다. 해당 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가결된 위원회수정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유용한 설명서를 작성한다.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이러한 법안 등에 따른 규모와 가장 최근에 합의된 1회계연도 (또는 여러 회계연도)의 예산공동결의안에 첨부하여 제 302조(b)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상의 적정 배정규모와의 비교내용

(B) 심사보고서가 제출되기전, CBO의 전망서(projection)를 적시에 제출받은 경우, 이러한 법안 등이 1회계연도(또는 여러회계연도) 및 향후 4회계연도 각각에 현행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신규예산지출권한 예산지출 세입 및 조세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

(C) 심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CBO의 추계서를 적시에 제출받은 경우, 이러한 법안 등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신규예산지출권한 규모에 대한 추계서 내용.

(2) 합동보고서가 상 하원에 제출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항(1)에 규정된 정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동 보고서에 첨부되는 의안처리간사(manager)의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불일치로 보고된 합동보고서 또는 수정안이 신규예산지출권한(잠정 세출승인과는 다른) 또는 1회계연도(또는 회계연도들)동안의 세입의 증감을 규정하는 경우

- 법안 또는 공동결의안의 기술적 불일치의 경우에 의안처리간사의 합동 설명서에 수록된 조정자가 제안한 수정안이 신규예산지출권한(잠정 세출승인과는 다른)을 규정하거나 또는 1회계연도(또는 회계연도)동안의 세입이 증감을 규정하는 경우

합동보고서가 제출될 때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지 못하면, 해당위원회는 동 보고서의 심사에 앞서 즉시 이용가능한 정보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의회 예산의결상황에 대한 최신 결과표(up-to-date tabulation)

(1) 의회예산처장은 예산공동결의안의 적용되는 각 회계연도에 있어,세입 또는 조세지출의 증감,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는 법안 및 공동결의안에 관한 의회결의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매월별로 상세한 결과표로 구성된 보고서를 발행하여 상 하원의 위원회에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신 결과표에 한정함이 없이 가장 최근에 채택된 예산공동결의안에 포함된 세출총액(the appropriate aggregate)과 기능별 규모(지출을 포함)를 의회나 상 하원에서 채택하거나 위원회가 보고하는 법안 및 공동결의안상의 규모와 비교하고, 적정 공동결의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의 규모와도 비교하여야 한다.

(2) 상 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스코어키퍼(scorekeeping)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A) 동 보고서들이 적어도 매월 제공되어야 하나, 의회의 예산심사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의원들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만큼 수시로 제공되어야 하여,

(B) 이 조 (b)(1)에 규정된 결과표의 요약(이것에 한정함에 없이)을 포함하여야 하고,

(C) 실질적 변경없이 이 조 (b)항(1)에 규정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하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c) 의회예산의결에 있어 5회계연도의 전망 -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대로 의회예산처장은 당해 회계연도 초기에 5회계연도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총 신규예산지출권한과 총 예산지출
- (2) 5 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세입징수액 및 그 주요 세입원,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흑자 또는 적자규모,
- (3)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조세지출
- (4) 5회계연도의 매 회계연도별 의무적 지출권한

제309조(일상적인 세출승인법안에 대한 하원승인) 미 하원이 그 해 10월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신규예산지출권한을 규정하는 연차세출승인법안(당해 세출위원회 각 소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을 승인할 때까지, 6월 한달동안에는 3일이상의 휴회를 규정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이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소속 소위원회의 권한상의 변동내용을 의장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10조(조정)

(a) 예산공동결의안에 조정지침을 포함 -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상의 조항 및 내용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공동결의안에 총액(tota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결의안상의 총액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의 법률, 법안 및 결의안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권한이 수정되어야 한다.

(A)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예산지출권한

(B) 이전 회계연도(prior fiscal years)에 최초적용을 규정한 예산지출권한

(C)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신용대출권한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수정사항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조정지침을 내려야 한다.

(2) 결의안상의 총액에 의하여 세입이 수정되도록 하고, 해당 소관위원회가 세입법, 세입법안, 생비결의안의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조정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결의안상의 총액에 의하여 국가채무의 법제한도가 수정되도록 하고, 해당 소관위원회가 그 수정을 위한 권고안을 내도록 조정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동결의안에는 (1)과(2) 및 (3)(적자감축 달성을 위한 조정지침을 포함)에서 표시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조정지침을 명시하여야 한다.

(b) 조정입법절차 -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대하여 법률, 법안, 또는 결의안의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을 명시한 공동결의안이 이 조 (a)항에 따라 채택되면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상 하원중 어느 1개 위원회에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이 내려지면, 해당 위원회는 즉시 이에 따르고, 권고안이 포함된 조정입법을 해당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상 하원의 1개 위원회이상에 수정을 의결하여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이 내려지면, 해당하는 각 위원회는 즉시 이에 따르고, 당해 예산 위원회에 조정지침을 수용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 하원 예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는 대로 실질적 변경없이 그 권고안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본회의에 조정입법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정에 따라, 이 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정결의안은 의안목록에 등록(enroll)되어 있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을 하원 또는 상원의 사무총장에게 분명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공동결의안이 된다.

(c) 조정지침에의 부응 간주

(1) 예산공동결의안에 따라 소관입법에 대하여 이 조 (a)항 (1) (2)에 의거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조정지침을 받은 하원 또는 상원의 위원회가 그 지침에 부응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i) 이 조 (a)항(1)에 따른 해당위원회 권고안상의 수정액이 공동결의안의 지침에 의한 수정액보다 다음의 비율이상을 초과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

(I) 상원의 경우, 이 조 (a)항 (1) (2)에 따라 지침을 받은 해당 위원회의 권고안 수정액 총액이 20%

(II) 하원의 경우, 이 조 (a)항 (1) (2)에 따라 지침을 받은 해당 위원회의 권고안의 절대치 수정액 총액이 20%

(ii) 이 조 (a)항(2)에 따른 해당위원회 권고안상의 수정액이 공동결의안의 지침에 의한 수정액보다 다음의 비율이상을 초과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

(I) 상원의 경우, 이 조 (a)항 (1) (2)에 따라 지침을 받은 해당 위원회의 수정액 총액이 20%

(II) 하원의 경우, 이 조 (a)항 (1) (2)에 따라 지침을 받은 해당 위원회의 권고안의 절대치 수정액 총액이 20%

(B) 만약 해당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정액 총액이 이 조 (a)항(1) (2)의 지침에 의거 당해위원회가 수정토록 하는 총액만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지침에 부응한 것으로 간주된다.

(2) (A) 이 조 (c)항의 조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위원회의 권고안이 상원 예산위원회에 보고되는 대로,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c)항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제302조(a)항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된 배정과 수정된 기능별 규모 및 수정 총액을 상원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B) 이 조 (c)항의 조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는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을 권고하는 합동보고서가 상원 본회의에 제출되는 대로,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c)항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제302조(a)항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된 배정과 수정된 기능별 규모 및 수정 총액을 상원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C) 이 조 (c)항(2)에 따라 수정된 배정의 제출이 있는 직후, 보고하는 위원회는 이 조 (c)항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제302조(b)항에 따라 수정된 배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d) 조정법안 및 조정결의안에 대한 수정의 제한

(1) 하원의 경우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적어도 다른 특정한 예산지출에서 동일 규모의 감축을 가져오지 않거나 특정한 연방세입의 동일규모 증가 등을 가져오지 않거나 양자의 증감합계가 상계(여러

회계연도 동안에 걸쳐)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정안은 이를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 동 수정안이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가장 최근에 합의된 예산공동결의안에 제시된 조정지침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대한)이 규정하고 있는 지출규모를 초과하여 특정 예산증가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동 수정안이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가장 최근에 합의된 예산공동결의안에 규정된 조정지침이 적용되는 회계연도 동안의)이 규정하고 있는 세입규모에 미달하여 다른 특정 연방세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만, 신규예산지출권한 또는 신규의무적지출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strike)하는 동의안은 상정할 수 있다.

(2) 상원의 경우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적어도 다른 특정한 예산지출에서 감축을 가져오지 않거나 특정 연방세입의 증대가 없고, 양자의 증감합계가 상쇄(여러 회계연도에 걸친)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정안의 경우에는 이를 상정하여 심사할 수 없다.

- 동 수정안이 조정결의안에 제시된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과 관련되는 조정지침에 규정된 지출절감규모 보다 적은 예산지출절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수정안이 조정법안 또는 조정결의안과 관련되는 지침에 규정된(여러 회계연도 동안에 걸친) 세입증가규모 보다 적은 연방세입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의회의 전쟁선언(개선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 조 (d)항 (1)호 (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안에 따라 이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지출 및 연방세입의 규모는 상원 또는 하원의 예산위원회가 작성한 추계서를

제 4 장 재정절차 개선을 위한 추가 규정

제401조(U.S.C. 제651조) 세출승인 대상 아닌 예산 관련 입법

(a) 세출승인 대상이 아닌 예산 관련 입법에 대한 통제

하원 또는 상원은 아래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 또는 합동결의안, 수정안, 동의안, 또는 합동보고서를 심사할 수 없다.

- (1) 연방정부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신규 권한
- (2) 연방정부가 상환책임을 지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신규 권한
- (3) 신규 신용권한

제402조 (의회예산처의 분석)

의회예산처장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하원 또는 상원의 위원회(세출위원회는 제외)에서 보고된 의원의 법안이나 결의안 각각을 위하여 준비하고, 이 위원회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그 법안이나 결의안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그것이 효력을 발하는 회계연도 및 후속 4회계연도 각각에 대한 추계 및 추계의 근거자료
- (2) (1)호의 비용추계와 그 위원회 또는 연방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가 가용하다면 비용추계의 비교
- (3) 그 법안이나 결의안에 포함된 연방재무약정 설정을 위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위원회에 추계, 비교, 설명이 시기 적절하게 제출되는 경우, 제출된 추계, 비교, 설명은 이 법안과 결의안에 첨부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02조 - 삭제 -

제404조 매년의회가 심의하지 않는 연방재무약정 형태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연구

회계감사원은 의무지출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을 연구하고, 의회에 이 조항이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재원조달 형태를 위한

권고사항을 18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는 수시로 수정된다.

제10장 지출거부의 통제

제A관 일반규정

제1001조(면책규정)

본 법이나 본 법의 수정법상 어떤 내용도

- (1) 의회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나 제한을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 (2) 그 당시 유효한 법률상 인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혹은 향후 대통령 기타 연방 공무원이 실행하거나 승인하는 집행정지를 추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 (3)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변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 (4) 예산권한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그에 따른 지출을 요구하는 법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B관 예산권한의 취소, 유보, 지출거부 제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

제1012조(예산권한의 취소)

(a) 특별교서의 제출

예산권한이 부여된 프로그램의 전체 목적이나 범위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러한 예산권한이 재정정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취소해야 하거나, 1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만 부여된 예산권한의 전부나 일부가 당해 회계연도를 위한 지출원인행위로부터 유보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마다, 대통령은 상·하 양원에 아래의 내용을 명시한 특별교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취소를 제안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유보되어야 할 예산권한 금액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그 예산권한이 부여된 정부의 모든 계정, 부처, 시설 및 관련된 구체적 프로젝트나 정부기능
- (3) 예산권한을 취소하거나 유보해야 할 사유
- (4) 제안된 취소나 유보에 대해 추정된 재정적, 경제적, 예산상 효과
- (5) 제안된 취소나 유보와 그 실행 결정에 관한 모든 사실, 상황, 고려사항과 예산권한이 부여된 목적, 의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취소나 유보를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추정된 효과

(b) 지출원인행위를 실행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이러한 특별소서에서 취소가 제안되거나 유보될 예산권한 금액은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사용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45일 이내에 취소가 제안되거나 유보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절차상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가용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를 제안할 수 없다.

III.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Public Law
No: 112–25 (08/02/2011) –

**SEC. 101. 재량지출의 한계 강제 (ENFORCING DISCRETIONARY SPENDING
LIMITS).**

(a) 집행. –

(1) 강제삭감. – 의회가 회기마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후 15일 이내에, 그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 어떠한 예산연도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삭감을 실행할 것이다.

(2) 예산불일치의 제거. – 그 범주 내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일적인 비율로 정해진 때에 그 계정에서 법정된 수준의 강제삭감예산 자원의 배수(multiplying)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큼 특정 범주에 속한 각각의 비면제 예산계정은 감액되어야 한다.

(3) 군 인원(Military Personnel). – 만일 대통령이 section 255(f) 아래에서 강제삭감으로부터 어떤 인원 계정을 면제하기 위한 권한을 사용하려면, 각각의 하위기능적 범주 051(section 255(f) 아래에서 규정된 권한이 행사되었던 그러한 군인원 계정 이외의)은 군 인원계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지출경비는 감액되지 않는 총 금액만큼을 상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범주 내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일적인 비율로 정해진 때에 그 계정에서 법정된 수준의 강제삭감예산 자원의 배수(multiplying)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큼 더 감액되어야 한다.

(4) 분할-연도 지출(PART-YEAR APPROPRIATIONS). – If, on the date specified in paragraph (1)에서 특정된 날짜에 만일 예산연도의 일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출을 하게하거나 만드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면, 그러면 paragraphs (2) and (3) 아래에서 계산된 강제삭감금액은 다음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

(A) 당해 계정 또는 그 당해 계정을 위한 후속 분할-연도 지출 계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법에 의해 가능한 해마다 정해진 금액과;

(5) 회고 검토(LOOK-BACK) - 6월 30일 이후에 진행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 지출이 책정 되어 해당 연도의 범주 내에서 불일치를 야기하는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해당 범주 내의 그 어떠한 강제삭감금액을 고려한 후), 차기 회계 연도의 해당 범주에 대한 재량지출 한도는 해당 위반 금액 또는 그 금액만큼 감소해야한다.

(6) 회기 내의 강제삭감 - 한 회계 연도의 예산지출이 책정 되어 (의회가 그 회계 연도의 7월 1일 전까지 해당 예산 연도의 회기 종료를 연기하는 한 후) 그 해의 범주 내에서 불일치를 야기하는 경우(해당 범주 내의 사전 강제삭감 금액을 고려한 후), 15일 후에는 (2) 항에서 (4)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범주 내에서 해당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삭감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7) 추정액 -

(A) 의회예산처 추정치 - 의회가 재량지출에 대한 조치를 완료 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의회예산처는 하원 예산 및 상원 예산위원회와 협의 한 후 OMB에 현재의 연도에 대한 새로운 재량 예산 권한 및 지출 및 예산 법령에 의해 제공된 예산 연도와 에 관한 추정 액수를 제공해야 한다.

(B) 관리예산처 추정치 및 차이점 설명 - 관리예산처는 그 어떤 재량지출법안의 제정일 이후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하원에 그 법안의 의회예산처 추정치, 해당 연도에 대한 새로운 재량예산 권한과 지출임의의 예산 한도 및 해당 연도에 대한 지출 및 예산 법령에 의해 제공된 예산 연도의 관리예산처 추정치와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의회예산처 추정치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관리예산처와 의회예산처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관리예산처가 판단하면, 관리예산처는 그 차이에 관한 하원 예산 및 상원 예산위원회와 협의해야하며 그러한 차이와 협의는,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위원회에 보고서 발간 전에 논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면에 의한 의견교환을 포함하여야 한다.

(C) 가정 사항 및 지침 - 본 항에 따른 관리예산처 추정치는 현 경제적 및 기술적 가정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한다. 관리예산처는 본 항에 의거하여 의회에 전달된 관리예산처 추정치를 사용해야한다. 관리예산처와 의회예산처는 하원 예산위원회와 상원, 의회예산처 및 관리예산처 간의 협의 후에 본 단락에 따라 세출규모점검(scorekeeping)기준에 따른 추정치를 작성해야한다.

(D) 연례 세출승인 -이 항의 목적 상, 연간 세출 예산에 의해 제공되는 금액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재량 세출 예산이 포함되어야하며, 만일 있다면, 예산 세액은 회계 연도 이전에 제정 된 법률로부터 결과한 그 입법안에 규정된 자금을 위한 계정을 위한 예산연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b) 재량세출 한도 조정.

(1) 개념 및 정의 - 대통령이 미국 법령 Title 31의 1105항에 의거하여 예산을 제출할 때, 관리예산처는 예산을 계산하고, 예산에는 예산 년 및 각 후속연도(outyear) 개념과 정의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재량세출한도 (누적 조정 한도)를 조정을 포함해야한다. 그러한 변경은 최신 개념 및 정의를 사용하여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의 기준선 수준에 일치하여야 하며, 그러한 변경 전에 적용된 개념 및 정의를 사용하는 수준을 뺀 것이다. 그러한 변경은 하원 예산과 하원 예산 및 상원 예산과의 협의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협의에는 그 위원회에 대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논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면상의 의견교환이 포함되어야한다.

(2) 강제삭감 보고 - 관리예산처가 회계 연도 254 (e), (f) 또는 (g)에 의거한 강제삭감 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이 제출 한 강제삭감 보고서와 격리 된 예산을 계산해야 하며, 미국 법령 Title 31의 1105

(a)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계 연도 및 각 후속 연도에 대한 재량세출 한도 (조정 된 한도)를 조정을 포함해야한다.

(A) 긴급 세출응급 처치; 해외 비상 작전 / 긴급테러에 관한 세계 전쟁 - 어떤 회계 연도에 대해, 재량계정에 대한 세출이 제정되면 -

(i) 의회는 회계 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비상사태 요건을 지명하고, 대통령은 이후에이를 지정한다.

(ii) 의회가 회계 기준에 의한 법령의 해외 비상 작전 / 테러와의 세계 전쟁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후속 적으로 지명 한 경우, 조정은 비상사태로 지정된 재량 계정 또는 해외 비상사태/테러와의 세계 전쟁에 대한 예산 배분의 합계를 포함한다.

(B) 장애 검토의 지속 및 재결정 - (i) 만일 사회보장법 타이틀 II 및 XVI 아래에서 계속되는 장애 검토를 위한 금액과 사회 보장법 Title XVI의 적격성 재결정 결정과 관련된 비용을 명시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세출 예산을 작성하는 법안이나 공동 결의안이 제정된 경우, 해당 회계 연도의 조정은 해당 회계 연도에 대한 해당 비용에 대해 해당 법에 규정 된 추가 신규 예산 권한이 되지만,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생략)

(C) 의료보호 사기 및 남용 통제 (i) 보건 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75-8433--0--7-571)의 의료보호 사기 남용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법안이나 공동 결의안이 제정되면 그 회계 연도에 대한 조정은 그 회계 연도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법에 규정 된 새로운 예산 권한의 금액이 되지만,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생략)

(D) 재해 기금.--

(i) 2012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 연도까지, 의회가 법령의 재난 구호로 지정한 재량계정에 대한 세출이 제정되면, 회계연도에 대한 조정은 재량계정에서 회계연도에 대한 재난구조를 위한

것으로 지정된 세출의 합계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전체규모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I) 가장 높은 해와 가장 낮은 해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재난 구호를 위해 제공된 평균 자금; 그리고

(II) 이전 회계연도의 재난 구호로 지정된 제정된 새로운 재량 예산 권한이 해당 회계 연도의 하위 절 (I)에서 계산된 평균치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으로, 제정된 금액과 해당 회계 연도의 해당 하위 절에서 계산된 허용 조정 사이의 금액..

(ii) OMB는 2011년 예산통제법 제정 일 이후 30 일 이내에 각 (i) (II)에 따라 계산된 평균액을 각 원의 세출예산위원회(Committees on Appropriations and Budget)에 보고해야 한다.

(iii) 이 호의 목적을 위해 “재난 구호”라는 용어는 Robert T. Stafford 재해구호 및 응급지원법 (42 USC 5122 (2))의 102 (2)항에 의거하여 수행된 활동을 의미한다.

(iv) 한 회계연도의 이 호에 따른 재해 구호로 간주되는 세출은 회계 연도에 대한 (A)호에 의거한 조정을 받지 아니한다.

(c) 재량권한 지출액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재량 지출 한도'는 다음을 의미 한다;

(1) 2012 회계연도에 대해 -

(A) 안보 부문, 684,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그리고

(B) 비안보 부문의 경우 359,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2) 2013 회계연도에 대해 -

(A) 안보 부문, 68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그리고

(B) 비안보 부문의 경우 361,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3) 2014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06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4) 2015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08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5) 2016 회계 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07,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6) 2017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31,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7) 2018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56,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8) 2019 회계연도에 대해, 재량 범주의 경우, 1,182,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 (9) 2020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재량 범주의 경우, 1,208,000,000,000 달러를, 그리고 (10) 2021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재량 범주에 대해 제 (b) 항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1,234,000,000,000 달러의 새로운 예산 권한;

Sec. 102. 정의.

1985년의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의 250 (c)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 된다 :

- (1) (4)를 삭제하고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삽입 한다:

“(4) (A) ‘비안보 범주’라는 용어는 (B)에 정의 된 안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재량세출을 의미한다.

(B) “안보 범주”라는 용어는 국방부, 국토 안보부, 재향 군인 문제 담당 부서, 국가 핵 안전국, 정보 공동체 관리 계정에 대한 기관 예산과 관련된 재량 세출을 포함하며(95--0401--0-1-1-054), 예산 기능 150(국제 업무)의 모든 예산 계정을 말한다.

(C) ‘재량 범주’라는 용어는 모든 재량적 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 (2) 단락 (8) (C)에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삽입한다.

- (3) (14)항을 삭제하고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삽입 한다:

“(14) ‘후속연도’는 용어는 예산연도 이후 1 년 또는 그 이상의 회계 연도를 의미한다.”

(4) 마지막에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추가 한다:

“(20) “비상 사태”라는 용어는

(A) 생명 또는 재산의 손실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예방 또는 완화 또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 (또는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이로부터의 지출)이 요구한다; 그리고

(B)는 ‘예상치 못함’이다.”

“(21) “예상치 못한”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인 상황이 -

(A) 갑자기, 곧 급작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다.

(B) 긴급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요구를 의미한다.

(C) 예상치 못한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D) 임시적인, 영구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Sec. 103. 보고와 명령.

1985 년 균형 예산 및 비상 적자 통제법의 254 절이 다음과 같이 수정 된다 :

(1) (c) (2)항에서 “2002”를 삭제하고 “2021”을 삽입 한다.

(2) (e)항의 끝 부분에 “이 보고서에는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재난 자금 조정에 대한 사전검토가 포함될 것이다.”를 삽입 한다.

(3) (f) (2) (A)에서 “2002”를 삭제하고 “2021”을 삽입한다. 마지막 기간 앞 부분에 ‘재해 자금 조달을 위한 조정의 최종 추정치를 포함하여’를 삽입한다.

Sec. 105. 1974 년 의회의 예산 및 투입 통제에 대한 개정.

(a) 조정.- 1974년 의회예산법 31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a)의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

(a) 조정 - 세출안 또는 공동 결의안보고 후 또는 그 개정안에 대한 제안 또는 회의 보고서의 제출시 하원 예산위원회 또는 상원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예산 권한 및 그로부터 나오는 지출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1985년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의 251 (b)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2) (b)와 (e)를 삭제하고 (c)와 (d) 항을 각각 (b)와 (c) 항으로 재지정한다.

(3) 끝에 다음 새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d) 하원에서의 긴급적자 등.- (1) 하원에서 보고된 세출안 또는 공동 결의안이나 이에 대한 수정안 또는 회의 보고서에 1985년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 251 (b) (2) (A)에 따라 긴급요구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감소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1974년 의회예산법의 Title III 및 Title IV 및 하원의 규칙을 위한 조항의 예산 효과를 계상하지 않는다.

(2)(A) 하원에서 보고된 세출안 또는 공동 결의안 또는 이에 대한 수정안 또는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예산 권한 및 지출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감소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으로 이 조항의 타이틀 제4항 및 하원 규칙에 대한 예산 조항의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B) 하원에서 (A) 호에 따라 지정을 파기하겠다는 제안은 이 타이틀과 제4조 및 하원 규칙의 목적상 예산 효과 평가에서 제외되어야한다.

(C) (B)호에 따라 개정 된 개정안은 보류 조치에 의해 충당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된 각 금액을 충당하거나 달리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계류 중인 수단의 독회에서 순서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e) 불필요한 지출 한도의 집행 - 하원이나 상원에서 제시된 임의 지출 한도를 초래하는 법안, 공동 결의안, 수정안, 동의서 또는 회의 보고서를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의 251항을 초과 할 것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고려하지 않아야한다.

(b) 정의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 제3절은 다음의 새로운 단락을 끝에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11) ‘긴급상황’과 ‘예상치 못한’이라는 용어는 1985 년 균형 예산 및 긴급적 자통제법의 250 (c) 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c) 재량한도에 대한 이의절차..- 1974년 의회예산법의 904 (c) (2)절은 “및 312 (c)”를 삭제하고 “312 (c), 314 (e)”를 삽입하여 개정된다.

Sec. 106. 세입 예산 집행.

(a) 총칙 .-

(1) 1974년 의회예산법을 2012년 4월 15일까지 시행 할 목적으로, 그 법의 제 300 항을 포함하여, 예산에 대한 사전 합의의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당, 집계 및 수준 (b)(1)항은 2011회계연도 및 2013년 -2021년 의 적절한 예산 수준을 갖춘 2012 회계 연도 예산의 동시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원에서 적용된다.

(2) 2012년 4월 15일 이후 1974년 의회예산법을 시행 할 목적으로, 해당 법의 항 300을 포함하여 예산에 대한 사전합의에서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당, 집계 및 수준을 포함한다.

(b) (2) 항에 설정된 예산은 2012회계연도 및 2014년에서 2022회계연도의 적절한 예산 수준을 갖춘 2013회계연도 예산의 동시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원에서 적용된다.

(b) 위원회 할당, 총계 및 수준 .-

(1) 예산위원회의 의장은 이 조의 제정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세출위원회,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2항을 시행하기 위해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와 일치하는 2011년과 2012 회계연도의위원회 배정;

(B) 2011년, 2012년, 2012년, 2016년 및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 분담위원회 이외의 모든 위원회, 의회 예산 국의 2011년 3월 기준선과 1974년 의회예산 법의 302항을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과 이 법안 이전에 제정되었지만 의회 예산 국의 2011년 3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법

령의 예산 효과를 고려하여 조정됨.

(C) 2011년과 2012 회계연도의 총 지출수준과 2011년, 2012년, 2012년에서 2016년, 2016년에서 2021년까지의 총 수입 수준은 2011년 3월 의회예산처의 이 법안의 예산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기준선과 일치하며, 이 법안 이전에 제정되었지만 의회예산처의 2011년 3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 및 1974년 의회예산법의 31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회 보장 세입 및 지출 수준 (D)이 법안과 이 법안이 제정 한 법안의 예산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정된 2011년 3월 의회예산 이 법에 규정되었으나 1974년 의회 예산법의 302항과 311 항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 예산 처의 2011년 3월 기준선에 포함되지 않은 것.

(2)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까지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A) 세출위원회,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2항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와 일치하는 2012년 및 2013년 회계연도 할당액;

(B) 의회 예산 이외의 모든 위원회 (2012년, 2013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원회 예산에 대한 의회예산 제302항을 시행하기 위한 2012년 3월 기본예산 1974년 법;

(C) 2012년, 2013 회계 연도의 총 지출 수준 및 2012년, 2013년, 2013년-2017년 및 2013-2022 회계 연도의 총수입 수준을 합산하여 2012년 3월 의회예산처의 기준 및 이 법에 명시된 재량 지출 한도 1974년 의회예산법의 31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그리고 의회예산법의 302항과 311항을 시행하기 위한 2012년 3월 의회예산 예산과 일치하는 2012년과 2013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22 회계 연도의 사회 보장 수입 및 지출 수준

(D) 2012년과 2013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22 회계연도의 사회보장수입 및 지출 수준은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2항과 311항을 시행하

기 위한 의회예산처의 2012년 3 월 기준예산과 일치

(c) 상원의 paygo 예산점검표(Scorecard).-

(1) S. Con. 201 항을 시행 할 목적으로 본 항의 제정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s. 21 (제110회 의회)에서 예산 상원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회계 연도의 직접 지출 및 수입의 잔액을 0으로 줄여야한다.

(2) 2012년 4월 15일까지, S. Con의 20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Res. 21(제 110 차 회기)에서 예산 상원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회계 연도의 직접 지출 및 수입의 잔액을 0으로 줄여야한다.

(3) (2) 항에 따라 상원의 paygo 예산점검표를 재설정하면, 의장은 의회 기록에 그러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공표해야한다.

(d) 추가 조정 .-

(1)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의거 한 임의 재량 지출 한도에 대한 후속 조정을 설명하기 위해이 조에 따라 설정된 배정, 집계 또는 수준을 수정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 의거 한 할당, 집계 또는 레벨 설정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S. Con.의 섹션 412 ~ 414. Res. 13 (제111차 회기)는 효력을 유지한다.

(e) 기한종료.-

(1) (a) (1), (b) (1) 및 (c) (1)은 2012 회계연도 예산의 동시 결정이 상원과 하원에 의해 합의 된 경우 1974년 의회예산법 301조에 따라 만료된다.

(2) (a) (2), (b) (2) 및 (c) (2)는 2013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동시 결정이 상원과 하원에 의해 합의 된 경우 1974년 의회예산법의 301 조에 따라 만료된다.

Sec. 202. 다른 원에 의한 고려.

(a) 각원의 고려 -

(1) 참조. - 상원으로부터 201항에 기술된 공동 결의안을 하원이 받는 경우, 그러한 공동 결의안은 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한다. 위원회가 5일의

입법일 이내에 공동 결의안을 보고하지 못하면, 하원이 위원회를 해체하여 공동 결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옮겨야한다. 하원이 공동 결의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그러한 동의를 성립되지 않아야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상대방이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0분의 논쟁을 제외하고는 개입 없이 명령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그러한 동의를 채택되면, 하원은 즉시 (3)항에 따라 공동 결의안을 검토하여야한다. 동의를 폐기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2) 고려 사항의 진행 - 공동 결의안이 적절한 의사진행일정에 회부되거나 위원회가 그것의 대안으로부터 (청구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면제된 후에, 다음의 공동 결의안을 검토하기로 청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원이 공동 결의와 관련하여 진행할 동의를 처리 한 후에는 그러한 동의를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전 질문은 개입 동의 없이 그 채택 동의 명령에 따라 고려되어야한다. 동의를 폐기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3) 고려 사항 - 공동 해결책은 회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 결의안에 대한 모든 주문 지점과 그 고려 사항은 면제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반대자가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시간의 토론과 공동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1회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개입 없이 공동 통과 결의로 명령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공동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b) 상원의 결정 사항 - (1) 상원이 하원에서 201조에 기술된 공동 결의안을 받는 경우, 그러한 공동 결의안은 상원의 적절한위원회에 회부되어야한다. 그러한 위원회가 상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5회 회의가 끝날 때 공동 결의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결의안은 합동 결의안을 심의 할 때 자동으로 면제되며 적절한 의사진행일정에 배치되어야한다.

(2) 공동 결의 및 이에 대한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와 항소에 대한 고려는 20시간을 넘지 않아야하며, 과반수와 소수파 지도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 토론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른 청구안에 대한 개정안이

나 연기 명령, 또는 다른 청구에 대한 검토 진행 동의나 공동 해결책을 재개하기 위한 동의는 순서에 있지 않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 또는 이의 제기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의 제기자와 동의 또는 이의 제기에 반대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나누어 질 수 있다. 정족수 청빙 및 투표에 사용 된 시간을 포함하여 공동 결의안의 심의를 위해 사용 된 모든 시간은 총 20시간 동안 고려되어야 한다.

(3) 상원이 공동 결의안을 진행하기로 투표 한 경우, 공동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공동 결의안이 보고되거나 회피 된 이후 또는 결론 직후에 7차 회의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취해 져야 한다. 공동 결의안을 심의하고, 상원의 규칙에 따라 요청한 경우 토론의 결론에 단일 정족수가 요청된다.

301조 부채상한 불승인 절차

- (a) 총칙. - 미국 법전 Title 31의 부제 III의 31 장 1 부 조항은 개정됨 - (3101A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을 삭제하거나 삽입함으로써 (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 (2) 섹션 3101 이후에 다음을 삽입한다.

§3101A. 부채 한도 조정

(a) 총칙 .-

(1) 900 억 달러 .-

(A) 인증 -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서면 인증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제 3101 조 (b) 항의 한도 초과분이 한도의 \$ 100,000,000,000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는 것과 재무부 장관은 기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필요하며, 본 항에 따라 제정 된 비승인 공동 결의안의 제정에 따라 추가로 900,000,000,000 달러를 차입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증을 제출하면, 섹션 3101 (b) ('부채 한도'로 언급)에 제공된 부채 한도가 \$ 400,000,000,000만큼 증가합니다.

(B) 분쟁 해결 - 의회는 (b)에서 (f) 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A)에 의거 하여 당국의 비승인 결정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하여 고려 된

불승인의 공동 해결은 (b) (2) 항에 제공된 언어만을 포함해야한다. 본 항에 의거 한 불승인 결의안 제정 없이 불승인 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 부채 한도가 추가로 \$ 500,000,000,000 증가합니다.

(2) 추가 금액 .-

(A) 인증 - 제 (1) 항에 의거하여 부채 한도가 \$ 900,000,000,000만큼 증가한 경우, 회장은 제한 대상 부채가 제 한도의 \$ 100,000,000,000 이내 임을 의회에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 3101 (b)에 의거하여 차용을 요구하고 기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요구되는 경우 재무부 장관은 본 항에 의거하여 제정 된 반대 의사 결정을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차용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i) 조항 (ii) 또는 (iii)이 적용되지 않는 한 1,200,000,000,000 달러.

(ii) 미국의 기록원이 미국 헌법에 대한 균형 예산 수정안을 제안하는 공동 결의안에 따라 미국 헌법 수정안을 비준하기 위해 미국에 제출 한 경우 1 조 5 천억 달러. 국가 ' ; 또는

(iii) 2011 년 예산 통제법의 401 (b) (3) (B) (i) (II) 조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적자 감축액이 1,20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공동 위원회 의안이 제정되면, (ii)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적자 감축액과 동일한 액수이지만 \$ 1,500,000,000,000보다 크지 않은 액수.

(B) 분쟁 해결 - 의회는 (b)에서 (f) 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A)에 의거하여 당국의 비승인 결정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하여 고려 된 불승인의 공동 해결은 (b) (2) 항에 제공된 언어만을 포함해야한다. 본 항에 의거 한 불승인 결의안을 제정하지 않은 채 비 승인 시간이 소멸 되면 부채 한도가 (A) 호에 의거하여 승인 된 금액만큼 증가한다.

(b) 불합리한 분쟁 해결 .-

(1) 총칙 - (a) (1) (A)에 규정 된 빚 한도액이 400,000,000,000 달러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날에 50 일 이내에 의회는 인증을 받는다.

(a) (1) 항 또는 (a) (2) 항에 기술된 인증을 의회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의회의 회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추가 금액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청구를 탄핵하는 공동 결의안이 법으로 제정된다.

(2) 공동 결의안 내용 -이 조의 목적 상, ‘공동 결의안’이라는 용어는 공동 결의안 -

2011 년 9 월 6 일, 7 일, 8 일 또는 9 일에 소개 된 (a) 항 (1) 항에 기술 된 인증에 대한 (A) (i) 또는 상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요일 상원이 개회 중임); 그리고 (ii) (a) (2) 항에 기술 된 인증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그 날짜 후 3 일 이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서문이 없는 “(B);

(C) 제목은 다음과 같이 해당 된다 : ‘미국 법전 Title 31의 3101A 항에 의거하여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 행사 거부에 관한 공동 결의안’(with United States Code, on IIIIII ' 그러한 제출 일을 포함 하는 공란); 그리고

(D) 결의안 이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총회 311 항 (a) 항에 의거 한 인증에 따라 행사 된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다. 상태 코드.’

(c) 대표자의 집에서의 진지한 관심사 .-

(1) 재결합 - (a) (2) 항에 설명 된 인증을 받으면 연사는 하원이 연기 될 경우 하원 의원에게 이 절에 따라 하원이 그러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소집한다.

(2)보고 및 퇴거. - 공동 결의안이 회부 된 하원의위원회는 수정안을 첨부 하지 않고 공동의 결의를 발표 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공동 결의안을 보고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결의안을 심의하여 퇴직하며 공동 결의안은 적절한 일정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3) 검토 진행 - 공동의 결의안이 공동의 결의안을 하원에 보고했거나 검토를 끝낸 후, 합동 결의안이 채택 된 후 6 일 이내에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a) 항에 의거하여 하원의 공동 결의안을 검토하기로 이동한다. 동의에 대한 모든 주문 지점은 포기됩니다. 하원이 특정 제출물을 다루는 공동 결의안을 진행할 동의를 처리 한 후에는 그러한 동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다. 이전 질문은 개입 동의 없이 그 채택 동의 명령에 따라 고려되어야한다. 그 동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한다. 동의가 폐기 된 투표를 재검토 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4) 고려 사항 - 공동 결의안은 읽은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 결의안에 대한 모든 주문 지점과 그 고려 사항은 면제됩니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상대방이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 시간의 토론을 제외하고는 개입 없이 공동 통과 결의안에 따라 순서대로 고려되어야한다. 공동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d) 상원의 절차 진행 .-

(1) 재결 - (a) (2) 항에 의거 한 인증을 받으면, 상원 의원이 2 일 이상 휴회 또는 휴회 한 경우 상원의 소수 지도자와 협의 한 후 상원의 다수 지도자 ,이 조에 따라, 상원은 그러한 메시지를 접수 한 후 2일째 날까지 소집해야한다고 상원의 구성원에게 통고해야한다.

(2) 일정표 배치 .- 상원에 소개가 있을 때, 공동 결의안은 즉시 의사진행 일정에 올려 져야한다.

(3) 원내토의 고려 사항 .-

(A) 총칙 - 상원의 상임 규칙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a)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기간 중 언제든지 주문이 이루어지며 (a)(1)항에 기술 된 인증은 2011년 9월 14일에 끝나고, (a)(2)항에 기술 된 인증은 의회가 하위 항목) (이전의 동일한 효과에 대한 동의가 동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결의안을 검토하기로 이동하고 결의안 (및 결의안의 검토 반대)에 대한 모든 명령은 면제된다. 진행할 동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구는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의여부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결의안의 심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공동 결의안은 처분 될 때까지 미완성 사업으로 남는다.

(B) 고려 사항 - 공동 결의안과 그와 관련한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와 항소에 대한 고려는 10 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하며, 대다수와 소수와 지도자 또는 그의 피지명자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 토

론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개정안이나 연기 명령, 또는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 진행 동의 나 공동 해결책을 재개하기 위한 동의는 순서에 있지 않다.

(C) 통과 투표 - 상원이 공동 결의안을 진행하기로 투표 한 경우,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결의안의 심의가 끝난 직후에 이루어져야하며 결의안에 단일 정족수 요청 상원의 규칙에 따라 요청 될 경우 토론의

(D) 절차안에 대한 의석의 결정 - 경우에 따라 상원의 규칙 적용과 관련한 의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공동의 결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논쟁 없이 결정되어야한다.

(e) 정당이 아닌 수정안 -이 조에 따라 고려 된 비 승인의 공동 결정은 하원 또는 상원 중 어느 한쪽의 수정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f) 다른 원의 청구에 의한 조정-

(1) 총칙. 공동 결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한 의원이 다른 결의안을 공동의 결의안을 수령하면,

(A) 다른 하원의 공동 결의안은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수령하는 다른 원에서의 절차는 다른 하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동의 결의안이 수령인의 공동 의결을 대신 할 때까지 통산 투표 때까지 다른 하원으로부터 공동의 해결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해야한다.

(2) 다른 원의 공동 결의안 처리 .-

상원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공동 결의안을 도입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하원의 공동 결의안은 본 항에 의거 한 신속한 발의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다.

(3) 동반자 대책의 처리 - 만일 상원에서 공동 결의안이 통과 된 후,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동반자 조치를 받으면 동반 조치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4) 통과 후의 고려 사항 - (A) 의회가 공동의 결의안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서명 한 날짜를 종료 한 날부터 시

작되는 기간은 (b)(1)항에 설명 된 적절한 의사진행상의 일정을 계산할 때 공동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이나 거부권 (그러나 어느 한쪽의 하원이 회기가 아닌 날 제외)은 무시되어야한다.

(B) 이 조항에 따라 상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토론은 대다수 리더와 소수파 리더 또는 그들의 지명 된 사람들 간에 똑같이 1 시간으로 나누어 져야한다.

(5) 거부권의 압도(VETO OVERRIDE) .- (b) (1) 항에 설명 된 적절한 달력 일 내에, 의회는 (1) 항 또는 (2) 항에 따라 행사 된 권한에 관한 거부 결정을 무시 한다 (a)항 (1)호 (A)에 규정 된 한도의 400,000,000,000 달러 증가를 제외하고는 제 3101조(b)항에 규정 된 채무 한도가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

(6) 서열 - (A)(b)(1)항에 설명 된 50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하면, 대통령은 결의안이 그의 서명 또는 의회 없이는 법률이 되도록 허용한다. (a)항에 따라 행사 된 권한과 관련하여 공동 결의안의 거부권을 대체 할 경우 지출을 400,000,000,000 달러 줄이기 위한 고립 조치가 있어야한다. 관리예산처는 즉시 강제삭감을 실행해야한다.

(B) 관리예산처는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 통제법의 섹션 253의 섹션 255, 섹션 256, 하위 섹션 (c), (d), (e) 및 (f)에 따라 그러한 강제삭감액의 각 절반을 구현해야한다. 그러한 이행을 목적으로 '초과 적자'는 (A) 호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g) 하원과 상원의 의사규칙 -이 하위 항목과 하위 절 (b), (c), (d), (e) 및 (f) (단락 (6)

(1) 상원과 하원의 제재 권한 행사로서 각 하원의 규칙의 일부로 간주 되나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그 공동의 결의안의 경우 그 하원에서, 그리고 그것은 다른 규칙들보다 우선하며, 그러한 규칙들과 모순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언제든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하원의 절차에 관한 한) 하원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2) 그 원의 다른 규칙 "에 따른다.

(b) 수정안 준수 - 미국 법전 Title 31의 31장에 대한 절 표는 3101 항에 관한 항목 뒤에 다음과 같은 새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 된다 :

3101A. 부채 한도의 대통령 수정.

Sec. 302. 예산 목표 집행.

(a) 총칙 -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은 제251조 뒤에 다음의 조항을 삽입한다. 다음 새 섹션 :

251A항 예산 목표 집행.

2012 년 1월 15일 예산통제법안 401(b)(3)(B)(i)(II)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적자 감축에 1,200,00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달성하는 공동위원회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 한, 제251조 (c)항에 열거 된 일방적 지출 한도를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재량 지출 및 직접 지출을 줄여야한다.

(1) 개정된 안보 범주와 비안보를 개정 함. (A) “개정 된 안보”라는 용어는 예산 기능 050에서의 재량 세출을 의미한다. (B) 개정 된 비안보 범주는 예산 기능 050 이외의 재량 세출을 의미한다.

(2) 개정 된 재량 지출 한도 - 제251 (c)절에 따라 2013년에서 2021년까지의 재량에 대한 지출 한도는 다음으로 대체되어야한다.

(A) 2013회계연도 -

(i) 안보 부문에서는, 546,000,000,000 달러의 예산권한; 과

(ii) 비안보 부문에서는, 501,000,000,000 달러의 예산권한.

(이하 생략)

(3) 총 결손 계산 - 관리예산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회계연도마다 이 절에서 요구하는 적자 감축량을 계산한다.

(A) \$ 1,200,000,000,000으로 시작;

(B) 예산 통제 제 401 (b) (3) (B) (i) (II)에 규정 된 바와 같이 공동위원회 법안의 제정에 의해 달성된 적자 감축액을 공제
2011년 법;

(C) 부채 서비스 계정에 대해 그 차이를 18 % 삭감; 그리고

(D) 결과를 9로 나눈다.

(4) 기능 할당 - 2013년 1월 2일, 2013 회계연도 및 2514 (c) 항에 따라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강제삭감 예측 보고서에서 국방 기능 및 기타 모든 기능 (비국방 기능)의 계정에 대한 절반에 해당하는 임의의 세출 및 직접 지출 계정에 대한 해당 연도의 문단 (3)까지에 따라 관리예산처는 계산 된 총 감축량의 절반을 할당한다.

(5) 방위 기능 감축-관리예산처는 다음과 같이 2013 년부터 2021 년까지의 방위비 지출에 대한 임의 예산 및 감축 지출에 대한 감축 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A) 재량지출-관리예산처는 재량지출감축을 다음에 의해 계산한다.

(i) 제 (4) 항에 따라 그 해에 할당 된 국방 기능에 대한 총 감축량을 취한다;

(ii) 해당 연도의 개정 된 안보 부문에 대한 재량 지출 한도를 곱한다; 그리고

(iii) 안보 범주에 대한 재량 지출 한도와 해당 연도의 국방 기능 내 직접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예산처의 기본 지출 추정치를 기준으로 나눈다.

(B) 직접 지출 - 관리예산처는 단락 (4)에 따라 그 해에 요구되는 국방 기능의 총 감축량을 감안하고 (A)에 따라 계산 된 임의 감축량을 차감하여 직접 지출 감축량을 계산해야한다.

(6) 비국방 기능 감축.-관리예산처는 다음과 같이 비 국방 기능의 프로그램에 대해 2013년에서 2021년까지의 각 재량 지출에 대한 지출을 임의 배당으로 계산하고 지출을 지시해야합니다.

(A) 재량지출.-관리예산처는 재량지출감축을 다음에 의해 계산한다.

(i) 단락 (4)에 따라 그 해에 할당 된 비 국방 기능에 대한 총 감축량을 취한다;

(ii) 해당 연도의 수정 된 비안보 범주에 대한 재량 지출 한도를 곱한다; 그리고

(iii) 수정 된 비안보 범주에 대한 재량지출 한도와 해당 연도의 비 국방 기능에 대한 직접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예산처의 기본 지출 추정치를 나누어서 계산한다.

(B) 직접 지출 - 관리예산처는 (4) 항에 따라 그 해에 요구되는 비 국방 기능에 대한 총 감축량을 감안하고 (A)에 따라 계산 된 재량 감축량을 차감하여 직접 지출 프로그램 축소를 계산해야한다.

(7) 재량감축의 식재(Implementing Discretionary Reductions).-

(A) 2013 회계연도 - 2013년 1월 2일에 관리예산처가 계산하고 253(f)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은 계정을 안보 범주 또는 비안보 범주 내에서 해당 시간에 해당 계정의 예산 자원 수준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 된 달러 금액으로 계산하여 효과적인 강제삭감을 명령해야한다.

(i) 개정된 안보 범주의 경우, (5) 항에 따라 계산 된 국방 기능 재량 감소와 동일한 금액; 그리고

(ii) 수정 된 비안보 범주의 경우, (6) 항에 따라 계산 된 비국방 기능 재량 감소분과 동일한 액수.

(B) 회계연도 2014-2021. 관리예산처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계연도마다 254 (c) 항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연도 사전 보고서를 제출 한 날에 재량 지출 한도-

(i) 제5항에 따라 계산 된 국방 기능 재량 감소액 만큼 개정 된 안보 범주에 대하여; 그리고

(ii) 개정 된 비안보 범주의 경우 (6)항에 따라 계산 된 비 국방 기능 재량 감소액 만큼 개정한다.

(8) 직접 지출 감소 실행 - 각 해당 연도의 (4)항에 명시된 날짜에 관리예산처가 준비하고 대통령은 계산 된 직접 지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 직접 지출에 대한 발급시 (5)항 및 (6)항에 따라 효과적인 강제삭감을 명령해야한다. 이 단락에 따른 직접 지출의 격리를 시행 할 때, 관리예산처는 2010 년 법정지불유예법 (Actual Pay-As-You-Go Act) 제6조, 제255조

에 명시된 면제 및 제 256 조 단, 제256 조 (d) 항에 명시된 의료보호 프로그램의 감면율은 회계 연도의 2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9) 의료보호 조정 - 단락 (8)이 없는 상태에서 한 회계 연도 동안 의료 프로그램의 비율 감소가 2 %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예산처는 기타 모든 재량 지출 예산의 감면을 늘리고 (6) 항을 비 국방 기능에서 (6)항이 요구하는 감축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조정한다.

(10) 감축의 이행.-이 조항에 따라 부과 된 모든 감축은 제 256 조 (k)항에 따라 이행되어야한다.

(11) 보고서 - (4)항에 명시된 날짜에 관리예산처는 본 절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에 대한 정보, 조정 된 임의 지출 한도, 각각의 비과세 직접 사용에 필요한 감축 목록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지출 계정 및 이 제목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그 밑에 취해진 조치를 향상시키는 설명 및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b) 수정안 준수 - 1985 년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 통제법의 제 250 (a) 항에 명시된 목차는 제 251 조 관련 항목 다음에 다음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251A항. 예산 목표 집행.”

Sec. 401. 공동선정위원회의 설립.

(a) 정의 -이 제목에서 :

(1) 공동위원회 - “공동위원회”라는 용어는 (b) (1) 항에 의거하여 설립 된 적자 감축 공동 선정위원회를 의미한다.

(2) 공동위원회 법안 - “공동위원회 법안”이라는 용어는 (b) (3) (B) 항에 의거하여 추천되고 제 402 조 (a) 항에 따라 도입 된 공동위원회의 제안 된 입법 언어로 구성된 법안을 의미한다.

(b) 공동선정위원회 (Joint Select Committee)의 설립 .-

(1) 설립. - 공동 선택

의회의위원회는 “적자 감축에 관한 공동선정위원회”를 의미한다.

(2) 목표 - 공동위원회의 목표는 2012 년에서 2021 년 회계 연도 동안 적자를 최소한 \$ 1,500,000,000,000 줄이는 것이다.

(3) 직무 .-

(A) 총칙-

(i) 단기 및 장기 재정 불균형의 개선 - 공동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단기 및 장기 재정 불균형을 크게 개선 할 권고 및 입법 용어를 제공해야한다.

(ii)위원회의 권고 - 2011 년 10 월 14 일까지 하원과 상원의 각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문단 (2) 공동위원회의 고려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적자 감축을 위한 법률 변경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 보고서, 권고안 및 입법 용어.-

(i) 총칙- 2011 년 11 월 23 일까지 공동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표결을 행한다 -

(I) 공동위원회의 사실관계의 확인, 결론, 권고 및 (5) (D)

(ii) 항이 요구하는 의회예산처의 추정치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포함하는 보고서; 과

(II)는 하위 절 (I)에 기술 된 권고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 용어를 제안했으며 2012년 회계 연도에서 2021년까지의 적법한 감축량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한다. 보고서나 입법 용어에 포함 된 하원 의원 규칙 또는 상원의 상설 규칙은 단순히 자문으로 간주된다.

(ii) 보고서 및 입법 동의 승인 - (i) 항에 기술 된 합동위원회 및 입법안의 보고서는 합동위원회 위원 다수의 승인을 요한다.

(iii) 추가 견해 - 제 (ii) 항에 따른 보고서 및 입법 언어의 승인에 관한 최종 합동위원회 표결시 보조, 소수 또는 추가 견해를 제출할 의사를 통지 한 합동위원회 위원 - 그러한 견해를 공동위원회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3일간의 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런 견해는 공동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같은 부피 또는 그 일부로 인쇄되며 그 내용은 보고서의 표지에 기록되

어야한다. 시기적절한 통지가 없는 경우 공동위원회 보고서는 그러한 견해 없이 즉시 인쇄되고 전송될 수 있습니다.

(iv) 보고서 및 입법 언어의 전달 - 2011년 12월 2일까지 (ii)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보고서 및 입법 언어를 승인 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합동위원회 보고서 및 입법안을 제출해야한다 (i)항에 기술된 언어는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각 하원의 다수 및 소수 지도자에게 전달된다.

(v) 공동 선언문 및 입법 언어 - 공동위원회 보고서 및 입법 언어의 승인 또는 불승인 (ii)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모든 보고서 및 입법 언어와 대중에게 공개된 투표를 실시한다.

(4) 구성원-

(A) 총회 - 공동위원회는 (B) 호에 따라 임명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 지명 -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i) 상원의 다수당 원은 상원 의원 가운데 3명을 임명한다.

(ii) 상원의 소수 지도자는 상원 의원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iii)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iv) 하원의 소수 지도자는 하원 의원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

(C) 공동의장.-

(i) 총칙 -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이 2명을 둔다. 대다수의 상원 의원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명의 공동 의장을 지명한다. 하원 의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두 번째 공동 의장을 지명해야한다. 공동 의장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되어야한다.

(ii) 직원 지휘 - 공동 행동하는 공동 의장은 공동위원회의 직원을 고용해야한다.

(D) 일자 - 공동위원회 위원은 본 법 제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명되

어야한다.

(E) 임명 기간 .- 구성원 자격은 공동위원회의 존립기간 동안 부여된다. 공동위원회의 공석은 그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석이 발생 한 날로부터 14일 (역일 기준)까지 원본 지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져야한다. 한 구성원이 공동위원회는 하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직을 그 만두는 경우, 그 위원은 더 이상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며 공석은 유지되어야 한다.

(5) 행정.-

(A) 일반론.- 공동위원회가 권한, 기능 및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 의장이 승인 한 공동위원회의 실제 및 필요한 경비를 상원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상원이 지불할 권한이 있다.

(B) 비용 - 공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법(Public Law) 79-304조의 제11항에 따라 공동 경제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5 USC 1024 (d)).

(C) 정족수 - 공동위원회의 위원 7명은 투표, 회의 및 청문회의 목적으로 정족수를 구성한다.

(D) 투표.-

(i) 대리투표- 공동위원회 구성원을 대신하여 대리 투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ii) 의회예산처 추정 - 의회예산처는 미 의회예산법 section 308 (a) 및 201 (f)에 따라 법안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야한다 (단락 (3) (B)에 기술 된 바와 같이). 1974 (2 USC 639 (a) 및 601 (f)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효과의 추정 포함). 또한 의회 예산 국은 2021 년 이후의 법안의 예산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합동 위원장이 인증 한 최소 48 시간 전에 공동위원회의 공동 위원은 보고서, 권고 또는 입법 언어의 모든 버전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 회의 .-

(i) 최초 회합 -이 법 제정일로부터 45일 (역일 기준) 이전에 공동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ii) 의제 -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회의 개최 48시간 이전에 공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을 제공해야 한다.

(F) 청문회.-

(i) 총칙.- 공동위원회는 이 조항을 수행 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 앉아서 행동하며, 증인의 출석과 서적, 서류 및 문서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 그러한 증거를 받고, 공동위원회가 권고하는 그러한 맹세를 집행한다.

(ii) 공청회의 청문 절차 및 책임 .-

(I) 공고.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청문회의 개최일, 장소, 시간 및 주제를 더 일찍 청문회를 시작할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한 공청회 개최일보다 7일 이전에 공개해야한다.

(II) 서면 진술서 - 증인이 출두하기 최소한 2일 전에, 공동위원회가 그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데 적절한 이유가 있어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증언서면을 제출해야한다.

(G) 기술적 지원 - 공동 의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연방 기관은 공동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 공동위원회의 직원 .-

(1) 총칙. 공동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상원의 직원을 위한 지침과 상원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과 고용 요건을 준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보상을 공동으로 지명하고 수정할 수 있다.

(2) 윤리적 기준 - 하원에서 봉사하는 합동위원회의 위원은 하원의 윤리 규칙 및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위원회의 위원들과 공동위원회의 직원들에게 봉사하는 상원 위원들은 상원의 윤리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d) 종료 - 공동위원회는 2012년 1월 31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Sec. 402. 공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고려.

(a) 소개 - 401(b)(3)(B)(ii)항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제401조 (b)(3)(B)(iv)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은 다음 날 상원 의원 다수가 상원 의원에 의해 상원 의원이 상원 의원 또는 상원 의원 다수가 지명 한 상원 의원이 상원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상원의 다수 지도자 또는 하원의 다수 지도자가 지명 한 하원 의원이 다음 입법 일에 (요청에 따라) 대표할 수 있다.

(b) 하원에서의 고려 .-

(1) 참고 및 보고. - 공동위원회 법안이 언급된 하원의 모든 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까지 개정 없이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공동위원회 법안을 그 기간 동안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은 동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 할 수 없도록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안은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하원에 보고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하원이 법안을 퇴출시켰다는 움직임을 중단 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상대방이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0분의 토론을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고 채택하기로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동의가 채택되면, 하원은 즉시 (2)항 및 (3)항에 따라 합동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동의가 폐기 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 한다.

(2) 고려의 진행. - 공동위원회 법안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집행 이사회에서 배제 된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닌) 마지막위원회가 고려 된 것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을 청구해야 한다. 하원이 공동위원회 법안과 관련하여 진행할 발의안을 폐기 한 후에는 그러한 발의안이 정해지지 아니한다. 이전 질문은 개입 동의 없이 그 채택 동의 명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가 폐기 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고려 사항 - 공동위원회 법안은 읽은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모든 주문 요지와 그 고려 사항은 면제된다. 이전 질문은 제안자와 반대자가 똑같이 나누고 통제하는 2시간의 토론과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하나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고 통과

하는 공동위원회 법안에 따라 명령 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위원회 결의안 통과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4) 통과 투표 - 공동위원회 결의안 통과는 2011년 12월 23일까지 이루어져야한다.

(c) 상원에서의 신속한 절차.-

(1)위원회의 고려 사항 - (a)항에 의거 상원에서 소개된 공동위원회 법안은 관할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언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수정 없이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비호의적인 권고안, 또는 권고안 없음을 늦어도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보고해야한다. 권고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제출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제출안의 심의에서 면제되며, 제출안은 해당 지출일정에 배정되어야한다.

(2) 진행 예정 - 상원의 상임 규칙 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 법안이 보고되거나 모든 위원회에서 면제 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람한다. 상원의 대다수 지도자 또는 다수당 지명자의 지명 된 사람이 공동위원회 법안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하도록 지시 받았다. 또한, 상원 의원이 2일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공동위원회 법안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효과에 대한 이전 동작이 동의되지 않아도 진행할 동작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합동위원회 법안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명령은 면제된다. 진행할 동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청구는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동의는 정당하지 않아야한다. 공동위원회 법안의 심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법안은 처분 될 때까지 미완성 사업으로 남는다.

(3) 고려 사항 -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모든 주안점과 공동위원회 법안의 검토는 면제된다. 공동위원회 법안과 그와 관련한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 및 항소 고려는 소수자 지도자들 또는 그들의 지명 된 사람들 간에 똑같이 분배될 수 있는 총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정당하고, 정당하게 선출되고 선서 된 위원의 5분의 1의 찬성표를 요구해야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

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의 또는 이의 제기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의 제기자와 동의 또는 이의 제기에 반대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총회 요청 및 투표에 사용 된 시간을 포함하여 합동위원회의 심의회 심의를 위해 사용 된 모든 시간은 총 30시간 동안 고려되어야 한다.

(4) 개정안 없음 - 공동위원회 의안에 대한 개정안 또는 연기를 촉구하는 발언, 또는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 동의 또는 공동위원회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동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5) 통과 투표 - 상원이 공동위원회 법안을 진행하기로 동의 한 경우,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공동위원회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난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일의 정족수 요청 요청한 경우 토론의 결론에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는 2011년 12월 23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6) 절차의 결정에 대한 의결 - 경우에 따라, 상원의 규칙의 공동위원회 결의안에 관한 절차의 적용과 관련된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는 논쟁 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d) 수정안 - 공동위원회 법안은 하원 또는 상원에서 개정 될 수 없다.

(e) 다른 원에 대한 고려 .-

(1) 총칙- 공동위원회 결의안을 통과하기 전에 하원이 다른 위원회로부터 공동위원회 제출법안을 수령하면,

(A) 다른 하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 한다; 그리고

(B) 수령한 원에서의 절차는 합당한 투표가 있을 때까지 다른 하원으로부터 공동위원회 결의안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며, 다른 원이 수령한 공동위원회 결의안은 수령한 원의 공동 결의안을 대신 할 수 있다.

(2) 수입 계측-이 조항은 상원에서 수령 한 공동위원회 법안이 수익 계측일 경우 하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f) 다른 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칙 .-

(1) 다른 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의 처리 - 상원이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위원회 법안을 도입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하원의 공동위원회 법안은 이 조에 따라 신속한 원내 절차를 거칠 자격이 부여된다.

(2) 상원에서 동반자 조치의 처리 - 상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이 통과 된 후 상원은 하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을 받으며, 이 경우 하원 합동위원회 법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상원에서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관한 투표는 하원에서 받은 공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투표로 간주된다.

(3) 거부권 - 대통령이 공동위원회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상원의 거부권에 관한 토론은 다수 및 소수 지도자 또는 그들의 지명 된 사람 간에 똑같이 1 시간으로 분할된다.

(g) 특권의 상실 - 아래아 같은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공동위원회 법안에 적용을 중단한다.

(1) 공동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까지 401 (b) (3) (B)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제안된 입법 용어에 대해 투표하지 못한 경우; 또는 (2) 공동위원회 법안이 2011년 12월 23일까지 양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IV. 2012년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통제법 255조 및 256조

SEC. 255. (2 U.S.C. 905) 면제 프로그램 및 활동.

(a) 사회 보장 혜택과 철도노동자퇴직급여 1 영역

사회 보장법 Title 42 (42 U.S.C. 401 et seq.)에 의해 노인, 전쟁생존자 및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 및 미국 법전 Title 45의 231b (f) (2), 231c (a) 및 231c (f) 및 231b (a) 항에 따른 급여는 이 부분에서 발령된 어느 명령에 따른 감액으로부터 면제된다.

(b) 재향군인 프로그램 - 다음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액으로부터 면제 된다:

재향 군인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제2차 세계 대전 재향 군인 특별 혜택 (28-0401-0-1-701).

(c) 순이자 - 순이자(모든 주요 기능 범주 900)는 이 부분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된다.

(d) 상환 소득세 징수 -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설정하는 1986년 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은 이 부분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액으로부터 면제된다.

(e) 비국방 비의무적 균형예산 - 이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전되어온 의무지위 지지 않은 균형예산권한은, 국방범주의 균형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서 발령된 모든 명령 아래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f) 군무원의 선택적인 면제 -

(1) 일반론 - 대통령은 회장은 군무원계정에 관하여 강제삭감으로부터 그 계정을 면제 시기거나, 여기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었을 통일적 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감액을 정할 수 있다.

(2) 제한 - 당해 예산 연도를 위해 254(a) 절에 명시된 날짜 혹은 그 전에,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이 행사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1)항에 규정 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g)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

SEC. 256. (2 U.S.C. 906) 특별 규정(Section 256 Special Rules) [발췌]

(7) 강제삭감면제 - 제 255조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활동 외에도, 이 부분 아래의 강제삭감으로부터 다음은 면제 된다:

(A) 저소득 보조금 D영역 - 사회 보장법 제1860D-14 조항에 따른 우대 및 비용 분담 보조금.

(B) 재해 보조금 D영역 - 사회 보장법 제1860D-15 (b)항 및 (e)(2)(B)항에 의한 지불.

(C) 자격 있는 개인 우대 (Qualified Individual (QI) PREMIUMS) - 사회 보장법 제1933조에 의거한 특정 저소득층 의료보호 수혜자를 위한 의료보호 비용분담 보장을 위한 주 정부에 대한 지불.